

금융회사 인허가 매뉴얼
- (3) 금융투자 -

2022. 4.

금 융 민 원 센 터

「금융회사 인허가 매뉴얼」 이용 안내

이 책자는 금융회사 설립 및 경영 관련 각종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및 일반인을 위하여 금융회사의 인허가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허가 신청시 업무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금융당국에 자주 접수되는 인허가 업무를 금융회사 유형별 (금융지주, 은행, 금융투자, 보험, 서민금융·여신전문금융, 전자금융·신용정보·신용평가, 공통)로 정리하였습니다.

각 인허가 업무별로 개요, 절차, 심사기준, 신청서 작성요령, 기존판단사례, 유권해석, 법규오해 사례 및 관련 법규 등의 순으로 기술하여 해당 인허가 업무와 관련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책자에 수록된 내용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업무 참고용 자료임을 알려드리며,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관련 법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 (1)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신탁업 인가 1
- (2)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 142
- (3) 증권사의 일반사모집합투자업 겸업 등록 224
- (4)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록 267
- (5) 금융투자업자 대주주 변경 승인 316

3. 금융투자

(1)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신탁업 인가

1. 금융투자업 인가 개요

- 자본시장법 시행 후 현행 증권회사, 선물회사 등 회사(기관)별 규율체계는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기능을 동일하게 규율하는 “기능별 규율 체제”로 전환
 -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분류하고
 - 재분류된 금융투자상품(증권·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 투자자(전문, 일반투자자)를 기준으로 금융기능을 분류하여 ‘금융기능별’로 진입을 규제*

* 예)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증권’의 ‘투자중개업’

** 신규진입과 마찬가지로 영업행위, 건전성 규제도 동일하게 금융기능별 규제

1. 경제적 실질에 따른 재분류

-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및 투자자의 유형을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분류

1. 금융투자업 [法 제6조] : 6가지

- ① (투자매매업)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청약·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

- *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은 투자매매업에 해당 (法 제7조, 令 제7조 1항)
 令 §7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파생결합증권을 제외한 파생결합증권을 말한다.
1. 기초자산이 통화 또는 외국통화로서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등이 그 기초자산과 다른 통화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될 것
 2. 증권 발행과 동시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가 이루어질 것
 3.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될 것
 4.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발행요건 등을 충족할 것

② (투자중개업)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청약·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청약·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

* 증권거래법상 모집, 매출 주선은 인수업에 해당하였으나,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

③ 집합투자업 :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 등으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업*

* <간투법상 간접투자자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자의 정의 비교>

간투법	자본시장법
① 명칭 : 간접투자	집합투자
②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15.1.1. 개정, 종전: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③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④ 증권 파생상품 등 투자대상자산에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것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
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행하는 간접투자 제외	다른 법률에 의한 사모펀드, 자산유동화계획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④ (투자자문업)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⑤ (투자일임업*)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업

*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받아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는 투자일임업으로 보지 않음(法 §7 ④)

- i)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한다)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 ii) 투자자가 여행·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부재하는 중에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폭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약관 등에 따라 미리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권한을 일임받은 경우
- iii)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따른 결제나 증거금의 추가 예탁 또는 법 제72조에 따른 신용공여와 관련한 담보비율 유지의무나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약관 등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매도권한(파생상품인 경우에는 이미 매도한 파생상품의 매수 권한을 포함한다)을 일임받은 경우
- iv) 투자자가 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계좌에 금전을 입금하거나 해당 계좌에서 금전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따로 의사표시가 없어도 자동으로 법 제229조 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이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 등을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증권을 환매를 조건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미리 해당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약정에 따라 해당 집합투자증권 등을 매수 또는 매도하는 권한을 일임받거나 증권을 환매를 조건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권한을 일임받은 경우
- v)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⑥ (신탁업)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

*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신탁법 제2조)

2. 금융투자상품 [法 제4~5조] : 증권, 파생상품

□ 포괄적으로 ①이익·손실회피 목적의 ②금전지급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로 ③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정의

○ 위험의 크기를 기준으로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

< 범위 확대 >

: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범위를 대폭 확대

(증권거래법) 유가증권,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그밖에 자연적, 환경적, 경제적 위험 등으로 평가가 가능한 것 (法 §4-⑩)

① 증권

□ 금융투자상품 중 추가지급 의무가 없어 최대 투자원금까지만 손실이 발생하는 상품으로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 증권, 증권예탁증권으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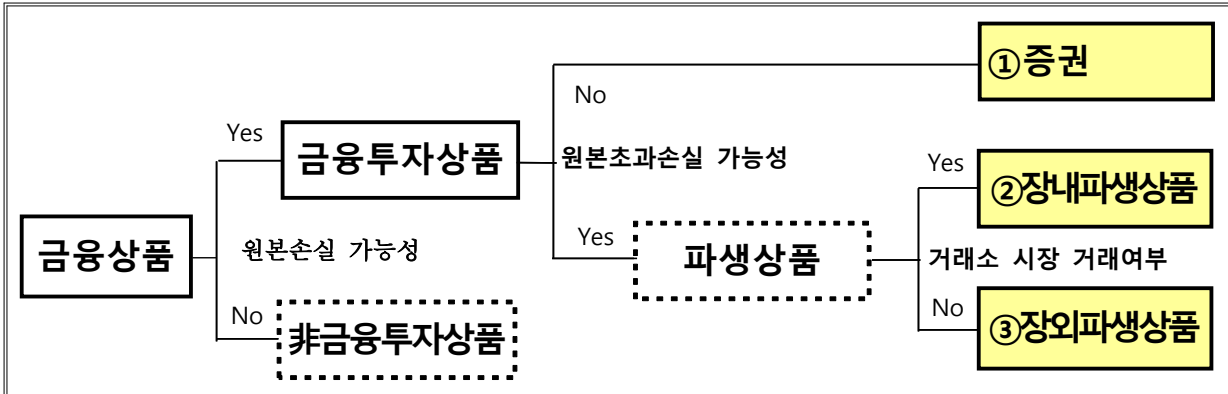
명칭		정의	예
증권	채무증권	지급청구권을 나타내는 것	국채, 지방채, 사채, 기업어음 등
	지분증권	출자지분을 나타내는 것	주식, 진주인수권, 출자증권, 출자지분 등
	수익증권	수익권을 나타내는 것	신입수익증권, 투자신탁 수익증권 등
	증권예탁증권	증권의 예탁을 받은 자가 발행하는 증권	KDR, GDR, ADR 등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증권		이익을 기대하여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타인의 노력 결과에 따라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	집합투자증권, 비정형간접투자증권, 주식, 출자지분 등
파생결합증권 (Securitized Derivatives)		기초자산의 가격 등의 변동과 연계되어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의 계약상의 권리	주가연계증권(ELS), ELW, 환율연계증권, 역변동금리채 등

② 장내 파생상품

□ 파생상품으로서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또는 해외 파생상품시장(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령 §5) 해외파생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③ 장외 파생상품

□ 파생상품으로서 장내 파생상품이 아닌 것



⇒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은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 금융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시행령 <별표1> 비교1.)

* 法 §4⑦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

3. 투자자 [法 제9조] : 일반, 전문투자자

□ 투자위험 감수능력에 따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

- 투자 위험의 감수능력은 전문성과 소유자산 규모 등에 의해
 - 국가, 한국은행, 주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금융공기업, 지자체 등을 전문투자자로 인정(法 제9조제5항 및 슈 제10조)하고
 - 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개인도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일정수준 이상*이면서 금융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음

* 법인은 100억원, 개인은 50억원(개인은 투자경험도 1년 이상일 것을 요구)

** 이 경우 투자자 보호 측면을 감안하여 2년마다 신고 갱신을 요구(sunset)

- 전문투자자중 국내외 주권상장법인, 기금관리·운용법인, 공제사업자, 자발적 전문투자자 등은 일반투자자로 전환 가능
- 다만,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주권상장법인, 기금관리·운용법인, 공제사업자, 지자체 등도 일반투자자로 취급

2. 금융기능별 규제

- 재분류된 금융투자업 종류, 금융투자상품 범위 및 투자자 유형을 조합한 「금융기능별 인가 업무단위를 구성」

규제 기본원칙

- 1] 동일한 금융기능(금융투자업+금융투자상품+투자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인가요건이 적용되도록 금융기능별 진입 요건 마련
- 2] (Add-on(변경인가) 방식) 기존 금융투자회사는 필요한 업무 단위를 추가함으로써 業域 확장 가능
 - (ㄱ) 고객과 직접 채권채무관계를 가지거나(투자매매업), 고객의 자산을 수탁하는 금융투자업(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에 대해서는 인가제 채택
 - (ㄴ) 고객의 자산을 수탁하지 않는 금융투자업(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및 일반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집합투자업에 대해서는 등록제 채택
- 3] (세분화·전문화) 실제 업무영위 현황 등을 감안하여 업무 단위는 적절한 수준으로 세분화하여 특정 영역에 전문화된 금융투자회사의 진입 허용*
 - * (예시) 인수업, 채권·주식 전문중개업 등
- 4] (인가유지요건) 진입요건은 진입 이후에도 계속 충족해야하는 유지요건으로 규정하여 진입시 적격성이 지속되도록 함
 - * 일부 요건(자기자본, 대주주) 완화

II. 인가·등록 업무단위

1. 기본방향

- 시행령상 법률에서 규정한 구성요소를 실제 금융투자업 영위 현황을 감안·조정하여 총 78개 업무 단위로 설정
 - 각 업무단위는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를 모두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구분
 -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일반투자자에 대해 영업이 가능한 경우는 당연히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도 영업이 가능
 - ATS 매매체결대상상품 매매·중개, RP대상 증권 중개, 채권중개 전문회사의 채무증권 장외 중개업은 전문투자자만 대상
- 향후 세부 업무단위 추가 필요시 단위를 신설하기 용이하도록 사전 편찬식 체제를* 마련하되
 - * 인가·등록단위별 코드를 사전편찬식으로 부여하여 무한대의 세분화가 가능(예 : 증권·채무 증권·회사채·상장회사채·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상장회사채... 등의 코드를 11211...식으로 부여 → 기존 금융투자업자의 인가코드번호에 영향 없이 새로운 코드 창출 가능)
 - 새로운 금융투자상품 등장시 별도 인가 없이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포괄적인 단위'도 별도 마련
 - * (예시) 투자매매·중개업의 경우 금융투자상품에 따라 '채무증권', '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으로 세분하고 포괄단위로 '증권' 단위를 설정

2. 세부 인가 업무단위

① 투자매매업 관련

<투자매매업>

- 채무증권, 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만을 취급하고자 하는 업무 범위 허용
 - 증권예탁증권은 예탁대상인 증권의 취급이 허용된 경우 당연 허용
 - 투자계약증권은 개념상 여타 유형의 증권개념도 포괄하므로 여타 모든 증권의 취급이 허용된 경우 허용

<[인수업 포함] 투자매매업>

- 인수업은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인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투자매매업의 영위가 필수적인바
 - 인수업을 포함한 투자매매업 전체 인가 필요
- 파생상품은 당사자간의 계약이라는 속성을 지니므로 인수의 개념이 적용될 수 없어 인수업은 증권에 대하여만 허용
 - 채무증권, 지분증권에 대하여는 특화·전문화가 가능하도록 별도 취급 허용

② 투자중개업 관련

- 투자매매업과 유사하게 취급 가능한 금융투자상품을 구분
- 다자간매매체결회사*(Alternative Trading System, ATS)와 채권전문중개회사**(Inter Dealer Broker, IDB) 업무는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인가단위로 설정
 - * (ATS)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거래 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여 경쟁매매 등의 매매가격 결정 방법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등의 매매거래를 체결
 - ** (IDB) 전문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장외에서 채무증권 매도·매수자의 호가와 수량을 공표하여 매매거래를 체결

③ 집합투자업 관련

- 운용가능한 집합투자기구("펀드") 종류별*로 인가단위 구성
 - * 증권 및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
- 운용 가능한 펀드 종류를 기준으로 인가단위를 설정하고 인가단위별로 필요한 전문인력의 종류 및 최소보유인원을 차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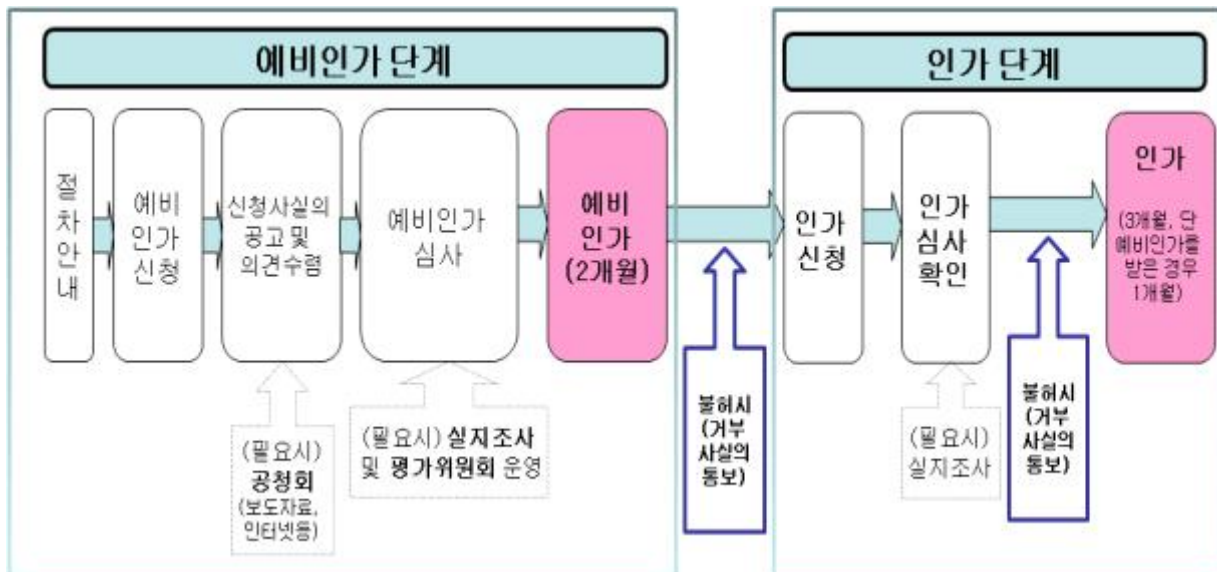
④ 신탁업 관련

- 수탁 가능한 재산*은 기존 신탁업법과 동일성을 유지
 - *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 수탁 가능한 재산 범위*를 기준으로 인가단위를 설정하고 인가단위별로 필요한 전문인력의 종류 및 최소보유인원을 차등화
 - * 모든 재산 / 금전 / 금전 외 재산 / 동산.부동산.부동산 관련 권리

3. 기 타

- 상위 단위에 대한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하위 단위는 별도의 인가 없이 영위가능
 - 예를 들어 인수가 포함된 증권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경우 RP업무 수행을 위한 별도의 인가 불필요
 - 기존 펀드판매업은 수행가능 금융기관을 직접 열거하는 대신 집합투자증권 매매·중개업 인가를 받으면 수행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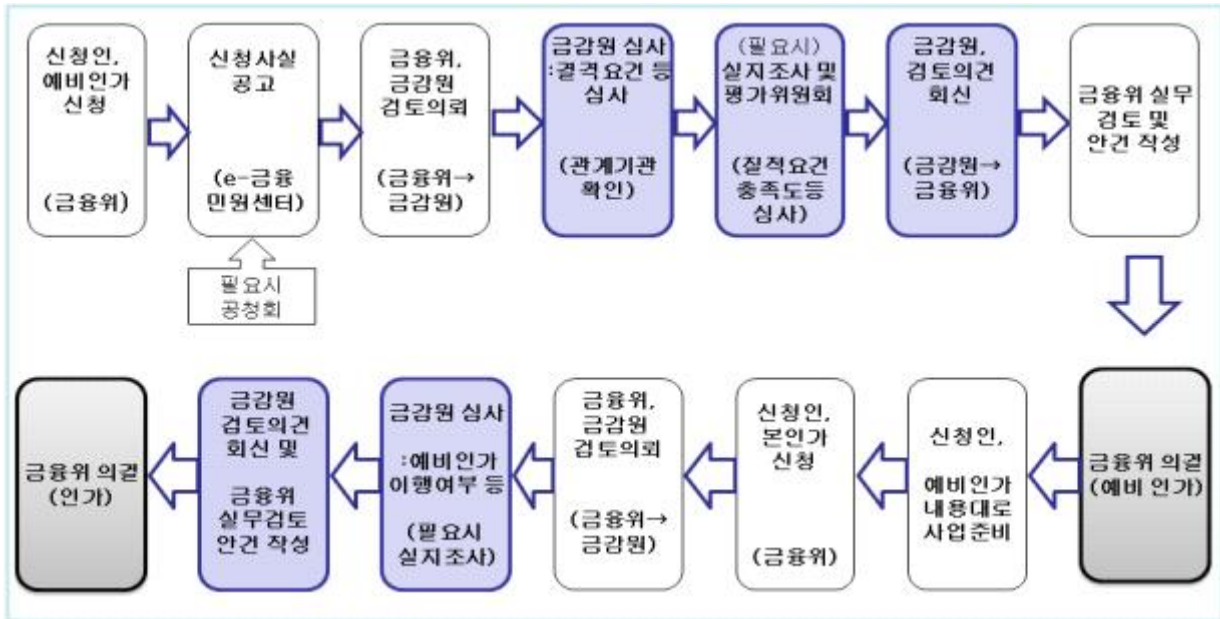
III. 인가등록 업무단위



*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음(法 제14조)

IV.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1. 일반 심사절차



※ 금융투자업 인가 신청 준비시 금감원의 「인허가 사전 상담창구」 이용 가능

<인허가 사전 상담창구 운영 개요>

- (상담내용) 인허가 신청전 서류 준비단계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심사요건·절차, 인허가 매뉴얼 사항, 신청서 준비사항 등 객관적 사항 상담
- (상담방식) 유선, 대면* 등 신청인이 희망하는 방식
 - * 단, 현재
- (신청전화) 02-3145-8007 (감독총괄국 감독총괄팀)

※ 사전상담은 필수 선행절차가 아니며, 신청인은 사전 상담없이 심사부서로 직접 연락가능

2. 인가 심사요건(요약)

요건	개요	근거법규		
		법 ¹⁾	시행령 ²⁾	규정 ³⁾
법인격 요건	-상법상 주식회사 등	§12② 1호	§16①,②	§2-1①
대주주 요건	-대주주 적격성 요건	§12② 6호	§ 1 6 ② , ⑥ , ⑦ < 별 표 2 >	§2-1② <별표3>
자기자본 요건	-인가 단위별 최저 자기 자본	§12② 2호	§16③ <별표1>	
인력 요건	-임원결격사유	§12② 5호		<별표2>1.다
	-전문인력요건	§12② 4호	§16⑤ 1호	<별표2>1. 가.나.라. 마.바.사
물적 요건	-전산설비 및 통신수단,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 보안설비 등	§12② 4호	§16⑤ 2호	<별표2>2.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	-수지전망 타당성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 질서 준수 등	§12② 3호	§16④	<별표2>3.
건전경영 ·사회적 신용요건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12② 6의2호	§16⑧	
이해상충 방지체제 요건	-내부통제기준 -정보교류차단장치 등	§12② 7호, §44, §45	§16⑨, §50, §51	<별표2>4., §4-6, §4-7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3)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

3. 단계별 세부내역

< 예비인가단계 >

1. 예비인가 신청	○ 금융위,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		
2. 신청사실공고	○ e-금융민원센터, 신청사실 공고 (필요시 공청회)	
↓		
3. 검토 의뢰	○ 금융위, 금감원에 심사 검토 의뢰	
↓		
4. 금감원 심사	심사요건	확인서류
법인격 요건	○ 상법상 주식회사 등	-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예비인가신청서 등
자기자본 요건	○ 인가 단위별 최저 자기자본 (설립시 자본금 기준)	- 신청서상 사업계획서 등 심사
인력 요건 (전문인력·임원)	○ 法 제12조제2항제4호, 승 제16조제5항제1호,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에서 정하는 인력요건에 해당할 것	- 경력증명서, 인력 자격증, 확인서 등
	○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의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신원조회 및 관련부서(처) 사실조회 회보서
물적 요건	○ 法 제12조제2항제4호, 승 제16조제5항제2호,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에서 정하는 전산설비 및 통신수단,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보안설비 등을 구비할 것	- 신청서상 사업계획서 등 심사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	○ 수지전망이 타당하고 경영건전성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를 준수할 수 있을 것	- 신청서상 사업계획서 등 심사
대주주 요건	○ 시행령 <별표2> 및 금융투자업규정 <별표3>의 요건을 갖출 것	- 재무건전성 기준, 부채비율 기타 사실확인서 등 - 신원조회 및 관련부서(처) 사실조회 회보서

건전경영 및 사회적 신용 요건	○ 法 제12조제2항제6호의2, 승 제16조 제8항에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경영건전성 기준, 관련 부서(처) 사실조회 회보서 기타 사실확인서 등
이해상충 방지체계 요건	○ 法 제12조제2항제7호, 승 제16조제9항,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에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할 것 -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 적절한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갖출 것	- 신청서상 사업계획서 등 심사



(필요시) 평가위원회*를 통한 질적요건 충족도 심사

* 금융투자업규정 제2-4조(인가업무의 수행)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업인가의 심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5. 심사결과 통보	○ 금감원, 금융위에 심사·확인 결과 통보
-------------------	-------------------------



6. 예비인가부결정	○ 금융위, 예비인가 여부 결정 및 통보(증선위 심의 필요)
-------------------	-----------------------------------

신청인, 예비인가 내용대로 사업 준비 (6개월 이내 신청 (승 §18④))

< 인가단계 >

7. 인가신청	○ 금융위, 금융투자업 인가 신청서 접수
----------------	------------------------



8. 검토 의뢰	○ 금융위, 금감원에 심사 검토 의뢰
-----------------	----------------------



9. 금감원 심사	심 사 요 건	확인서류
법인격 요건	○ 상법상 주식회사 등	-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인가신청서 등
자기자본 요건	○ 인가·등록단위별 최저 자기자본 (설립시 자본금 기준)	- 등기부등본, 주금납입 증명서 등

인력 요건 (전문인력· 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法 제12조제2항제4호, 승 제16조 제5항제1호,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에서 정하는 인력요건에 해당할 것 ○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의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증명서, 인력 자격증, 확인서 등 - 신원조회 및 관련부서(처) 사실조회 회보서 - (필요시)실지조사
물적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法 제12조제2항제4호, 승 제16조제5항제2호,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에서 정하는 전산설비 및 통신수단,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보안설비 등을 구비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시)실지조사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지전망이 타당하고 경영건전성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를 준수할 수 있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상 사업계획서 등 심사
대주주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령 <별표2> 및 금융투자업규정 <별표3>의 요건을 갖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건전성 기준, 부채비율 기타 사실확인서 등 - 신원조회 및 관련부서(처) 사실조회 회보서
건전경영 및 사회적 신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法 제12조제2항제6호의2, 승 제16조 제8항에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건전성 기준, 관련부서(처) 사실조회 회보서 기타 사실확인서 등
이해상충 방지체계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法 제12조제2항제7호, 승 제16조제9항,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에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할 것 -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 적절한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갖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상 사업계획서 등 심사 - (필요시)실지조사



10. 심사결과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감원, 금융위에 심사·확인 결과 통보
--------------------	---



11. 인가여부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 인가 여부 결정 및 통보
--------------------	--

4.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 (활용) 인가 신청을 고려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사전 준비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신청인에 대해서는 심사 신청 서류 준비 최소화
- (주의사항) 본 내용은 포괄적인 인가단위를 기준으로 예시된 것이므로
 - 신청자는 이를 필요충분한 인가 심사기준으로 인식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 인가신청 이전에 금융감독원 인가심사 담당자*에게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임

* 투자매매·중개업 ⇒ 자본시장감독국 자본시장총괄팀(02-3145-7572, 7579)
집합투자업, 신탁업 ⇒ 자산운용감독국 자산운용인허가팀(02-3145-6711, 6712)

1. 법인격 요건

- (심사요건) 상법 상 주식회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외국금융투자업자로서 지점 또는 영업소를 설치한 자
 -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

- 외국은행 국내지점,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집합투자증권의 투자 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함)
 - 신용협동조합
 - 농협 및 수협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 새마을금고
 - 체신관서
- 외국 금융투자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에 상당 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국내에 지점 등을 설치한 자
- (심사방법) 예비 및 본인가시 법인 등기부등본 및 금융기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가서류 등으로 확인

2. 대주주 요건

- (심사대상) 신청인의 법적실체에 따라 심사대상을 달리 규정

(1) 주식회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 대주주

- ①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 정의)
 -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가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 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 ② 주요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 정의)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
-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 임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인 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자
 - * 다만,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집합투자업 및 집합투자증권에 한정된 투자매매·중개업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외의 다른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자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법 제12조 2항 6호 가에 의해 포함)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 최대주주인 법인이 금융회사로서 설립근거법에 따른 소유한도 유무, 주식소유의 분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그 금융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
 - * 최대주주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 포함
 -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2) 국내에 지점 등을 설치한 외국 금융투자업자 ⇒ 외국 금융
투자업자 본점

- (심사요건)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어야 함
 - 대주주의 법적 실체(금융기관, 내국법인, 내국인, 외국법인, 기관전용 사모펀드 또는 SPC인 경우)에 따라 각각의 심사요건을 규정
 -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외은지점,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의 경우 외국 금융투자업자(본점)를 기준으로 심사
 -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추가(변경인가)시 대주주 요건을 완화

※ 대주주 요건 정리는 [표 1] 참조

- (심사방법) 인가 신청시의 제출서류 및 확인서, 국내외 해당 기관*에 대한 사실 조회 등을 통해 확인

* 검찰청,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신용정보원, 예금보험공사 등 국내 기관과 해외 본국 감독기관 등

[표 1] 대주주 요건 정리

구 분	근거 법규조항		요건 <참고 3>의 확인서 번호
	시행령 <별표 2>	규정 <별표 3>	
A. 신규인가의 경우			
(1) 최대주주/주요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가. 금융기관	1호	1호 가목	A-(1)-가
나. 내국법인	2호	1호 나목	A-(1)-나
다. 개인	3호	1호 다목	A-(1)-다
라. 외국법인(외국금융투자업자)	4호	1호 라목	A-(1)-라
마. 기관전용사모펀드/SPC인 경우 GP 등			
① 금융기관	5호 가목	1호 마목 (1)	A-(1)-마-①
② 내국법인	5호 나목	1호 마목 (2)	A-(1)-마-②
③ 개인	5호 다목	1호 마목 (3)	A-(1)-마-③
④ 외국법인	5호 라목	1호 마목 (4)	A-(1)-마-④
(2) 최대주주의 최대주주/사실상 지배자/최대주주의 대표자			
가. 금융기관		1호 바목 (1)	A-(2)-가
나. 내국법인		1호 바목 (2)	A-(2)-나
다. 개인		1호 바목 (3)	A-(2)-다
라. 외국인		1호 바목 (4)	A-(2)-라
마. 기관전용사모펀드/SPC인 경우		1호 바목 (5)	A-(2)-마
B. 업무추가(변경인가)의 경우			
(1) 최대주주			
가. 금융기관/내국법인/개인	1호 라목, 마목 1)*,3)		B-(1)-가
나. 외국법인(외국금융투자업자)	1호 마목 1)*,3) 4호 라목*		B-(1)-나
다. 기관전용사모펀드/SPC인 경우 GP 등			
① 금융기관/내국법인/개인	1호 마목 1)*,3)		B-(1)-다-①
② 외국법인	1호 마목 1)*,3) 4호 라목*		B-(1)-다-②
(2) 최대주주 이외의 대주주			
가. 금융기관/내국법인/개인	1호 라목, 마목 3)		B-(2)-가
나. 외국법인, 기관전용사모펀드 또는 SPC의 GP 등	1호 마목 3)		B-(2)-나

*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 할 것 등으로 완화된 요건 적용

3. 자기자본 요건

□ (심사요건) 인가업무 단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함

※ 인가·등록 업무단위 및 최저 자기자본은 [표 2] 참조

-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일 자기자본에서 인가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
- 변경인가시 필요 최저자기자본은 이미 영위하고 있는 인가·등록업무 단위별 최저 자기자본 합계의 70%와 신규 신청 인가업무 단위별 최저 자기자본 합계를 합산*하여 산출

* (예시) 증권 투자매매·중개업(1-1-1, 2-1-1)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가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중개업(1-2-1, 2-2-1)을 영위하려는 경우 필요한 최저자기자본은 $(500+30) \times 0.7 + (100+20) = 491$ 억원임

- 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 필요 최저자기자본은 본업에서 요구하는 자본수준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심사방법) 예비인가 심사시 사업계획서상 자본확충 계획 등을 기준으로 심사

- 예비인가 후 본인가 심사시 등기부등본 또는 주금 납입 증명서로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되
- 기존 회사인 경우 영업보고서(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회사는 감사보고서 중 재무제표 등)로 심사

[표 2] 인가·등록 업무단위 및 최저 자기자본

코드	금융투자업 종류	금융투자상품 범위	투자자	자기자본	
1-1-1	투자매매업	인수포함	증권	일반+전문	500 ¹⁾
1-11-1			채무증권	일반+전문	200 ¹⁾
1-111-1		국공채	일반+전문	75 ¹⁾	
1-12-1		지분(집합제외)	일반+전문	250 ¹⁾	
1-13-1		집합투자증권	일반+전문	50 ¹⁾	
11-1-1		인수제외	증권	일반+전문	200 ¹⁾
11-11-1				채무증권	일반+전문
11-111-1			국공채	일반+전문	30 ¹⁾
11-112-1			사채	일반+전문	40 ¹⁾
11-12-1			지분(집합제외)	일반+전문	100 ¹⁾
11-13-1			집합투자증권	일반+전문	20 ¹⁾²⁾
11r-1r-1		인수만	RP대상증권	일반+전문	60
12-112-1			증권	일반+전문	60 ¹⁾
1-2-1			채무증권	일반+전문	100 ¹⁾
1-21-1			사채	일반+전문	50 ¹⁾
1-3-1			장내파생	일반+전문	900 ¹⁾
1-31-1	장외파생	주권기초	일반+전문	450 ¹⁾	
1-32-1		주권외기초	일반+전문	450 ¹⁾	
1-321-1		통화·이자율기초	일반+전문	180 ¹⁾	
1a-1-2		투자매매업 (ATS)		전문	300
2-1-1	투자중개업 (RP중개)	증권 (증권)	일반+전문	30 ¹⁾	
2r-1-2			전문	5	
2-11-1			일반+전문	10 ¹⁾	
2-12-1		채무증권	일반+전문	10 ¹⁾	
2-13-1		지분(집합제외)	일반+전문	10 ¹⁾	
2-2-1		집합투자증권	일반+전문	10 ¹⁾	
2-21-1		장내파생	일반+전문	20 ¹⁾	
2-3-1		주권기초	일반+전문	10 ¹⁾	
2-31-1		장외파생	일반+전문	100 ¹⁾	
2-32-1		주권기초	일반+전문	50 ¹⁾	
2-321-1	주권외기초	일반+전문	50 ¹⁾		
2a-1-2	투자중개업 (ATS)		전문	200	
2i-11-2i	투자중개업 (장외채권중개)	증권	전문	30	
3-1-1	집합투자업	모든펀드	일반+전문	80 ¹⁾	
3-11-1			증권펀드(MMF포함)	일반+전문	40 ¹⁾
3-12-1			부동산펀드	일반+전문	20 ¹⁾
3-13-1			특별자산펀드	일반+전문	20 ¹⁾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모든펀드	적격 ³⁾	10	
4-1-1	신탁업	모든신탁재산	일반+전문	250 ¹⁾	
4-11-1			금전만신탁	일반+전문	130 ¹⁾
4-12-1			금전제외신탁	일반+전문	120 ¹⁾
4-121-1			부동산신탁	일반+전문	100 ¹⁾
5-1-1	투자자문업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예치금	일반+전문	2.5	
5-21-1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환매조건부 매매, 예치금 등	일반+전문	1	
6-1-1	투자일임업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예치금	일반+전문	15	
6-1-2			전문	5	

1)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1/2 경감 (코드 번호는 0-0-2 형태)

2)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1/2 경감 적용

3)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 각 호의 투자자

4. 인력 요건

- (임원요건)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심사항목

- 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⑤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지배구조법 제2조제7호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⑥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해당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 감사 또는 감사위원
2.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또는 행정처분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 그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
3.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해임요구, 그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
4. 각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

⑦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임원(업무집행책임자 제외)
 - 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한다):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해임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한다)부터 5년
 - 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한다) 또는 업무집행정지: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한다)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
 - 다. 문책경고: 문책경고일부터 3년
2. 직원(업무집행책임자 포함)
 - 가. 면직요구: 면직요구일부터 5년
 - 나. 정직요구: 정직요구일부터 4년
 - 다. 감봉요구: 감봉요구일부터 3년
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제1호 또는 제2호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하는 기간
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라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기간

⑧ 해당 금융투자업자와 여신거래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⑨ 최근 5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이었거나 불건전한 금융거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의 대주주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⑩ 최근 5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

⑪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 경영의 건전성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해당 대상자가 충분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

(전문인력요건) 금융투자업자는 규정 <별표2> 1. 인력에 관한 요건에서 정하는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미달한 경우 결격)해야 함

(심사방법) 예비인가 심사시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심사하고

○ 임원 및 임원 예정자의 결격 여부를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경력증명서, 사실조회 등을 통해 확인

○ 본인가 심사시 당해 임직원의 채용 등 그 이행여부를 채용 계약서, 전문인력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으로 심사하고 예비인가 내용의 이행여부를 실지조사를 통해 확인

5. 물적 요건

- (심사요건)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추는 것

- (점검내용) 전산설비 및 통신수단,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보안 설비,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완설비 등을 점검*
 - * 물적 설비는 계량적 예시를 제시하기 어려우므로 서류검토, 실지조사 등에서 점검하는 항목을 제시하는 것이며, 인가 신청인(겸영금융투자업자 등) 및 인가 신청 내용에 따라 점검항목은 수정 가능

- 코스콤 또는 이와 동등한 능력을 지닌 전산처리전문회사에 전산설비 및 처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이를 감안하여 평가

심사항목	점검 내용
(1) 전산설비 및 통신수단	
① 주전산기, DB서버, 저장장치, 단말기, 전용회선 등 업무관련 전산설비 구축의 적정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업무 영위에 적합한 전산시스템 보유 및 가용성·안정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전산기 - DB서버, 매매관련(시세관리, 주문관리, 결제관리, 원장관리 등) 서버, 통신서버, 웹서버, 보안서버 등 - 저장장치, 단말기 등 기타 주변장치 - 해당업무 영위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등 ■ 내부 네트워크, 전용회선 구축 등 통신시스템 구성
② 침입탐지·침입방지시스템, 방화벽 등 보안체계 구축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성이 검증된 보안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이동식저장장치 통제 프로그램,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탐지 및 백신프로그램, 방화벽 등

<p>③ 정보이용자 확인 및 전산실 출입 통제시스템 구축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이용자 확인 및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전산기 및 각종 서버에 대하여 비인가자의 접속 및 사용 통제방안 구비 - 주요 데이터에 대한 접속(log-in) 기록 유지 등 정보 유출대책 마련 ■ 전산실 출입 통제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실 출입 통제(카드키, 비밀번호 이용 등) 및 미승인된 출입자의 방문일지 기록 - 전산실 출입자의 신원확인이 가능하도록 CCTV 배치
<p>④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백업장치 구축 및 백업자료 별도 보관·관리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거래정보 등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백업장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업자료의 소산보관장소 마련 - 기간별 소산보관대책 마련 - 백업과 관련한 외부업체와의 계약 등

(2)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p>① 이해상충부서간 별도 업무공간 확보 등 정보차단벽(Chinese Wall) 설치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상충부서간 정보차단벽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상충부서간 별도층 배치 등 업무공간 구분 - 이해상충부서간 출입통제(카드키 등)
<p>② 충분한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 확보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사무공간 등 충분한 업무공간 및 부서별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기기 확보
<p>③ 내부기관 및 감독기관 등의 감독·검사 시 법적 장애가 없을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적 설비에 대한 소유권의 완전성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스, 임대, 위탁 등 제한적 확보 여부 점검

(3) 보안설비 및 보완설비

<p>①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 설비의 확보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실 보안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PS, 항온항습기, 소화설비, 비상발전기 등 구비 - 전산실 내 CCTV 사각지대 제거 - 장애에 대비한 주요 전산장비 및 통신회선의 이중화 ■ 사무실 및 전산실에 대한 365일 ×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미인가자 접근 차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장소 CCTV 설치 및 녹화기록 유지
<p>② 파업 등 불시사태 대비 비상계획 마련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CP(Business Contingency Plan) 마련
<p>③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 확보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발생에 대비한 비상복구시스템 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usiness Contingency Plan 마련 - 재해복구(Disaster Recovery) 센터 마련 - 재해복구센터 내 단말기 등 백업체계 구축
<p>④ 비상사태 발생시 즉시 구현이 가능한 비상계획 마련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usiness Contingency Plan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CP를 포함한 재해복구 훈련 실시 - 재해복구 훈련시 복구테스트 결과

- (심사방법) 예비인가 심사시 사업계획서, 회사전체 전산설비 흐름도, 외부업체와의 계약서 등을 통해 심사하고
 - 본인가 심사시 예비인가 내용과의 부합 여부 등을 실지조사를 통해 확인

6.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

- (심사요건) 수지전망과 경영건전성 기준, 내부통제장치 및 투자자 보호,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 유지, 전문인력 양성계획 등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실현가능할 것

심사항목	점검 내용
(1) 수지전망	
① 경영목표나 경쟁상황 등을 종합 고려한 경영전략 마련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경영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시장 진입, 마케팅 등 장·단기 경영전략 수립 ■ 경영전략의 내용이 시장상황, 경쟁상황 등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할 것
② 사업계획이 객관적이고 시장상황에 비추어 타당한 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시장규모, 시장점유율, 수수료 등을 추정 ■ 시설투자, 인력충원, 마케팅 등 초기투자비용을 고려
③ 사업계획을 고려한 추정재무제표의 작성과 추정 영업손익·영업비용의 증감에 있어 일관성의 유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익 추정결과를 추정 재무제표에 일관성 있게 반영 ■ 사업계획과 추정재무제표의 내용이 일치하고, 추정 영업손익·비용의 증감이 일관성을 유지 ■ 신청 업무 관련 향후 3년간 영업손익과 이를 반영한 3년간의 회사 전체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시 ■ 정상적·비관적·낙관적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시나리오별로 추정

<p>④ 재무제표가 적기시정 조치의 기준을 상회할 수 있을지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정결과 금산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초과 - 비관적 시나리오 등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하회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그 대응책을 제시
<p>⑤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기준을 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 제5-50조, <별표 15>, <별표 16>의 위험관리 기준을 충족할 것

(2) 내부통제장치 및 투자자보호

<p>① 이사회, 경영진의 구성 및 관계, 감사의 권한과 책임 등이 투명하고 투자자, 주주 보호와 재무 및 영업의 건전성 유지에 적합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 경영진, 감사의 구성 및 역할을 명확히 규정 ■ 영업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견제와 균형관계 확보
<p>② 영위하는 영업내용·규모에 맞게 임직원의 법규준수, 위험관리 및 임직원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적절한 감독 및 내부통제 체제를 구축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 감사위원회(감사), 준법감시인, 영업본부별, 부서별, 직원별 역할과 위임관계가 명확한 내부통제 체제의 구축 ■ 리스크관리·내부통제기준 및 절차의 문서화 여부 ■ 금융사고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인과 부서의 직무를 적절히 분리하고 있는지 여부
<p>③ 준법감시인의 업무상 독립성 보장, 이사회 등 회의참석 및 자료 접근권 보장 정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법감시인의 지위와 업무상 독립성 보장 ■ 준법감시인의 이사회 등 회의 참석 및 자료 접근권 보장

<p>④ 준법감시인,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등이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 보유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업 경험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 보유 여부 ■ 사회적 평판과 윤리면에서 직을 수행할 만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

(3)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 준수

<p>① 영업내용 및 방법이 법령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에 부합한지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방법서에 기술하는 영업내용 및 방법이 자본시장법 등에서 정하는 업무상 준수할 사항과 부합할 것
<p>②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구성 등의 지배구조가 법령에 위반하는지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구성 등의 지배구조가 상법, 자본시장법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구성 의무 여부 등
<p>③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임원이 향후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 소지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신청인 및 임원에 대한 제재 여부 검토

(4) 전문인력 양성계획 등

<p>① 인가신청 업무 영위에 필요한 전문인력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실현 가능한 전문인력 양성계획 마련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사업계획 및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도별·분야별 필요인력 추정 - 전문인력 스카웃 또는 자체 양성방안 마련 - 교육대상자·대상기관·교육기간 등의 세부계획 마련 - 필요예산 마련 및 사규(업무계획) 반영 등
--	--

- **(심사대상)** 예비인가 심사시 영위하고자 하는 인가단위에 맞는 사업계획서, 예상 수지계산서 등을 통해 순자본비율 및 레버리지 비율, 위험관리, 내부통제절차를 구축하였는지 여부 등을 심사
 - 실무적으로 본인가 심사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재심사하지 아니하고, 예비인가 후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적정 여부를 재심사

7. 건전경영 및 사회적 신용 요건

- (심사요건)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본인(금융회사)이 시행령에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심사항목

(1) 건전한 재무상태

- ① 법 제31조에 따른 경영건전성기준(겸영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경영건전성기준을 말한다)을 충족

(2) 사회적 신용

- ① 최근 3년간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법 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③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④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 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이상의 조치(이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포함)를 받은 후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을 것

1) 업무의 전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3년

2) 업무의 일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2년

3)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 (심사방법) 인가 신청시의 제출서류 및 확인서, 국내외 해당 기관*에 대한 사실 조회 등을 통해 확인

* 검찰청,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신용정보원, 예금보험공사 등 국내 기관과 해외 본국 감독기관

8. 이해상충 방지체계 요건

- (심사요건)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간, 특정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심사항목	점검 내용
(1) 내부통제기준	
① 내부통제기준에 반영된 이해상충의 파악.평가.관리체계가 합리적이고 검증 가능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의 파악,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제정·운영 ■ 내부통제조직의 설치 여부와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의 상시 파악 및 평가시스템 구축 여부 ■ 신규 업무 또는 신상품 취급시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②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의 적정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상충 고지방법, 거래 제한 및 주의 목록 등 이해상충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방법 및 절차 ■ 정보 유출 유인을 제거할 수 있는 절차와 내용 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계약 등에 비밀유지의무 조항 삽입 등
③ 내부통제기준의 이해상충 관리 체계 등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 가능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법감시인을 통한 이해상충 발생 요소의 정기 및 수시평가 의무화 여부 ■ (관련된 인가 신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매매·과당매매 점검 여부 - 조사분석자료 관련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매매 점검 여부 - 임직원의 자기매매 관리 등

(2) 정보교류차단

<p>① 정보교류 차단 부서간 정보차단벽(Chinese Wall)의 적정한 설치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교류 차단 대상 부서(업무)의 명확한 정의 및 차단·허용사항의 명확화 ■ 정보교류 차단 부서간 임직원 겸직 여부 ■ 정보교류 차단 부서간 사무공간 및 전산설비의 공동 이용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설비 등에 있어서 정보교류를 차단할 수 있는 물리적 시설 등의 구축 여부 - 교류차단 대상정보가 전산적으로 공유되지 않도록 독립적인 저장 및 관리, 열람 시스템 구축 여부 ■ 정보교류 차단업무 담당부서가 독립된 부서로 구분되어 그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는지 여부
<p>② 법령 등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정보차단벽간 정보 제공(Wall Cross)이 이루어지는 경우 관련 기록이 유지·관리될 수 있는 체계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교류 차단부서간 교류금지 정보 제공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제공 여부 확인 - 예외적 정보교류시 통과절차 및 준수사항, 준법감시인 확인사항 등의 규정화 및 확인절차 - 정보제공의 상당한 이유, 제공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 사전 승인절차, 정보제공 기록의 유지 및 관리, 정보의 업무외 목적사용 금지 등 ■ 회의 및 통신 규제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및 통신내용의 기록 유지와 준법감시인의 확인 의무화 등

□ (심사방법) 예비인가 심사시 사업계획서, 내부통제기준 등을 통해 심사한 후

○ 본인가시 실지조사 등을 통해 이행 여부 등을 확인

V. 기존 판단사례

형사처벌 관련 판단사례

- A사가 '09.4월 금융투자업 변경 예비인가를 신청한 사례에서,
 - A사의 최대주주인 B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2건, 총 15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었음

- 대주주가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 회사나 경영진의 의도적 위법행위가 아니라 직원의 금융 관련법령 위반행위로 회사가 양벌규정에 의해 벌금을 부과 받은 것임

※ 다만, '10.6월 변경인가시 대주주 요건이 완화되어 현재는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결격에 해당

VI. 유권해석

1. 최대주주 개념 명확화

-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합하여 가장 많은 경우 본인이 최대주주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본인과 복수의 특수관계인들 중 최다보유자 1인만을 최대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수를 합산한 결과 총 주식수가 동일한 자가 여럿인 경우 모두 최대주주에 해당함
 - 관계법령상 최대주주를 본인 및 그와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수를 합산한 결과 총 주식수가 동일한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모두 최대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2. 외국인(개인)의 대주주 가능 여부

- 자본시장법 제12조제2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에 의한 별표2에 “외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불가하다는 규정이 없는 바, 대주주가 가능한지 여부

□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외국인 개인인 경우에 인가정책 상 금융투자업 인가를 허용하고 있지 않음

3. 주요주주 판단 관련

- 상장법인 A의 주식을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합산하여 14%가량 (각자 2% X 7명) 보유하고 있을 경우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A사의 주요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요주주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를 말하며, 소유지분 산정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포함하지 않음
 - 다만, 특수관계인 명의의 지분이 본인의 계산(예: 주식의 계약명의신탁 등)으로 이루어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포함되어 주요주주에 해당 될 수 있음

※ 다만,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다면 최대주주에 해당할 수 있으며,

-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인 경우에는 주요주주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Ⅶ. 참고사항

1. 외국금융투자업자 등의 지점 추가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p>제16조(인가요건 등) ⑩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외국 금융투자업자,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외국보험회사(이하 이 항에서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이라 한다)가 금융투자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이하 이 항에서 "지점등"이라 한다)를 두는 경우에는 <u>해당 지점등 전부를 하나의 금융투자업자로 본다.</u> 이 경우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은 금융투자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국내에 <u>지점등을 추가로 두려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u></p>	<p>제2-10조(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의 지점등 신설신고서) ①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이 국내에 지점등을 추가로 두려는 때에는 영 제16조제10항 후단에 따라 <u>지점등을 추가로 두려는 날의 7일전까지 별지 제4호의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점등의 명칭과 소재지 2. 지점등에서 영위하려는 인가업무 단위에 관한 사항 3. 지점등의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4. 지점등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2.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등 지점 설치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3. 지점등의 인력,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지점등이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p>

□ 외국금융투자업자 등이 금융투자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등 전부를 하나의 금융투자업자로 보며
- 추가로 두려는 날의 7일 전에 금융위에 사전 신고하여야 함

2. 인가 유지 요건

자본시장법	시행령
<p>제15조(인가요건의 유지) 금융투자업자는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12조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같은 조 같은 항 제6호의2를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p>	<p>제19조(인가유지요건의 완화)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p>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또는 제1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p>	<p>1.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경우: 별표 1에 따른 해당 인가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유지요건은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회계연도말까지는 그 유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투자업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 인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5조에 따른 인가요건 또는 제20조에 따른 등록요건의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p>2. 법 제12조제2항제6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유지할 것</p> <p>가. 대주주가 별표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3)에 한하여 그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본다.</p> <p>나. 대주주가 별표 2 제4호 또는 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마목1)·3) 및 제4호라목에 한하여 그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라목 중 "최근 3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3년간"으로,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본국의 사법기관으로부터 5억원의 벌금형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로 본다.</p> <p>다. 대주주가 별표 2 제5호(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마목1)·3)에 한하여 그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본다.</p> <p>라. 법 제12조제2항제6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 호 나목의 요건에 한하여 그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최대주주"는 각각 "외국 금융투자업자"로 본다.</p>
	<p>② 금융위원회는 제1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완화하여 고시할 수 있다.</p>

□ 금융투자업자는 인가·등록을 받은 이후에도 인가·등록 요건을 계속 유지할 필요

○ 금융투자업자는 인가·등록요건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위는 인가·등록 취소가 가능

○ 다만, 자기자본·대주주 요건은 시행령에서 정한 완화된 요건을 적용

※ 전문인력수(금융투자업 규정 별표 라. 및 사.)는 이 규정 시행('17.3.22.) 후 금융투자업 인가(변경인가)를 받는 금융투자업자부터 적용

인가유지 요건의 완화

가. 완화된 자기자본 요건

□ 인가업무 단위별 최저 자기자본의 70%이상 유지하되 동 조건은 매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적용

○ 다만, 다음 회계연도말까지 자본보완이 이루어지는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나. 완화된 대주주 요건

□ 대주주의 출자능력(자기자본이 출자금액의 4배이상), 재무건전성, 부채비율(200%) 요건은 출자 이후인 점을 감안하여 적용 배제 하되 사회적 신용요건은 완화하여 적용

○ 최대주주에 대해서만 최근 5년간 법,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관련 **완화된 요건**(벌금형 → 5억원 이상의 벌금형)을 적용(법 시행후 위법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

□ 금산법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다만, 경제적 책임부담을 지는 경우에는 배제)

3

업무제한 조건의 취소·변경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규정
<p>제13조(인가의 신청 및 심사)</p> <p>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⑤ 제4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p> <p>⑥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하거나 제5항에 따라 그 인가의 조건을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융투자업인가의 내용 2. 금융투자업인가의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에만한다) 3. 금융투자업인가의 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만한다)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신청서 또는 조건의 취소·변경 신청서의 기재사항·첨부서류 등 인가신청 또는 조건의 취소·변경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심사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5조(인가조건의 부과)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의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인가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지분의 유지 및 양도제한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최대주주의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증액 또는 발행주식의 양도 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지위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양도의 적정성을 인정할 경우 2. 제1호 외에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 확보,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자본시장법에 따른 업무인가시 일부 증권회사·자산운용사 등에 대하여 업무범위를 제한하는 조건을 부가한 사례가 있음

※ 업무제한 조건이 부과된 주요 사례 (예시)

- (i) 증권사의 선물업(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중개업) 인가시 국내 한정조건으로 인가
- (ii) 자산운용사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재인가 당시 집합투자업 인가업무단위 중 일부업무에 한정하여 영위하도록 조건(예: MMF 제외 등)을 부과

- 금융투자업자가 동 업무범위 제한 조건의 취소·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 취소·변경에 따라 확대되는 업무에 상응하는 인가 요건*, 이를 허용할 정책적 타당성 요건**의 심사를 거쳐 금융위에서 동 조건의 취소·변경 여부를 결정

* 사업계획 타당성, 인력·물적 설비, 이해상충방지체계 등

** (i) 조건을 취소·변경할 만한 사정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 (ii) 인가조건을 취소·변경하더라도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4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공모 운용사 전환 기준

구분	사 모 운용사 → 단종 공모 운용사	사 모 운용사 → 종합 운용사	단종 공모 운용사 → 종합 운용사
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업 + 일임업 : 3년 (단, 운용업 1년 필수) - 운용업 + 리츠업 : 3년 (단, 운용업 2년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업 : 5년 	
수탁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펀드수탁고(NAV) + 일임계약고*(평가액) 1.5천억원^{1)**} 1) 운용업 영업기간(최근 1년간) 중 펀드수탁고는 평균 1천억원 이상 - 펀드수탁고(NAV) + 리츠수탁고*(평가액) 1.5천억원^{2)**} 2) 운용업 영업기간(최근 2년간) 중 펀드수탁고는 평균 1천억원 이상 * 계열사 수탁고 1/2만 인정 ** 36개월(월말 기준) 평균 	<p>[공통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펀드수탁고(NAV) + 일임계약고*(평가액) 1.5조원** * 계열사 수탁고 1/2만 인정 <p>[개별 요건]</p> <p>(증권 공모운용사) 1.5조원 중 공모펀드 0.5조원** 이상</p> <p>(부동산 or 특자 공모운용사) 증권, 부동산 및 특자 펀드 각 1.5천억원** 이상</p> <p>(사모 운용사) 증권, 부동산 및 특자 펀드 각 1.5천억원** 이상</p> <p>** 60개월(월말 기준) 평균</p>	
준법 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2년내 기관경고 이상 제재 없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2년내 기관경고 이상 제재 없을 것 	-

※ 업력 및 준법의식은 인가 신청일 기준(단, 수탁고는 인가 신청 직전월 기준)

5 업무 단위 추가등록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p>제16조의2(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 및 등록) ① 제12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경영 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같은 금융투자업의 종류에 속하는 금융투자상품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에 이를 등록(이하 “업무 단위 추가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하려는 금융투자업자는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3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업무 단위 추가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p> <p>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업무 단위 추가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항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3항 후단에 따른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결정하는 경우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제19조의3(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등록) ① <u>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란 별표 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 단위(같은 표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중 1a-1-2 및 2a-1-2는 제외한다)를 말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별표 1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종류 중 다음 각 목의 금융투자업의 경우: 해당 금융투자업에 속하는 금융투자상품 중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각각을 기준으로 하여 인가받지 않은 다른 업무 단위</u>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투자매매업 나.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다. 투자매매업(인수업만 해당한다) 2. <u>별표 1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종류 중 투자중개업의 경우: 투자중개업에 속하는 인가업무 단위 중 인가받지 않은 다른 업무 단위</u> <p>② <u>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 제2항(제7호, 제9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준용한다.</u></p> <p>※ 참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조(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호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p>⑥ 제5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한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p>	<p>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 3. 임원에 관한 사항 4. 경영하려는 인가업무 단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 5.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8.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사항</p>
<p>⑦ 제3항의 검토기간 및 제6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그 기간에서 제외한다.</p>	<p>9.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인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p>
<p>⑧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결정하거나 제6항에 따라 그 등록의 조건을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등록부 또는 투자중개업자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2.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등 설립이나 인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3.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4.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5. 인가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6.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p>
<p>1. 업무 단위 추가등록의 내용 2. 업무 단위 추가등록의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에 한정한다) 3. 업무 단위 추가등록의 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한정한다)</p>	<p>7.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 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8. 인력,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인가신청일(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인가신청 또는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인가신청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p>
<p>⑨ 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의 신청 또는 조건의 취소·변경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 또는 조건의 취소·변경 심사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10.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12조제2항제6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1.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2. 그 밖에 인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p>
<p>⑩ 제1항에 따라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한 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 6. 8.]</p>	

□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같은 금융투자업의 종류에 속하는 금융투자상품을 구성요소로 하여 업무 단위를 추가 하는 경우 업무 단위 추가등록 적용

○ 旣인가받은 상품과 같은 금융투자업* 내 다른 상품으로 업무를 추가하려는 경우 등록제 적용대상

* 투자매매업,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 투자매매업(인수업만 해당), 투자중개업

(추가시) 인가대상업무단위

		투자매매업 (인수포함)	투자매매업 (인수제외)	투자매매업 (장외파생)	ATS	투자중개업
(추가시) ↑ ↓ 추가등록대상업무단위	채무증권	채무증권	국채·지방채· 특수채	주권기초	매매체결대상	채무증권
	국채·지방채· 특수채	사채권		주권외기초		지분증권
	지분증권	지분증권	통화·이자율 기초	장내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증권 RP대상 증권				주권기초
					주권외기초	

○ 이 경우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 및 대주주 적격성(건전한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요건 심사 면제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p>제16조의3(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 제12조제2항 제1호 각 목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외국 금융투자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 변경을 통하여 금융투자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업을 양수하는 자가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제2항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요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춘 것으로 본다.</p> <p>[본조신설 2021. 6. 8.]</p>	<p>제19조의4(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6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법인”이란 <u>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그 발행주식 총수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국내법인으로서 법 제12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u></p> <p>② 법 제16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 변경”이란 <u>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변경을 말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2조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u>외국 금융투자업자: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변경</u>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가 제1항에 따른 <u>같은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법인</u>으로 변경되는 경우 나.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가 「<u>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u>최종모회사가 같은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로 변경되는 경우</u> 2. 제1항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u>국내법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법인이 같은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로 변경되는 경우</u> <p>③ 법 제16조의3에 따라 금융투자업 전부를 양수한 자가 법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u>다음 각 호의 인가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법 제12조제2항제3호</u> 2. <u>법 제12조제2항제4호</u>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p>3. 법 제12조제2항제6호. 다만, 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4호나목 및 다목의 요건은 제외한다.</p> <p>[본조신설 2021. 12. 9.]</p> <p>※ 참고 자본시장법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나. 외국 금융투자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외국에서 영위하고 있는 영업에 상당하는 금융투자업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2. 인가업무 단위별로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6.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제1호가목의 경우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나. 제1호나목의 경우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6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利害相衝)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 국내에 진입한 외국증권사가 조직형태를 단순히 변경하는 경우
(‘지점→법인’, ‘법인→지점’, ‘지점→지점(본점 변경)'), 인가심사 완화
 - 외국증권사 국내법인은 외국증권사의 완전자회사(발행주식 총수의 전부를 소유)를 말하며, 본점 변경은 동일한 그룹 내 본점 변경으로 제한
 - 이 경우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 인적·물적·전산설비 요건, 대주주 적격성(건전한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요건 심사 면제
- * 본점 변경의 경우 변경된 본점의 재무요건에 대해서는 심사 필요

<참고1> 신청서 양식

1. 예비인가 신청서

□ 금융투자업규정 <별지 1호>

예비인가 신청서

(투자매매업 · 투자중개업 · 집합투자업 · 신탁업)

1. 상 호

■ 첨부서류

- 1-1. 정관안(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
- 1-2.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등 설립 또는 예비인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예정)소재지

■ 첨부서류

- 2-1.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명칭 및 (예정)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1부

3. 선임예정 대표자 및 임원

임원수 : 명(상근: 명, 비상근: 명)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유주식수 (비율)	주요 경력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전문인력 여부	임원자격 적합여부

기재상의 주의

- 1. 임원자격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각호 및 이 규정 별표 2 제1호다목의 자격을 말한다.

■ 첨부서류

- 3-1. 선임예정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각 1부
- 3-2.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4. 인가업무 단위에 관한 사항

■ 첨부서류

- 4-1. 인가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각 1부

※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인가의 경우 종전에 영위하던 인가업무 단위와 추가하려는 인가업무를 구별하여 각각 기재하되, 업무방법은 추가하려는 인가업무에 대해서만 기재한다.

5. 재무에 관한 사항

■ 첨부서류

- 5-1.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설립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 5-2. 자본금 납입확약서, 예금·증권등의 잔고증명서 등 자기자본의 조달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다만,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영업기금 조달계획에 관한 서류 1부
- ※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5-1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첨부서류

- 6-1.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1부

7.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 전문인력 등 인력채용계획
 - 시설계획(사무공간 배치계획, 전산설비 내역, 보안설비 및 보완설비 등)
- ※ 채용이 예정된 전문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인력의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요경력, 전문자격내용 등)을 기재

■ 첨부서류

- 7-1. 채용이 예정된 전문인력 명단을 제출하는 경우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 및 자격확인 서류 1부
- 7-2. 사무공간, 전산설비 등이 구비된 경우 그 임차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 1부.

8.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첨부서류

- 8-1. 예비인가신청일(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인가신청의 경우 또는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인가신청의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 및 비율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 8-2.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12조제2항제6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9.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 첨부서류

- 9-1.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서류 1부
- 9-2. 이해상충행위가 발행하지 않도록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확인 서류 1부
- 9-3. 그 밖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서류

10. 그 밖의 기재사항

■ 첨부서류

- 10-1. 업무규정(안)(채권중개전문회사 및 전자증권중개회사의 경우) 1부
- 10-2. 추진일정을 기재한 서류 1부
- 10-3. 합작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외국인과의 합작을 통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사본 1부
- 10-4. 외국인투자인가서(해당되는 외국인의 경우) 사본 1부
- 10-5.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10-6.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2. 인가 신청서

□ 금융투자업규정 <별지 2호>

인가(변경인가) 신청서 (투자매매업 · 투자중개업 · 집합투자업 · 신탁업)

<p>1. 상 호</p> <p>■ 첨부서류</p> <p>1-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 1-2.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부 1-3.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등 설립 또는 인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p>																										
<p>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p> <p>■ 첨부서류</p> <p>2-1.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1부</p>																										
<p>3. 대표자 및 임원</p> <p style="text-align: right;">임원수 : 명(상근: 명, 비상근: 명)</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0%;">직위</th> <th style="width: 10%;">성명</th> <th style="width: 15%;">주민등록번호</th> <th style="width: 15%;">소유주식수 (비율)</th> <th style="width: 10%;">주요 경력</th> <th style="width: 10%;">상근 여부</th> <th style="width: 10%;">담당 업무</th> <th style="width: 10%;">전문인력 여부</th> <th style="width: 10%;">임원자격 적합여부</th> </tr> </thead> <tbody>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body> </table> <p>기재상의 주의</p> <p>1. 임원자격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 및 이 규정 별표 2 제1호다목의 자격을 말한다.</p> <p>■ 첨부서류</p> <p>3-1.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각 1부 3-2. 임원자격에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p>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유주식수 (비율)	주요 경력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전문인력 여부	임원자격 적합여부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유주식수 (비율)	주요 경력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전문인력 여부	임원자격 적합여부																		
<p>4. 인가업무 단위에 관한 사항</p> <p>■ 첨부서류</p> <p>4-1. 인가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각 1부</p> <p>※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인가의 경우 종전에 영위하던 인가업무 단위와 추가하려는 인가업무를 구별하여 각각 기재하되, 업무방법은 추가하려는 인가업무에 대해서만 기재한다.</p>																										

5. 재무에 관한 사항

■ 첨부서류

5-1.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설립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5-1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법 제16조의3 특례적용을 받는 경우 조직형태 변경 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제출한다.

6.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첨부서류

6-1.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1부

6-2. 집합투자업의 경우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신탁업자등 집합투자관계인과 체결계약서(안) 1부

※ 법 제16조의3 특례적용을 받는 경우 6.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기재를 생략한다.

7.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 인력채용계획 이행 현황(예비인가를 받은 경우)
- 전문인력의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요경력, 전문자격내용 등)
- 물적설비 현황(사무공간 배치현황, 전산설비 내역, 보안설비 및 보완설비 등)

■ 첨부서류

7-1.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 및 자격 확인 서류 각 1부

7-2. 사무공간, 전산설비 등의 임차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 법 제16조의3 특례적용을 받는 경우 7.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기재를 생략한다.

8.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첨부서류

8-1. 인가신청일(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인가신청 또는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인가신청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 및 비율을 기재한 서류 1부

8-2.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12조제2항제6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법 제16조의3 특례적용을 받는 경우 8.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기재를 생략한다. 다만, 영 제19조의5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2 제4호 나목 및 다목의 요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 첨부서류

- 9-1.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서류 1부
- 9-2. 이해상충행위가 발행하지 않도록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확인 서류 1부
- 9-3. 그 밖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서류

10. 그 밖의 기재사항

■ 첨부서류

- 10-1. 업무규정(채권중개전문회사 및 전자증권중개회사의 경우) 1부
- 10-2. 합작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외국인과의 합작을 통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사본 1부
- 10-3. 자본금납입증명서 등 예비인가시 부가된 조건이 있는 경우 이행관련 확인서류 각 1부
- 10-4. 외국인투자인가서(해당되는 외국인의 경우) 사본 1부
- 10-5. 예비인가 제출서류와 차이가 있는 경우 해당서류 각 1부
- 10-6.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10-7.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10-8.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16조의3 특례적용을 받으려는 경우, 법 제16조의3 및 영 제19조의5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함

※ 예비인가 신청시의 첨부서류와 동일할 경우 예비인가 신청서와 상위함이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제출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제1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3. 업무 단위 추가등록 신청서

□ 금융투자업규정 <별지 제2호의3>

업무 단위 추가등록 신청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1. 상 호

■ 첨부서류

- 1-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
- 1-2.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부
- 1-3. 이사회 의사록 등 등록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

■ 첨부서류

- 2-1.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1부

3. 대표자 및 임원

임원수 : 명(상근: 명, 비상근: 명)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유주식수 (비율)	주요 경력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전문인력 여부	임원자격 적합여부

기재상의 주의

- 1. 임원자격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 및 이 규정 별표 2 제1호다목의 자격을 말한다.

■ 첨부서류

- 3-1.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각 1부
- 3-2. 임원자격에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4. 추가등록하려는 업무 단위에 관한 사항

■ 첨부서류

- 4-1. 추가등록하려는 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각 1부

※ 종전에 영위하던 인가업무 단위와 추가등록하려는 업무를 구별하여 각각 기재하되, 업무방법은 추가등록하려는 업무에 대해서만 기재한다.

5. 재무에 관한 사항

■ 첨부서류

5-1.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설립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5-1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 인력채용계획 이행 현황(예비인가를 받은 경우)
- 전문인력의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요경력, 전문자격내용 등)
- 물적설비 현황(사무공간 배치현황, 전산설비 내역, 보안설비 및 보완설비 등)

■ 첨부서류

6-1.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 및 자격 확인 서류 각 1부

6-2. 사무공간, 전산설비 등의 임차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7.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 첨부서류

7-1.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서류 1부

7-2. 이해상충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확인 서류 1부

7-3. 그 밖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서류

8. 그 밖의 기재사항

■ 첨부서류

8-1. 업무규정(채권중개전문회사 및 전자증권중개회사의 경우) 1부

8-2. 합작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외국인과의 합작을 통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사본 1부

8-3. 자본금납입증명서 등 예비인가시 부가된 조건이 있는 경우 이행관련 확인서류 각 1부

8-4. 외국인투자인가서(해당되는 외국인의 경우) 사본 1부

8-5. 예비인가 제출서류와 차이가 있는 경우 해당서류 각 1부

8-6.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1부

8-7.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함

※ 예비인가 신청시의 첨부서류와 동일할 경우 예비인가 신청서와 상위함이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제출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4. 외국금융투자업자들의 지점 등 신설 신고서

□ 금융투자업규정 <별지 4호>

외국금융투자업자들의 지점 등 신설 신고서

<p>1. 상 호</p> <p>■ 첨부서류 1-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 1-2. 법인등기부등본에 준하는 서류 1부</p>
<p>2. 지점등의 소재지 및 연락처</p> <p>■ 첨부서류 2-1. 지점등의 위치·연락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p>
<p>3. 지점등이 영위하려는 인가업무 단위에 관한 사항</p> <p>■ 첨부서류 3-1. 인가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각 1부</p>
<p>4. 지점등의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p> <p>- 직원현황(전체직원의 수를 관리직, 영업직등 회사의 특성에 맞게 분류기재) - 전문인력의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요경력, 전문자격내용 등) - 시설계획(사무공간 배치계획, 전산설비 내역, 보안설비 및 보완설비 등)</p> <p>■ 첨부서류 4-1.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및 자격 확인 서류 각 1부 4-2. 사무공간, 전산설비 등의 임차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등의 서류 1부</p>
<p>5.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p> <p>■ 첨부서류 5-1.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서류 1부 5-2. 이해상충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확인 서류 1부 5-3. 그 밖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서류</p>
<p>6. 그 밖의 기재사항</p> <p>■ 첨부서류 6-1.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영문제출가능서류는 영문, 국문서류를 함께 제출</p>
<p>「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9항(또는 제271조의2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p> <p>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p>

<참고2> 사업계획 요약 양식

※ 투자매매·증개업 신청 시 기준 예시

1. 신청 개요

회사명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문 : ◆ 영문 : 		
소재지			
	인가업무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현재 영위중인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추가하고자 하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인가신청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자기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최근 사업년도말 기준 		
임원구성	직위	성명	주요이력
최대주주			
주주구성 ¹⁾	주주명	지분율	구분 ²⁾

주1) 대주주요건 심사대상 및 5% 이상은 별도 구분하여 표시하고 나머지는 통합하여 기타로 표시

2) '금융기관', '내국법인', '개인', '외국법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로 구분

3) 칸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 삽입 또는 삭제하여 적절하게 조정

2. 심사대상 대주주 현황

대주주 현황	주주명	구분 ¹⁾	의결권 있는 주식수	비율(%)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예) 배우자, 자녀 등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사실상 지배자				
최대주주의 대표자				
주요주주				

주 1) '금융기관', '내국법인', '개인', '외국법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 '외국인' 등으로 구분

※ 외국금융투자업자의 지점인 경우 : 외국금융투자업자명칭 기재

※ 필요시 대주주 등 신청인의 지배관계를 나타내는 도표 첨부

3. 자기자본 현황

① 자기자본(202×.××.××. 신청일 현재) : (1) + (2) - (3) = 억원

(1) 최근 사업연도말(202×.××.××.) 현재 자기자본 : 억원

(2) 자본금의 증감분 : 억원*

(3) 경영금융투자업자의 본업에 대한 요구 자본금 : 억원**

* 최근 사업연도말일 이후 인가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

** 경영금융투자업자의 자기자본은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본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전업금융투자업자의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② 최저 자기자본 : (1) + (2) = 억원

(1) 기존 인가단위에 대한 유지 자기자본 : 억원

(단위: 억원)

인가단위	금융투자업 종류	금융투자상품 범위	투자자 유형	최저 자기자본	유지 자기자본*
합 계					

* 인기업무 단위별 최저 자기자본의 70%

(2) 추가 인가단위에 대한 최저 자기자본 : 억원

(단위: 억원)

인가단위	금융투자업 종류	금융투자상품 범위	투자자유형	최저자기자본
합 계				

4. 전문인력 현황

1. 전체 인력현황(신청일 기준)

구분	인원	해당 업무 경력별 ¹⁾ 인원수				
		1년 미만	1년~2년 미만	2년~5년 미만	5년 이상	비고 ²⁾
자산운용업무						
기업금융업무						
조사분석업무						
투자권유자문인력						
위험관리업무						
내부통제업무						
전산업무						
장외파생후선업무						
전문인력 소계						
재무관리						
인사/총무						
기타						
영업지원 소계						
등기임원						
총 계 ³⁾						

주 1) 경력은 당해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근무 기간도 포함

2) 주식팀, 채권팀 등 해당경력자가 배치되는 부서명칭

3) 등기임원, 미등기임원, 직원을 합한 전체 임직원 수

< 자격증 소지자 현황 >

구분	공인 회계사	변호사	금융투자 분석사	재무위험 관리자	투자자산운용사 (일임운용인력 제외)
자격증 수					

(작성요령)

① 복수 자격자의 경우 중복기재 가능

② 금융투자분석사, 재무위험관리사의 경우 국제자격증도 포함

2. 신청 인가업무를 위한 인력 현황(신청일 기준)

인력 소속	내부 인력 ¹⁾	기 확보 인력 ²⁾	채용 예정 인력 ³⁾
자산운용	홍길동(입사일)	홍길동(입사일)	홍길동(입사예정일)
기업금융업무			
조사분석업무			
투자권유자문인력 ⁴⁾			
장외과생후선업무			
합계			

(작성요령)

- ① 4년 이상 해당업무 경력을 가진 인력을 대상으로 작성, 단, 위험관리전문인력, 내부통제전문 인력은 5년 이상 해당업무 경력을 가진 인력을 대상으로 작성
- ② 금융투자업 규정 <별표2> 1. 인력에 관한 요건에서 규정된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작성

- 주1) 기존 인력 중 신청 인가업무를 담당할 예정 인력을 기재
 2) 신청 인가업무 영위를 위해 채용을 완료한 인력을 기재
 3) 본인가 신청 전까지 확보할 인력을 기재
 4) 투자권유자문인력은 ‘홍길동 외 00명’으로 기재

3. 신청 인가업무를 위한 인력의 경력 현황(신청일 기준)

성명	채용 여부	소속	직급	해당 업무 경력 ¹⁾	자격증 ²⁾	비고 ³⁾
홍길동	채용	영업부	부장	* 총 7년 1.○○증권 3년(영업팀) 2.○○선물 4년(영업팀)	투자자산운용사	
...						

(작성요령) “2. 신청 인가업무를 위한 인력 현황”에 기재한 인력에 대한 경력 현황을 기재

- 주1) 투자권유자문인력은 ‘홍길동외 00명’으로 기재하고 개인별 경력은 기재하지 않아도 됨.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채용 인력의 경우 ‘해당 업무 경력’을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으로 구분하여 기재, 단, 위험관리전문인력, 내부통제전문인력은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으로 구분하여 기재
- 2) 금융투자업 규정 <별표2> 1. 인력에 관한 요건에서 규정된 전문인력과 관련한 전문자격증에 한함
- 3) 해당업무 경력 2년 이상 인력 중 금융·재무 또는 전산관련 석사학위 이상 보유시 기재, 단, 위험관리전문인력, 내부통제전문인력은 3년 이상인 경우 기재

5. 물적 설비 현황

* 사업계획서, 기타 첨부서류 등의 해당 페이지를 상단에 명기한 후 인가심사 요건 해당 내용을 적절히 요약하여 핵심적 내용을 표 안에 기술 (필요시 테이블 등 작성가능)

(1) 전산설비 및 통신수단	관련 내용
<p>① 주전산기, DB서버, 저장장치, 단말기, 전용회선 등 업무관련 전산설비가 안정성 및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었으며, 향후 영업의 급속한 확대에도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구축되어 있을 것</p>	<p>☞ p. ~ p. (사업계획서 본문의 해당 페이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업무 영위에 적합한 시스템 보유 및 가용성·안정성 확보에 관한 핵심적 내용을 서술 - 주전산기, DB서버, 매매관련(시세관리, 주문관리, 결제관리, 원장관리 등) 서버, 통신서버, 웹서버, 보안서버 등 - 저장장치, 단말기 등 기타 주변장치 - 해당업무 영위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등
<p>② 침입탐지, 침입방지시스템, 방화벽 등 보안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p>	<p>☞ p. ~ p. (사업계획서 본문의 해당 페이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성이 검증된 보안시스템 구축에 관한 핵심적 내용을 서술 -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이동식저장장치 통제 프로그램,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탐지 및 백신프로그램, 방화벽 등
<p>③ 정보이용자 확인 및 전산실 출입 통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을 것</p>	<p>☞ p. ~ p. (사업계획서 본문의 해당 페이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이용자 확인 및 통제에 관한 핵심적 내용을 서술
<p>④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백업장치가 구축되어 있고, 백업자료가 별도 장소에 보관·관리되고 있을 것</p>	<p>☞ p. ~ p. (사업계획서 본문의 해당 페이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거래정보 등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백업장치 구축에 관한 핵심적 내용을 서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업자료의 소산보관장소 마련 - 기간별 소산보관대책 마련 - 백업과 관련한 외부업체와의 계약 등
(2)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관련 내용
<p>① 이해상충부서간 별도 업무공간을 갖추는 등 정보차단벽(Chinese Wall)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p>	<p>☞ p. ~ p. (사업계획서 본문의 해당 페이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상충부서간정보차단벽 설치에 관한 핵심적 내용을 서술 - 이해상충부서간 별도 층 배치 등 업무공간 구분 - 이해상충부서간 출입통제(카드키 등)
<p>② 부서인원 대비 충분한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를 갖추는 것</p>	<p>☞ p. ~ p. (사업계획서 본문의 해당 페이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공간 및 부서별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기기 확보에 관한 핵심적 내용을 서술 - 총 면적 및 전용면적, 총 면적 및 전용면적 대비 직원 1인당 사무공간 면적(단위:m²)
<p>③ 내부기관 및 감독기관 등이 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 장애가 없을 것</p>	<p>☞ p. ~ p. (사업계획서 본문의 해당 페이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적 내용을 서술
(3) 보안설비 및 보완설비	관련 내용
<p>① 전산설비, 통신수단, 그 밖에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검증된 보안설비를 갖추는 것</p>	<p>☞ p. ~ p. (사업계획서 본문의 해당 페이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실 보안설비에 관한 핵심적 내용을 서술 - UPS, 항온항습기, 소화설비, 비상발전기 등 보유현황 - CCTV 위치, 기록 보존기간 - 장애에 대비한 주요 전산장비 및 통신회선의 이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 및 전산실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미인가자 접근 차단에 관한 핵심적 내용을 서술
<p>② 파업 등 불시사태에 대비한 비상 계획(Contingency Plan)이 마련 되어 있을 것</p>	<p>☞ p. ~ p. (사업계획서 본문의 해당 페이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CP(Business Contingency Plan) 마련에 관한 핵심적 내용을 서술
<p>③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가 확보되어 있을 것</p>	<p>☞ p. ~ p. (사업계획서 본문의 해당 페이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발생에 대비한 비상복구시스템 구비에 관한 핵심적 내용을 서술 - DR센터(위치), 백업체계구축 등
<p>④ 비상사태 발생시 즉시 구현이 가능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 마련되어 있을 것</p>	<p>☞ p. ~ p. (사업계획서 본문의 해당 페이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CP마련에 관한 핵심적 내용을 서술 - BCP를 포함한 재해복구 훈련 실시 - 재해복구 훈련시 복구테스트 결과
<p>(4) 기타</p>	<p style="text-align: center;">관련 내용</p>
<p>① 그 밖에 인가신청 업무를 안정적 이고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물적 설비를 적정하게 구축 하고 있을 것</p>	<p>☞ p. ~ p. (사업계획서 본문의 해당 페이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적 내용을 서술

6. 사업계획 타당성

* 사업계획서, 기타 첨부서류 등의 해당 페이지를 상단에 명기한 후 인가심사 요건 해당 내용을 적절히 요약하여 핵심적 내용을 표 안에 기술 (필요시 테이블 등 작성가능)

(1) 수지전망 및 경영건전성	관련 내용
<p>① 경영목표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영전략이 마련되어 있을 것</p>	<p>☞ p. ~ p. (사업계획서 본문의 해당 페이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경영목표를 기술하고, 경쟁상황 극복방안(경쟁사 대비 우위)등을 서술
<p>② 사업계획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추정이 이루어졌으며, 시장상황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p>	<p>☞ p. ~ p. (사업계획서 본문의 해당 페이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에 대한 추정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경영전략 등의 실현 가능성에 관한 핵심적 내용을 서술
<p>③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추정재무제표가 작성되었을 것</p>	<p>☞ p. ~ p. (사업계획서 본문의 해당 페이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시장규모, 시장 점유율, 수수료 등을 추정하고 이에 관한 핵심적 내용을 서술
<p>④ 추정 영업손익·영업비용의 증감에 있어 일관성이 유지되고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p>	<p>☞ p. ~ p. (사업계획서 본문의 해당 페이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과 추정재무제표의 내용이 일치하고, 추정 영업손익·비용의 증감이 일관성을 유지 ■ 신청 업무 관련 향후 3년간 영업손익과 이를 반영한 3년간의 회사 전체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시

<p>⑤ 재무상태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을 상회할 수 있을 것</p>	<p>☞ p. ~ p. (사업계획서 본문의 해당 페이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상 향후 3년간 순자본비율 추정 결과 <p style="text-align: center;">추정 NCR비율 (단위 : 억원,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ffffcc;">구분</th> <th style="background-color: #ffffcc;">1차년도</th> <th style="background-color: #ffffcc;">2차년도</th> <th style="background-color: #ffffcc;">3차년도</th> </tr> </thead> <tbody> <tr><td>영업용순자본(A)</td><td></td><td></td><td></td></tr> <tr><td>총위험액(B)</td><td></td><td></td><td></td></tr> <tr><td>잉여자본(C=A-B)</td><td></td><td></td><td></td></tr> <tr><td>필요유지자기자본(D)</td><td></td><td></td><td></td></tr> <tr><td>순자본비율(E=C/D)</td><td></td><td></td><td></td></tr> <tr><td>당기순이익</td><td></td><td></td><td></td></tr> </tbody> </table> <p>※ 부동산 신탁사는 종전대로 영업용순자본 비율을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상 향후 3년간 레버리지비율 추정 결과 <p style="text-align: center;">추정 레버리지비율 (단위 : 억원,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ffffcc;">구분</th> <th style="background-color: #ffffcc;">1차년도</th> <th style="background-color: #ffffcc;">2차년도</th> <th style="background-color: #ffffcc;">3차년도</th> </tr> </thead> <tbody> <tr><td>총자산(A)</td><td></td><td></td><td></td></tr> <tr><td>자기자본(B)</td><td></td><td></td><td></td></tr> <tr><td>레버리지비율 (C=A/B)</td><td></td><td></td><td></td></tr> </tbody> </table>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영업용순자본(A)				총위험액(B)				잉여자본(C=A-B)				필요유지자기자본(D)				순자본비율(E=C/D)				당기순이익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총자산(A)				자기자본(B)				레버리지비율 (C=A/B)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영업용순자본(A)																																													
총위험액(B)																																													
잉여자본(C=A-B)																																													
필요유지자기자본(D)																																													
순자본비율(E=C/D)																																													
당기순이익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총자산(A)																																													
자기자본(B)																																													
레버리지비율 (C=A/B)																																													

(2) 내부통제장치 및 투자자보호	관련 내용
---------------------------	--------------

<p>① 이사회와 경영진의 관계, 이사회 구성 및 운영방향, 감사의 권한과 책임 등이 투명하고, 투자자 또는 주주 보호와 재무 및 영업의 건전성 유지에 적합할 것</p>	<p>☞ p. ~ p. (사업계획서 본문의 해당 페이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 경영진, 감사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관련 내규 등에 관하여 서술
--	---

<p>② 인가받은 영업내용·규모에 맞게 임직원의 법규준수, 위험관리 및 임직원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적절한 감독 및 내부통제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p>	<p>☞ p. ~ p. (사업계획서 본문의 해당 페이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자체의 내부통제관련 기준 및 운영 실태 등에 관한 핵심적 내용을 서술
<p>③ 준법감시인의 업무상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으며, 이사회 등 회의 참석 및 자료 접근권이 보장되어 있을 것</p>	<p>☞ p. ~ p. (사업계획서 본문의 해당 페이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법감시인의 권한과 업무상 독립성 보장 등에 관한 핵심적 내용을 서술
<p>④ 준법감시인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것</p>	<p>☞ p. ~ p. (사업계획서 본문의 해당 페이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업 경험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 보유에 관한 핵심적 내용을 서술
<p>⑤ 사외이사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것</p>	<p>☞ p. ~ p. (사업계획서 본문의 해당 페이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업 경험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 보유에 관한 핵심적 내용을 서술
<p>⑥ 감사(감사위원)가 대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것</p>	<p>☞ p. ~ p. (사업계획서 본문의 해당 페이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업 경험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 보유에 관한 핵심적 내용을 서술
<p>(3)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 준수</p>	<p style="text-align: center;">관련 내용</p>
<p>① 영업내용 및 방법이 법령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에 부합할 것</p>	<p>☞ p. ~ p. (사업계획서 본문의 해당 페이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적 내용을 서술

<p>②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구성 등의 지배구조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p>	<p>☞ p. ~ p. (사업계획서 본문의 해당 페이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적 내용을 서술
<p>③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임원이 법령 위반 또는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 등의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되는 등 향후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 질서 위반의 소지가 크지 않을 것</p>	<p>☞ p. ~ p. (사업계획서 본문의 해당 페이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적 내용을 서술
<p>(4) 전문인력 양성계획</p>	<p>관련 내용</p>
<p>① 사업계획 및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인가신청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전문인력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양성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며, 그 계획이 실현가능할 것</p>	<p>☞ p. ~ p. (사업계획서 본문의 해당 페이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인력 양성방안 마련, 교육대상자·대상기관·교육기간 등의 세부계획에 관한 핵심적 내용을 서술
<p>(5) 기타</p>	<p>관련 내용</p>
<p>① 그 밖에 인가신청 업무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계획을 적정하게 구비하고 있을 것</p>	<p>☞ p. ~ p. (사업계획서 본문의 해당 페이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적 내용을 서술

7. 이해상충 방지체계 현황

* 사업계획서, 기타 첨부서류 등의 해당 페이지를 상단에 명기한 후 인가심사 요건 해당 내용을 적절히 요약하여 핵심적 내용을 표 안에 기술 (필요시 테이블 등 작성가능)

(1) 이해상충의 파악·평가·관리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관련 내용
<p>① 내부통제기준에 반영된 이해상충의 파악·평가·관리 체계가 합리적이고 검증 가능할 것</p>	<p>☞ p. ~ p. (사업계획서 본문의 해당 페이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의 제정·운영, 내부통제조직의 설치 여부와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의 상시 파악 및 평가시스템 구축 여부에 관한 핵심적 내용을 서술
<p>②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이 적정할 것</p>	<p>☞ p. ~ p. (사업계획서 본문의 해당 페이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상충 고지방법, 거래 제한 및 주의 목록 등 이해상충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핵심적 내용을 서술
<p>③ 내부통제기준의 이해상충 관리체계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이 이루어 질 것</p>	<p>☞ p. ~ p. (사업계획서 본문의 해당 페이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상충 발생 요소의 정기 및 수시평가에 관한 핵심적 내용을 서술
<p>④ 그 밖에 인가신청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p>	<p>☞ p. ~ p. (사업계획서 본문의 해당 페이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적 내용을 서술

(2) 정보교류차단	관련 내용
<p>① 정보교류 차단 부서간 정보차단벽 (Chinese Wall)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을 것</p>	<p>☞ p. ~ p. (사업계획서 본문의 해당 페이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교류 차단 대상 부서(업무)의 명확한 정의 및 차단·허용사항에 관한 핵심적 내용을 서술 - 공간·설비 등에 있어서 정보교류를 차단할 수 있는 물리적 시설 등의 구축 여부 - 교류차단 대상정보가 전산적으로 공유되지 않도록 독립적인 저장 및 관리, 열람 시스템 구축 여부
<p>② 법령 등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정보차단벽간 정보제공(Wall Cross)이 이루어지는 경우 관련 기록이 유지·관리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p>	<p>☞ p. ~ p. (사업계획서 본문의 해당 페이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교류 차단부서간 교류금지 정보 제공에 관한 핵심적 내용을 서술 - 정보 제공 여부 확인 - 예외적 정보교류시 통과절차 및 준수사항, 준법 감시인 확인사항 등의 규정화 및 확인절차
<p>③ 그 밖에 인가신청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정보차단벽 간 정보교류를 합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p>	<p>☞ p. ~ p. (사업계획서 본문의 해당 페이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적 내용을 서술

<참고3> 임원·신청인·대주주 확인서 양식

1. 임원 확인서

임원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확 인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지배구조법 제2조제7호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해당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사 또는 감사위원 2.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또는 행정처분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 그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 3.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해임요구, 그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 4. 각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 	

<p>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를 받은 자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원(업무집행책임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한다):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해임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한다)부터 5년 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한다) 또는 업무집행정지: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한다)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 다. 문책경고: 문책경고일부터 3년 2. 직원(업무집행책임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면직요구: 면직요구일부터 5년 나. 정직요구: 정직요구일부터 4년 다. 감봉요구: 감봉요구일부터 3년 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제1호 또는 제2호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하는 기간 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기간 	
<p>해당 금융투자업자와 여신거래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서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자</p>	
<p>최근 5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이었거나 불건전한 금융거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의 대주주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p>	
<p>최근 5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p>	

본인은 상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각호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2. 신청인(본인) 확인서

신청인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확인
법 제31조에 따른 경영건전성기준(겸영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경영건전성기준을 말한다)을 충족	
최근 3년간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법 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이상의 조치(이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포함)를 받은 후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을 것 1) 업무의 전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3년 2) 업무의 일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2년 3)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3. 대주주 확인서

A. 신규인가

(1) 최대주주/주요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가. 금융기관[A-(1)-가]

대주주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확인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그 법인의 수정채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4배 이상일 것	
채무상태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기준이 없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과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동법에 따른 기업집단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경우 그 소속기업 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채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출자자금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조성한 자금으로서 그 합계액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차입에 따라 조성한 자금이 아닌 것으로 인정될 것 (1) 유상증자 (2) 1년내의 고정자산 매각 (3) 내부유보 (4)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p>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3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p>	
<p>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p>	
<p>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지 않을 것</p>	
<p>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p>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2-6조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나. 금융기관 이외의 내국법인[A-(1)-나]

대주주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확인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그 법인의 수정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4배 이상일 것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당해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경우 그 소속기업 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출자자금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조성한 자금으로서 그 합계액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차입에 따라 조성한 자금이 아닌 것으로 인정될 것 (1) 유상증자 (2) 1년내의 고정자산 매각 (3) 내부유보 (4)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3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p>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지 않을 것</p>	
<p>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p>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2-6조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다. 내국인으로서 개인[A-(1)-다]

대주주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확인
지배구조법 제5조제1항각호의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출자자금 중 객관적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에 따라 확인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마련된 자금일 것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적법한 납세절차를 취득한 상속재산 또는 수증재산 처분자금 (2)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3)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소득재원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3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직무정지를 받거나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지 않을 것	

<p>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p>	
--	--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2-6조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라. 외국법인[A-(1)-라]

대주주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확인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그 법인의 수정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4배 이상일 것	
인가신청일 현재 인가받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을 외국에서 영위하고 있을 것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감독기관이 제재방법으로 행하는 활동·기능·영업에 대한 제한명령, 등록의 취소나 정지등이 포함되며 행정처분에 따라 벌금 또는 민사제재금 징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국 감독기관의 전체적인 제재 수준 및 위법행위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3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지 않을 것	

<p>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p>	
--	--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2-6조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

① 업무집행사원 등이 금융기관[A-(1)-마-①]

대주주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확인
재무상태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기준이 없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과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동법에 따른 기업집단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경우 그 소속기업 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채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3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지 않을 것	

<p>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p>	
--	--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2-6조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② 업무집행사원 등이 내국법인[A-(1)-마-②]

대주주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확인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3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당해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경우 그 소속기업 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2-6조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③ 업무집행사원 등이 내국인으로서 개인[A-(1)-마-③]

대주주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확인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신청한 금융투자업 등록업무 단위와 동일한 등록업무 단위의 직권말소를 받은 자이거나, 그 자의 임원 또는 대주주였던 사실	
지배구조법 제5조제1항각호의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직무정지를 받거나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2-6조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④ 업무집행사원 등이 외국법인[A-(1)-마-④]

대주주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확인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3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감독기관이 제재방법으로 행하는 활동·기능·영업에 대한 제한명령, 등록의 취소나 정지등이 포함되며 행정처분에 따라 벌금 또는 민사제재금 징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국 감독기관의 전체적인 제재 수준 및 위법행위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2-6조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2) 최대주주의 최대주주/사실상 지배자/ 최대주주의 대표자

가. 금융기관[A-(2)-가]

대주주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확인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3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지 않을 것	
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2-6조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나. 금융기관 이외의 내국법인[A-(2)-나]

대주주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확인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3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지 않을 것	
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2-6조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다. 개인[A-(2)-다]

대주주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확인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3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지배구조법 제5조제1항각호의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직무정지를 받거나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지 않을 것	
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2-6조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라. 외국인[A-(2)-라]

대주주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확인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감독기관이 제재방법으로 행하는 활동·기능·영업에 대한 제한명령, 등록의 취소나 정지등이 포함되며 행정처분에 따라 벌금 또는 민사제재금 징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국 감독기관의 전체적인 제재 수준 및 위법행위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3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지 않을 것	
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2-6조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

- ① 업무집행사원 등이 금융기관[A-(2)-마-①]
⇒ [A-(1)-마-①]과 같음
- ② 업무집행사원 등이 내국법인[A-(2)-마-②]
⇒ [A-(1)-마-②]과 같음
- ③ 업무집행사원 등이 내국인으로서 개인[A-(2)-마-③]
⇒ [A-(1)-마-③]과 같음
- ④ 업무집행사원 등이 외국법인[A-(2)-마-④]
⇒ [A-(1)-마-④]과 같음

B. 변경인가(업무추가)

(1) 최대주주

가. 금융기관/내국법인/개인[B-(1)-가]

대주주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확인
<p>출자자금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조성한 자금으로서 그 합계액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차입에 따라 조성한 자금이 아닌 것으로 인정될 것</p> <p>(1) 유상증자 (2) 1년내의 고정자산 매각 (3) 내부유보 (4)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p>	
<p>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p>	
<p>「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p>	
<p>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p>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2-6조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나. 외국법인[B-(1)-나]

대주주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확인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과 관련하여 본국의 사법기관으로부터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2-6조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

① 업무집행사원 등이 금융기관/내국법인/개인[B-(1)-다-①]

대주주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확인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2-6조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② 업무집행사원 등이 외국법인[B-(1)-다-②]

⇒ [B-(1)-나]와 같음

[2] 최대주주 이외의 대주주

가. 금융기관/내국법인/개인[B-(2)-가]

대주주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확인
<p>출자자금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조성한 자금으로서 그 합계액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차입에 따라 조성한 자금이 아닌 것으로 인정될 것</p> <p>(1) 유상증자 (2) 1년내의 고정자산 매각 (3) 내부유보 (4)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p>	
<p>「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p>	
<p>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p>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2-6조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나. 외국법인/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등 [B-(2)-나]

대주주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확인
<p>「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p>	
<p>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p>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2-6조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참고4>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요건 관련 법규

1. 법인격 요건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p>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p> <p>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u></p> <p>나. 외국 금융투자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외국에서 영위하고 있는 영업에 상당하는 금융투자업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p>	<p>제16조(인가요건 등) ① <u>법 제12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 6.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7. 「보험업법」에 따른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8. <u>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u> 	<p>제2-1조(인가요건) ① <u>영 제16조제1항제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u></p>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 제1호의 신용협동조합 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1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4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2. '대주주' 및 '외국 금융투자업자' 요건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p>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p>6.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는 것</p> <p>가. 제1호가목의 경우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는 것</p>	<p>제16조(인가요건 등) ⑦ 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법인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p>⑥ 대주주(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별표 2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요건을 완화하여 고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8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2.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회사와 합병·분할하거나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p>제2-1조(인가요건) ② 영 제16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최대주주인 법인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라 한다)으로서 설립근거법에 따른 소유한도 유무, 주식소유의 분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그 금융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p> <p>제2-6조(인가 심사기준) ② 영 제1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당해 국내지점의 본점을 말한다)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p>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p>나. 제1호나목의 경우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p> <p>제16조(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① 금융투자업자는 제12조에 따라 인가받은 인가업무 단위 외에 다른 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를 적용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함에 있어서 제12조제2항제6호의 인가요건에 관하여는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u></p>	<p>② 법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이하 “외국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별표 2</u> 제4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을 갖출 것 2. 외국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본국의 감독기관의 감독내용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감독기준에 맞을 것 <p>제19조의2(변경인가요건의 완화)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주주가 <u>별표 2</u>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같은 표 제1호라목 및 마목1)·3)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별금형”은 “5억원의 별금형”으로 본다. 2. 대주주가 <u>별표 2</u> 제4호 또는 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3) 및 제4호라목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p>③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u>별표 3</u> 제1호라목과 같다.</p>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p>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라목 중 “최근 3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3년간”으로,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로 본다.</p> <p>3. 대주주가 <u>별표 2</u> 제5호(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3)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본다.</p> <p>4. 법 제12조제2항제6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제2호의 요건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최대주주”는 각각 “외국 금융투자업자”로 본다.</p>	

자본시장법 시행령 [별표2]

대주주의 요건(제16조제6항 관련)

구분	요건
<p>1. 대주주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하며, 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p>	<p>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나.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다. 그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에 속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기업집단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채무계열(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이 경우 금융기관은 부채비율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라. 출자금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차입하여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p> <p>마.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법 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영업의 허가 등이 취소될 당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친족 또는 같은 항 제2호의2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임원에 해당하거나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에서 분리되었다고 인정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p>2. 대주주가 제1호 외의 내국법인(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투자목적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p>	<p>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다. 그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라.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3. 대주주가 내국인으로 서 개인인 경우	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나.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대주주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 (이하 "외국법인"이라 한 다)인 경우	가. 인가신청일 현재 외국에서 인가 받으려는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을 것 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라.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과 관련하여 본국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마. 제1호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5. 대주주가 기관전용 사 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협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주주나 사원(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협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나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나목·다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제2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1호마목 및 제2호나목·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제3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1호마목 및 제3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라. 제4호의 외국법인인 경우: 제1호마목, 제2호나목(외국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및 제4호다목·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비고

- 제16조제7항 각 호의 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마목의 대주주의 요건만 적용하고, 제4호 또는 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마목 및 제4호라목의 대주주의 요건만 적용한다. 다만, 최대주주인 법인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거나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제5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 자기자본을 산정함에 있어서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인가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제4호를 적용할 때 대주주인 외국 법인이 지주회사이어서 제4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주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인가신청 시에 지정하는 회사(그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그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만 해당한다)가 제4호 각 목의 전부나 일부를 충족하는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금융투자업규정 [별표3]

대주주의 요건

(제2-6조제2항·제3항, 제2-8조, 제2-9조제2항, 제2-12조제1항, 제7-41조의2제2항, 제8-79조제3항 및 제8-85조제3항 관련)

1. 금융투자업 인가시 대주주의 요건

가. 대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하며, 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영 별표2 제1호 관련)

(1)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그 법인의 수정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인가신청일까지 유상증자에 따라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자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이하 이 표, 별표 4 및 별표 5에서 같다)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4배 이상일 것

(2)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다음 기준을 충족할 것

(가)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동 기준을 상회할 것

(나)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당해 금융기관과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 다만,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유사업종의 적기시정조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에는 나목(4)의 기준을 충족할 것

(3) 그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에 속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기업집단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채무계열(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 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인가신청일까지 유상증자에 따라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자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 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4) 대주주의 출자자금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조성한 자금으로서 그 합계액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차입에 따라 조성한 자금이 아닌 것으로 인정될 것

(가) 유상증자

(나) 1년내의 고정자산 매각

(다) 내부유보

(라) 그 밖에 (가)부터 (다)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5) 대주주가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련법령(영 제16조제8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거나 법 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3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
- (라) 최근 5년간 신청한 금융투자업 등록업무 단위와 동일한 등록업무 단위의 직권말소를 받은 자이거나, 그 자의 임원 또는 대주주였던 사실

(6) 건전한 신용질서 및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거나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 (나)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최근 5년간 신청한 금융투자업 등록업무 단위와 동일한 등록업무 단위의 직권말소를 받은 자이거나, 그 자의 임원 또는 대주주였던 사실

나. 대주주가 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투자목적회사를 제외한다)인 경우(영 별표2 제2호 관련)

- (1) 가목(1), (4) 및 (5)의 요건을 충족할 것
- (2)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 (나) 가목(6)(나)에서 정하는 사실
- (3) 당해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 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채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 (4)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다.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영 별표2 제3호 관련)

-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 (2) 출자자금 중 객관적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에 따라 확인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마련된 자금일 것
 -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적법한 납세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상속재산 또는 수증재산 처분자금
 - (나)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 (다) 그 밖에 (가) 및 (나)에 준하는 소득재원
- (3) 가목(5)의 요건을 충족할 것
- (4)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 (나)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
 - (다)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직무정지를 받거나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 (라) 가목(6)(나)에서 정하는 사실

라. 대주주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인 경우. 다만, 그 외국법인이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인가신청시에 지정하는 회사(그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가 (2)부터 (5)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영 별표2 제4호 관련)

- (1) 가목(1)의 요건을 충족할 것
- (2) 인가신청일 현재 인가받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을 외국에서 영위하고 있을 것
- (3)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 (4)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행정처분은 감독기관이 제재방법으로 행하는 활동·기능·영업에 대한 제한명령, 등록의 취소나 정지, 벌금 또는 민사제재금 징구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해당국 감독기관의 전체적인 제재수준 및 위법행위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 (가)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최근 1년간 기관경고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나)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간 시정명령, 중지명령 또는 업무정지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5) 가목(5) 및 (6)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마. 대주주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당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협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 또는 당해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영 별표2 제5호 관련)

(1) 가목의 금융기관인 경우 : 가목(2), (3), (5) 및 (6)의 요건을 충족할 것

(2) 나목의 내국법인인 경우 : 가목(5) 및 나목(2)·(3)·(4)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다목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 가목(6) 및 다목(1)·(4)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라목의 외국법인인 경우 : 가목(5)·(6), 나목(4)(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및 라목 (3)·(4)의 요건을 충족할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영 제1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주주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그 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가목(5) 및 (6)의 요건

(2) 그 자가 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가목(5) 및 나목(2)의 요건

(3) 그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가목(5), 다목(1) 및 (4)의 요건

(4) 그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라목(4) 및 (5)의 요건

(5) 그 자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거나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마목의 요건

사. 가목(5)·(6) 및 나목(2)에 불구하고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가목(5)·(6) 및 나목(2)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합병회사로서 합병전 피합병회사의 사유로 인하여 가목(5)·(6) 및 나목(2)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그 사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피합병회사의 임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합병회사의 경영권에 관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대주주가 경영권이 변경된 회사로서 경영권변경 전의 사유로 인하여 가목(5)·(6) 및 나목(2)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할 경우(그 사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경영권변경 전의 임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 (3) 그 밖에 (1) 및 (2)와 유사한 경우로서 지분변동 등으로 실질적으로 대주주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주주가 지분변동 등의 전의 사유로 인하여 가목 (5)·(6) 및 나목(2)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2. 경영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의 요건

가. 주주구성, 경영지배구조 및 금융산업의 업무영역의 합리적 개편방향등을 감안하여 경영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만을 적용할 수 있다.

- (1) 대주주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제1호마목(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다)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 중 가목(5)(나)와 관련한 요건
- (2) 대주주가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제1호마목(4)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다)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요건중 가목(5)(나)와 관련한 요건

나. 가목에 불구하고 금융투자업 경영인가가 정부의 권고·요구·명령에 따르는 것이거나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3. 금융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시의 대주주(당해 합병, 분할, 분할합병의 당사회사인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인 경우에 한한다)의 요건[시행령 제16조제6항 2호 등 관련]

가. 대주주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마목(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다)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중 제1호가목(5)(가) 및 (나)와 관련한 요건. 이 경우 제1호가목(5)(가)의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은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로 본다.

나. 대주주가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제1호마목(4)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 중 라목(4) 및 가목(5)(나)와 관련한 요건. 이 경우 라목(4)는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으로 본다.

4. 대주주가 정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국민연금공단인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자기자본 요건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p>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p>2. 인가업무 단위별로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p>	<p>제16조(인가요건 등) ③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1과 같다.</p>	

자본시장법 시행령 [별표1]

인가업무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3항 관련)

(단위: 억원)

인가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최저자기 자본
1-1-1	투자매매업	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500
1-1-2	투자매매업	증권	전문투자자	250
1-11-1	투자매매업	채무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0
1-11-2	투자매매업	채무증권	전문투자자	100
1-111-1	투자매매업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 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75
1-111-2	투자매매업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 증권	전문투자자	37.5
1-12-1	투자매매업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50
1-12-2	투자매매업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전문투자자	125
1-13-1	투자매매업	집합투자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50
1-13-2	투자매매업	집합투자증권	전문투자자	25
11-1-1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0
11-1-2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증권	전문투자자	100
11-11-1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채무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80
11-11-2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채무증권	전문투자자	40
11-111-1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 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30
11-111-2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 증권	전문투자자	15
11-112-1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사채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40
11-112-2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사채권	전문투자자	20
11-12-1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0
11-12-2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전문투자자	50

11-13-1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집합투자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
11-13-2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집합투자증권	전문투자자	10
11r-1r-1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제1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60
12-112-1	투자매매업(인수업만 해당한다)	사채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60
12-112-2	투자매매업(인수업만 해당한다)	사채권	전문투자자	30
1-2-1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0
1-2-2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	전문투자자	50
1-21-1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50
1-21-2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투자자	25
1-3-1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900
1-3-2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	전문투자자	450
1-31-1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450
1-31-2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투자자	225
1-32-1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주권 외의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450
1-32-2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주권 외의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투자자	225
1-321-1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통화·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80
1-321-2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통화·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투자자	90
1a-1-2	투자매매업	법 제8조의2제5항 및 이 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매매체결대상상품	전문투자자	300
2-1-1	투자중개업	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30
2-1-2	투자중개업	증권	전문투자자	15
2r-1-2	투자중개업	증권	전문투자자	5

2-11-1	투자중개업	채무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
2-11-2	투자중개업	채무증권	전문투자자	5
2-12-1	투자중개업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
2-12-2	투자중개업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전문투자자	5
2-13-1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
2-13-2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증권	전문투자자	5
2-2-1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
2-2-2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전문투자자	10
2-21-1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
2-21-2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투자자	5
2-3-1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0
2-3-2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	전문투자자	50
2-31-1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50
2-31-2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투자자	25
2-32-1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주권 외의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50
2-32-2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주권 외의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투자자	25
2-321-1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통화·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
2-321-2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통화·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투자자	10
2a-1-2	투자중개업	법 제8조의2제5항 및 이 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매매체결대상상품	전문투자자	200
2i-11-2i	투자중개업	채무증권	전문투자자	30
3-1-1	집합투자업	법 제22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80
3-11-1	집합투자업	법 제229조제1호·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40
3-12-1	집합투자업	법 제229조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

3-13-1	집합투자업	법 제229조제3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
4-1-1	신탁업	법 제10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50
4-1-2	신탁업	법 제10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	전문투자자	125
4-11-1	신탁업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재산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30
4-11-2	신탁업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재산	전문투자자	65
4-12-1	신탁업	법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20
4-12-2	신탁업	법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	전문투자자	60
4-121-1	신탁업	법 제10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0
4-121-2	신탁업	법 제10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	전문투자자	50

비고

- 제7조제1항의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은 1-1-1 또는 1-1-2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가 1-3-1 또는 1-3-2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 1-11-1, 1-11-2, 1-111-1, 1-111-2, 1-12-1, 1-12-2, 1-13-1, 1-13-2, 11-11-1, 11-11-2, 11-111-1, 11-111-2, 11-112-1, 11-112-2, 11-12-1, 11-12-2, 11-13-1, 11-13-2, 12-112-1, 12-112-2, 2-11-1, 2-11-2, 2-12-1, 2-12-2, 2-13-1, 2-13-2 및 2i-11-2i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과 관련된 증원에탁증권을 포함한다.
- 11r-1r-1은 제181조에 따른 환매조건부매매만 해당한다.
- 2r-1-2는 환매조건부매매를 중개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전문투자자는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1a-1-2 및 2a-1-2는 법 제78조에 따른 업무만 해당한다.
- 2i-11-2i는 제179조에 따른 업무만 해당하며, 전문투자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2-1-1, 2-1-2, 2-12-1 및 2-12-2는 법 제78조에 따른 업무는 제외하며, 2-1-1, 2-1-2, 2-11-1 및 2-11-2는 이 영 제179조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
- 집합투자업자가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11-13-1 및 11-13-2의 최저자기자본은 해당 최저자기자본의 2분의 1로 한다.
- 법 제8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적용할 때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본금(이에 준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삭제 <2015.10.23.>
- 삭제 <2015.10.23.>
- 자기자본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일 이후 인가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1a-1-2 및 2a-1-2의 투자자의 유형은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 법 제249조의3에 따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자가 3-1-1, 3-11-1, 3-12-1, 3-13-1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이 표에 따른 자기자본은 이 표에서 요구하는 최저자기자본에서 10억원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4. 인력 요건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p>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p>4.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추는 것</p> <p>5. 임원이 「<u>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u>」 제5조에 적합할 것</p>	<p>제16조(인가요건 등) ⑤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p> <p>1. 경영하려는 금융투자업에 관한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주요직무 종사자(법 제2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요직무 종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갖추는 것</p>	<p>제2-6조(인가 심사기준) ①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예비인가의 경우에는 인력·물적 설비에 관한 이행계획의 내용이 별표 2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p>

지배구조법	지배구조법 시행령	지배구조 감독규정
<p>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p> <p>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p> <p>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p> <p>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p> <p>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p>		

지배구조법	지배구조법 시행령	지배구조 감독규정
<p>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p> <p>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p> <p>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p>	<p>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별제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사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 2.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법 제5조제1항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 4. 법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 	

지배구조법	지배구조법 시행령	지배구조 감독규정
<p>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② 법 제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p> <p>1.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p> <p>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한다):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해임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한다)부터 5년</p> <p>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한다) 또는 업무집행정지: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한다)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p> <p>다. 문책경고: 문책경고일부터 3년</p> <p>2.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p> <p>가. 면직요구: 면직요구일부터 5년</p> <p>나. 정직요구: 정직요구일부터 4년</p> <p>다. 감봉요구: 감봉요구일부터 3년</p> <p>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제1호 또는 제2호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하는 기간</p> <p>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던라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기간</p>	

지배구조법	지배구조법 시행령	지배구조 감독규정
<p>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u></p>	<p>③ <u>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u>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p> <p>1.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은행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회사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의 자은행(「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은행”이라 한다),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대출, 지급보증 및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회사의 직접적·간접적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은행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p> <p>2.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p> <p>3.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여신거래 규모가 <u>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u>으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p>	<p>제2조(임원의 자격요건) 영 제7조제3항제3호에서 "<u>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u>"이란 여신거래잔액이 10억원인 경우를 말한다.</p>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

인력·물적 설비·사업계획·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요건

(제2-6조제1항, 제2-9조제4항, 제7-41조의2제1항, 제8-79조제1항·제2항 및 제8-85조제1항·제2항 관련)

1. 인력에 관한 요건

가. 인가(등록)신청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투자자 보호 및 적절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배치할 것

- (1)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자격 소지자
- (2) 법 제286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주요직무 종사자로서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에서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4)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대학원 등)이나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5) 그 밖에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상기 인력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자

나. 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업을 직접 영위하는 직원은 투자권유자문인력 등 영위업무와 관련된 자격을 소지한 자일 것

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원(겸영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금융투자업인가 신청이 영 제1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인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최근 5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이었거나 불건전한 금융거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의 대주주 또는 임직원이었다던 자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 (2) 최근 5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쳐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
-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 경영의 건전성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해당 대상자가 충분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

라.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인가업무 단위별로 다음의 전문인력을 갖출 것

인가업무 단위	자산운용 전문인력	기업금융 전문인력	조사분석 전문인력	투자권유자문 전문인력	장외파생후선 전문인력
1-1-1, 1-1-2	5	5	2	3	-
1-11-1, 1-11-2 1-111-1, 1-111-2 12-112-1, 12-112-2	2	2	-	1	-
1-12-1, 1-12-2	3	3	2	2	-

11-1-1, 11-1-2	3	-	1	-	-
11-11-1, 11-11-2 11-111-1, 11-111-2 11-112-1, 11-112-2 11r-1r-1	1	-	-	-	-
11-12-1, 11-12-2	2	-	1	-	-
1-2-1, 1-2-2 1-21-1, 1-21-2	2	-	-	-	-
1-3-1, 1-3-2 1-31-1, 1-31-2 1-32-1, 1-32-2 1-321-1, 1-321-2	2	-	-	-	1
1a-1-2	3				-
2-1-1, 2-1-2	-	-	1	5	-
2-11-1, 2-11-2 2r-1-2, 2i-11-2i	-	-	-	2	-
2-12-1, 2-12-2	-	-	1	3	-
2-2-1, 2-2-2 2-21-1, 2-21-2	-	-	-	2	-
2-3-1, 2-3-2 2-31-1, 2-31-2 2-32-1, 2-32-2 2-321-1, 2-321-2	-	-	-	2	1
2a-1-2				3	-

※ 비고

- 이 표에서 “자산운용전문인력”이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운용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자산운용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공인회계사 또는 협회가 시행하는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자산운용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이 표에서 “기업금융전문인력”이란 영 제68조제2항(제5호를 제외한다)에서 정하는 기업금융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기업금융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변호사, 공인회계사로서 기업금융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이 표에서 “조사분석전문인력”이란 조사분석자료 작성 또는 이를 심사·승인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조사분석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금융·재무 등 증권관련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조사분석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공인회계사 또는 협회가 시행하는 금융투자분석사 시험에 합격한 자(이에 준하는 국제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한다)로서 조사분석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이 표에서 “투자권유자문전문인력”이란 투자권유 또는 투자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협회가 정하는 투자권유자문인력 요건을 갖춘 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투자권유자문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금융·재무 등 증권관련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투자권유자문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이 표에서 “장외파생후선전문인력”이란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확인, 필요서류 교환 및 결제업무 등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장외파생후선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인력을 말한다.

마.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 인가(등록) 업무 단위별로 다음의 투자운용인력을 갖출 것

인가(등록)업무 단위	전문인력의 종류	최소보유 인원수(명)
3-1-1	증권운용전문인력	5
	부동산운용전문인력	3
3-11-1	증권운용전문인력	4
3-12-1	증권운용전문인력	2
	부동산운용전문인력	3
3-13-1	증권운용전문인력	3
3-14-1	증권운용전문인력 또는 부동산운용전문인력	1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 또는 증권운용전문인력 또는 부동산운용전문인력	2
4-1-1	증권운용전문인력	5
	부동산운용전문인력	3
4-1-2	증권운용전문인력	3
	부동산운용전문인력	2
4-11-1	증권운용전문인력	3
4-11-2	증권운용전문인력	2
4-12-1 및 4-121-1	증권운용전문인력	3
	부동산운용전문인력	2
4-12-2 및 4-121-2	증권운용전문인력	2
	부동산운용전문인력	1

※비고

1. 이 표에서 “증권운용전문인력”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운용인력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에서 집합투자재산(이 법에 따른 신탁재산을 포함한다.), 투자일임재산,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고유재산(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금융기관 및 이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외국금융기관의 고유재산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운용인력별 운용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고유재산에 한한다.)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1)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금융기관
- 2)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3)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 4)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5)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 6) 「국가재정법」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가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 또는 같은 법 별표 2에 따른 기금설치 근거 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자
- 7)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국제금융기구
- 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 9) (1)부터 (6)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외국의 기관 또는 회사

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협회가 정하는 증권운용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다. 법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협회가 시행하는 투자운용인력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한 자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회가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1의2. <삭제 2015.10.21>

2. 이 표에서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운용인력을 말한다.

가. 감정평가사로서 감정평가분야 또는 부동산 관련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또는 금융위원회가 부동산운용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발 또는 자문 등 부동산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이하 “부동산운용업무”라 한다)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에서 부동산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자문회사·자산관리회사, 부동산신탁회사
- 2)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금융기관
- 3) 1) 및 2)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회사 또는 기관
-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동산 관계회사 또는 기관 등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에서 부동산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협회에서 정하는 부동산운용업무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1)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 2) 부동산의 관리업 또는 개발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당해 영업으로 발생한 매출이 최근 3년간 매년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 3) 상근 임직원이 100명 이상인 회계법인 및 전문 컨설팅기관으로 부동산의 중개·자문 등에서 발생한 매출이 최근 3년간 50억원을 초과하는 기관
- 4)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마. “1”의 증권운용전문인력으로서 협회에서 정하는 부동산운용업무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2의2. 이 표에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협회가 정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 1) 1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관·회사의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2) 2호 나목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

3.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특별계정으로서 그 규모가 5,000억원 이하이거나 영 제2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인가업무 단위에 따라 3-14-1의 요건을 적용한다.

4. 이 표 및 별표 13 제1호에서 정한 운용전문인력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동일인이 이 표 및 별표 13 제1호에서 정한 운용전문인력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운용전문인력의 수에 각각 합산하여 산정한다.

5. 4-121-1 및 4-121-2 업무만 인가받은 신탁업자인 경우 “증권운용전문인력 인원수” 대신 “부동산운용전문인력 인원수”를 갖추어야 한다.

6. 집합투자업과 신탁업을 동시에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자는 각각의 인가(등록)업무 단위별 운용전문인력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7. 집합투자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이하 이 호에서 “사회기반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되는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의 신탁에 따른 수익권의 매입,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되는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입 및 그 증권의 신탁에 따른 수익권의 매입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를 설립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운용인력 중 2인이 별표 13에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이하 “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이라 한다)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8. 4-1-1, 4-1-2, 4-11-1, 4-11-2, 4-12-1 및 4-121-1, 4-12-2 및 4-121-2 요건과 관련하여 신탁업자 중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만을 영위하는 신탁업자로서 별표 13 제2호 및 제3호의 전문인력을 갖춘 경우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9. 3-1-1, 3-11-1, 3-12-1, 3-13-1, 3-14-1 요건과 관련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조의7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같은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3명 이상의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투자운용인력(이하 별표13의 “해외자원개발운용전문인력”이라 한다)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2명 이상의 투자운용인력을 갖춘 경우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2인 이상의 투자운용인력”은 “증권운용전문인력”을 말한다.

바.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가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하거나 중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법 제286조제1항제3호가목의 투자권유자문인력을 5인 이상(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인 경우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인 경우에는 3인 이상) 갖추는 것

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라목, 마목 또는 바목의 인력 외에 다음의 전문인력을 갖추는 것

구 분	위험관리 전문인력	내부통제 전문인력	전산 전문인력
투자매매업	2	2	2
투자중개업	1	1	2
집합투자업	1	1	1
신탁업	1	1	1

※ 비고

1. 이 표에서 “위험관리전문인력”이란 시장위험·운영위험·신용위험 및 유동성 위험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리 등 위험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위험관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나. 금융·재무 등 증권관련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위험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 다. 공인회계사, 협회가 시행하는 재무위험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이에 준하는 국제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한다)로서 위험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이 표에서 “내부통제전문인력”이란 법령 준수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내부통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나. 변호사, 공인회계사로서 내부통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3. 이 표에서 “전산전문인력”이란 IT기획·개발·운영·정보보호 등 전산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전산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나. 전산 관련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전산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산 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전산 업무에 4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다. 정보처리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자격 소지자
4. 복수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별로 갖추어야 하는 전문인력 중 가장 많은 위험관리·내부통제·전산 전문인력수를 적용한다.
5. 1-1-1, 1-3-1 및 2-1-1를 모두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험관리전문인력, 내부통제전문인력 및 전산전문인력을 각각 3인으로 한다.
6.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표의 집합투자업에 요구되는 전문인력기준을 적용한다.
7.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내부통제전문인력으로 볼 수 있다.
8. 집합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준법감시인 및 동법 제28조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를 두면, 내부통제전문인력 및 위험관리전문인력 각각 1인을 갖춘 것으로 본다.
9. 전산설비를 전산처리전문회사에 종합 위탁하는 경우에는 전산전문인력 1인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전산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전산 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전산 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대체할 수 있다.
10. 집합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254조에 따라 등록된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전산설비를 위탁하면 전산전문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1. 1a-1-2 또는 2a-1-2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험관리전문인력은 이 표를 따르며, 내부통제전문인력은 3인, 전산전문인력은 10인으로 한다. 또한, 1a-1-2 및 2a-1-2 를 동시에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도 동일 기준을 따른다.
12. 이 표는 법 제8조제9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융투자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자금중개회사 및 외국환중개회사는 제외한다)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에 한하여 집합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물적 요건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p>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p>4.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추는 것</p>	<p>제16조(인가요건 등) ⑤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p> <p>2. 다음 각 목의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추는 것</p> <p>가. 경영하려는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p> <p>나. 사무실 등 충분한 업무공간과 사무장비</p> <p>다.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p> <p>라.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p>	<p>제2-6조(인가 심사기준) ①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예비인가의 경우에는 인력·물적 설비에 관한 이행계획의 내용이 별표 2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p>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

인력 · 물적 설비 · 사업계획 ·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요건

(제2-6조제1항, 제2-9조제4항, 제7-41조의2제1항, 제8-79조제1항 · 제2항 및 제8-85조제1항 · 제2항 관련)

2. 물적 설비

가. 전산설비 및 통신수단

- (1) 주전산기, DB서버, 저장장치, 단말기, 전용회선 등 업무관련 전산설비가 안정성 및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었으며, 향후 영업의 급속한 확대에도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구축되어 있을 것
- (2) 침입탐지, 침입방지시스템, 방화벽 등 보안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 (3) 정보이용자 확인 및 전산실 출입통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을 것
- (4)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백업장치가 구축되어 있고, 백업자료가 별도 장소에 보관·관리되고 있을 것

나.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 (1) 이해상충부서간 별도 업무공간을 갖추는 등 정보차단벽(Chinese Wall)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
- (2) 부서인원 대비 충분한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를 갖출 것
- (3) 내부기관 및 감독기관 등이 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 장애가 없을 것

다. 보안설비

- (1) 전산설비, 통신수단, 그 밖에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검증된 보안설비를 갖출 것
- (2) 파업 등 불시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 마련되어 있을 것

라.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완설비

- (1)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가 확보되어 있을 것
- (2) 비상사태 발생시 즉시 구현이 가능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 마련되어 있을 것

마. 그 밖에 인가(등록)신청 업무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물적 설비를 적정하게 구축하고 있을 것

5. 다자간매매회사에 대한 추가요건

가. 물적 시설 중 전산시스템 구축

- (1) 장래 주문약정건수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시스템 용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그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하였을 것
- (2) 외부인의 불법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보안장치를 마련하였을 것
- (3) 시스템의 백업체제를 완비하고, 시스템의 용량초과나 장애 등의 발생방지체제 및 문제발생시 대응체계가 확립되어 있을 것

6.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p>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p>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p>	<p>제16조(인가요건 등) ④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지전망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2. 삭제 <2010. 6. 11.> 3.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4. 투자자 보호에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인가의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의 자기자본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증권의 매매·중개와 관련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의 가입을 포함한다) 5.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 	<p>제2-6조(인가 심사기준) ①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예비인가의 경우에는 인력·물적 설비에 관한 이행계획의 내용이 별표 2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p> <p>[장의과생상품 인가 시 추가요건]</p> <p>제5-50조(장의과생상품의 위험관리기준) ① 장외과생상품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166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험관리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5 제5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외과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의 특성 및 장외과생상품에 대한 인가업무 단위에 따라 부담하는 위험의 차이를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표 15에 따른 종합평가결과가 "양호" 이상일 것 2. 별표 15의 "1. 평가항목" 중 다음 각 목의 평가점수는 각각 2.4점 이하일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위험관리조직 및 인력 나. 위험측정 및 관리실무 다.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전산시스템 <p>② 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에 관한 세부평가기준은 별표 16과 같다.</p>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

인력·물적 설비·사업계획·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요건

(제2-6조제1항, 제2-9조제4항, 제7-41조의2제1항, 제8-79조제1항·제2항 및 제8-85조제1항·제2항 관련)

3. 사업계획

가. 수지전망

- (1) 경영목표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영전략이 마련되어 있을 것
- (2) 사업계획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추정이 이루어졌으며, 시장상황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 (3)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추정재무제표가 작성되었으며, 추정 영업손익·영업비용의 증감에 있어 일관성이 유지되고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

나. 경영건전성 기준

- (1) 재무상태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을 상회할 수 있을 것 다만, 제2-1조제1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상호금융업감독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해야 할 건전성 비율 중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에 관한 기준과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적기시정조치 기준 중 높은 기준을 상회할 것
- (2)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제5-50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이 경우 별표 15 제5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의 특성 및 인가업무 단위별로 부담하는 위험의 차이를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 내부통제장치 및 투자자 보호

- (1) 이사회와 경영진의 관계, 이사회 구성 및 운영방향, 감사의 권한과 책임 등이 투명하고, 투자자 또는 주주 보호와 재무 및 영업의 건전성 유지에 적합할 것
- (2) 인가받은 영업내용·규모에 맞게 임직원의 범규준수, 위험관리 및 임직원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적절한 감독 및 내부통제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 (3) 준법감시인의 업무상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으며, 이사회 등 회의 참석 및 자료 접근권이 보장되어 있을 것
- (4) 준법감시인,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등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것

라.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 준수

- (1) 영업내용 및 방법이 법령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에 부합할 것
- (2)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구성 등의 지배구조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 (3)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임원이 법령 위반 또는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 등의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되는 등 향후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의 소지가 크지 않을 것

마. 사업계획 및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인가신청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전문인력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양성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며, 그 계획이 실현가능할 것

바. 그 밖에 인가신청 업무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계획을 적정하게 구비하고 있을 것

5. 다자간매매회사에 대한 추가요건

나. 사업계획 중 내부통제체제 구축 및 건전금융질서 저해 방지

- (1) 업무방법서 또는 내규 등이 법 및 영에서 정하는 업무기준을 적절히 반영하여 정비되어 있을 것
- (2)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및 조직체계가 확립되어 있을 것
- (3) 상호에 '거래소', '코스닥', '시장' 등과 같이 투자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명칭을 포함시키지 않을 것

금융투자업규정 [별표15]

위험관리 종합평가기준

(제5-50조제1항 관련)

1. 평가항목

대항목(3개)	중항목(12개)
1.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관련 조직·인력	위험관리조직 및 인력, 내부통제조직 및 인력, 현업 부서조직 및 인력, 후선 업무부서 조직 및 인력
2.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절차	위험관리에 관한 규정, 내부통제에 관한 규정, 위험 측정 및 관리실무, 내부통제관련 실무, 위기상황대비 대책
3.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관련 전산시스템	종합적인 전산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전산시스템, 전산시스템 보안 및 안정성

2. 평가방법

가. 중항목은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서면심사 및 현장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점~5.0점으로 평가한다.

기준	우수	양호	보통	취약	위험
평가점수	1.0~1.4	1.5~2.4	2.5~3.4	3.5~4.4	4.5~5.0

나. 대항목의 평가점수는 중항목의 평가점수를 단순평균하여 산출한다.

다. 종합평가점수는 대항목의 평가점수를 아래의 가중치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대항목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관련 조직·인력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절차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관련 전산시스템
가중치	30%	40%	30%

라. 종합평가결과는 종합평가점수를 아래와 같이 5단계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종합평가점수	1.0~1.4	1.5~2.4	2.5~3.4	3.5~4.4	4.5~5.0
종합평가결과	우수	양호	보통	취약	위험

3. 외국 금융투자업자 국내지점 등의 평가

가. 외국 금융투자업자 국내지점(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국내에 설립한 자회사 또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국내에 설립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되, 제1호의 중항목 중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하여 장외파생거래 현업 및 후선 업무 관련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국내지점의 구축수준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제1호의 중항목 중 그 밖의 일부 항목에 대하여는 본사 및 계열사의 구축실태를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중항목 중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본사를 기준으로 서면심사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 위험관리조직 및 인력 중 위험관리위원회, 내부통제조직 및 인력·내부통제에 관한 규정·내부통제 관련실무·내부통제 전산시스템 중 감사업무와 관련된 사항

나. 가목의 평가를 위하여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지점(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국내에 설립한 자회사 또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국내에 설립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자 중 본사 또는 계열사를 기준으로 가목의 평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본사에 관한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체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조직, 조직별 업무분장, 담당임직원, 주요경력, 전산시스템에 관한 구축도, 한도설정·배분·관리체제에 관한 절차도, 규정(기준) 및 한도배분 현황, 관련 규정 등

다. 외국 금융투자업자 국내지점은 장외파생상품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채무에 대한 본사의 연대책임 협약서 및 서명자의 결계권한에 관한 공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제5-1조제2호에 따른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로서 위험관리체계가 양호하고 시장조성실적이 우수하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의 위험관리실무 중 금리관련 위험관리실무에 대한 평가시 상기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5. 인가업무 단위별 위험관리기준 평가방법

가. 투자매매업

- (1) 제1호의 평가항목 중 모든 중항목에 대하여 평가한다.
- (2) 일부 장외파생상품 및 일부 투자자 유형을 대상으로 하는 인가업무 단위(1-3-2, 1-31-1, 1-31-2, 1-32-1, 1-32-2, 1-321-1 및 1-321-2)에 대하여는 부담하는 위험의 차이를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투자중개업

- (1) 제1호의 평가항목 중 내부통제에 관한 중항목에 대하여 평가한다.
- (2) 일부 장외파생상품 및 일부 투자자 유형을 대상으로 하는 인가업무 단위(2-3-2, 2-31-1, 2-31-2, 2-32-1, 2-32-2, 2-321-1 및 2-321-2)에 대하여는 부담하는 위험의 차이를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규정 [별표16]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기준 등에 관한 세부 평가기준

(제5-50조제2항)

①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관련 조직·인력*

중항목	세부 평가기준
위험관리 조직 및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관리위원회 및 위험관리 담당부서는 위험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이사회로부터 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아 독립성 확보 등 실효성 있는 위험관리업무 수행환경을 조성하고 현업부서(장외파생상품 부서등) 및 후선업무부서에 대한 적절한 지원 및 견제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 위험관리업무 담당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업무 등과 관련하여 자신의 담당업무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부서의 업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기반으로 자신의 업무를 독립적·전문적·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및 준법성을 갖추고 있어야 함
내부통제 조직 및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위원회)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업무수행의 적정성 및 효율성 등을 독립적으로 모니터링 및 감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경영진 및 다른 부서의 업무를 견제하는 역할을 적정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 감사업무 담당 임·직원은 현업부서(장외파생상품 업무부서 등),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업무부서, 후선업무부서 등에 대한 감사업무의 적절한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현업부서, 후선업무부서,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업무부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일정수준 이해하고 있어야 함 ○ 준법감시인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준법감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다른 조직과 독립적으로 임·직원의 법규위반, 부정행위, 그 밖에 운영 및 법률위험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 등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며 ○ 준법감시담당 임·직원은 현업부서(장외파생상품 업무부서 등), 후선업무부서 등에 대한 법규준수관련 통제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현업부서 및 후선업무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지식을 일정수준 보유하고 있어야 함
현업부서 조직 및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외파생상품 등 거래관련 정보를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업무부서, 후선업무부서에 적절한 방법으로 적시성 있게 제공해야 하며 일차적인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함 ○ 현업부서 담당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업무 등과 관련하여 자신의 담당업무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부서의 업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기반으로 자신의 업무를 독립적·전문적·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및 준법성을 갖추고 있어야 함
후선 업무부서 조직 및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업부서의 거래(장외파생상품 등)에 대하여 현업부서와 독립적으로 신속, 정확, 안전하게 사후처리 및 기록할 책임을 지며 손익평가의 정확성 유지, 거래확인, 필요서류의 교환 및 적절한 보관상태 유지, 거래 관련 결제업무 수행 등 현업부서의 거래에 대한 지원 및 견제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 후선업무부서 담당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업무 등과 관련하여 자신의 담당업무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부서의 업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기반으로 자신의 업무를 독립적·전문적·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및 준법성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임원에 관한 사항은 외국 금융투자업자 국내지점의 경우 지점장으로 대체 가능

②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절차

중항목	세부 평가기준
위험관리에 관한 규정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발생 가능한 위험을 독립적·효율적·전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책임과 권한 등)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험관리 관련 일반원칙, 조직, 실무, 위험한도 설정 및 관리, 성과측정 및 보상, 위험보고, 위기상황대비 대책, 위험관리 전산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지침) 등에 명시하여야 함
내부통제에 관한 규정	○ 장외파생상품업무 등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적법하고 투명한 거래수준을 유지·관리하고, 선관주의 의무로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적절한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지침) 등에 명시하여야 함
위험 측정 및 관리실무	○ 위험관리 업무 담당부서는 장외파생상품등과 관련 위험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실무절차 및 통제체제를 적절하게 구축·운영하여야 함
내부통제 관련 실무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장외파생상품 등과 관련하여 법규위반, 사기행위, 그 밖의 법률위험 발생에 사전·사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체제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위기상황 대비 대책	○ 급격한 시장상황의 변화(자산가치의 급격한 하락, 신용경색으로 인한 유동성 감소, 신인도 하락, 규제 및 제도의 변화 등) 또는 예기치 않은 사건의 발생 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각 위험종류별 대량손실 위험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함

③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관련 전산시스템

중항목	세부 평가기준
종합적인 전산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 종합적인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업부서,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업무부서, 후선업무 부서가 상호 유기적으로 설계/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또한 전사적인 종합위험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 전산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정보의 일관성 및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 현업부서,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업무 부서, 후선업무부서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전사적인 전산시스템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함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전산시스템	○ 경영진과 위험관리 담당 임직원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노출된 위험을 적시에 측정 및 모니터링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회사의 모든 단계별 위험관리 정책 및 규정의 준수여부를 적절하게 적출·통제할 수 있는 위험관리 전산시스템을 적절하게 구축하여야 하며 ○ 감사, 준법감시인 및 내부통제업무 담당부서가 장외파생상품 등 관련 내부통제 대상 부서의 회사 내·외의 법률 및 규정 위반,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거래를 수행할 가능성 등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 통제시스템을 적절하게 구축하여야 함
전산시스템 보안 및 안정성	○ 위험관리 담당부서와 전산담당부서는 시스템에 대한 내·외부의 우발적·고의적인 사고, 침입 및 파괴행위에 대비해 시스템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7. 건전경영 및 사회적 신용 요건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p>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p>6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p>	<p>제16조(인가요건 등) ⑧ 법 제12조제2항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p> <p>1. 건전한 재무상태: 법 제31조에 따른 경영건전성기준(겸영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경영건전성기준을 말한다)을 충족할 수 있는 상태</p> <p>2. 사회적 신용: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에 적합한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가. 최근 3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법 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p> <p>나.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p> <p>다.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p>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p>라.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법령(금융관련법령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을 말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이상의 조치(이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받은 후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을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업무의 전부정지: 업무 정지가 끝난 날부터 3년 2) 업무의 일부정지: 업무 정지가 끝난 날부터 2년 3)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8. 이해상충방지체계 요건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p>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p>7.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利害相衝)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는 것</p>	<p>제16조(인가요건 등) ⑨ <u>법 제12조제2항제7호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u>(이하 이 절에서 “이해상충방지체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p> <p>1. 법 제44조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는 것</p> <p>2.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교류를 차단할 수 있는 적절한 체계를 갖추는 것</p>	<p>제2-6조(인가 심사기준) ①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u>별표 2</u>와 같다. 다만, 예비인가의 경우에는 인력·물적 설비에 관한 이행계획의 내용이 별표 2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p>

제44조(이해상충의 관리)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라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정보교류의 차단)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제40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제41조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 및 제77조의3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허용된 업무(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 등”이라 한다)를 영위하는 경우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등을 영위하는 경우 계열회사를 포함한 제삼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

인력·물적 설비·사업계획·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요건

(제2-6조제1항, 제2-9조제4항, 제7-41조의2제1항, 제8-79조제1항·제2항 및 제8-85조제1항·제2항 관련)

4. 이해상충방지체계

가. 이해상충의 파악·평가·관리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 (1) 내부통제기준에 반영된 이해상충의 파악·평가·관리 체계가 합리적이고 검증가능할 것
- (2)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이 적정할 것
- (3) 내부통제기준의 이해상충 관리 체계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이 이루어 질 것
- (4) 그 밖에 인가(등록)신청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나. 정보교류 차단

- (1) 정보교류 차단 부서간 정보차단벽(Chinese Wall)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을 것
- (2) 법령 등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정보차단벽간 정보제공(Wall Cross)이 이루어지는 경우 관련 기록이 유지·관리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 (3) 그 밖에 인가(등록)신청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정보차단벽 간 정보교류를 합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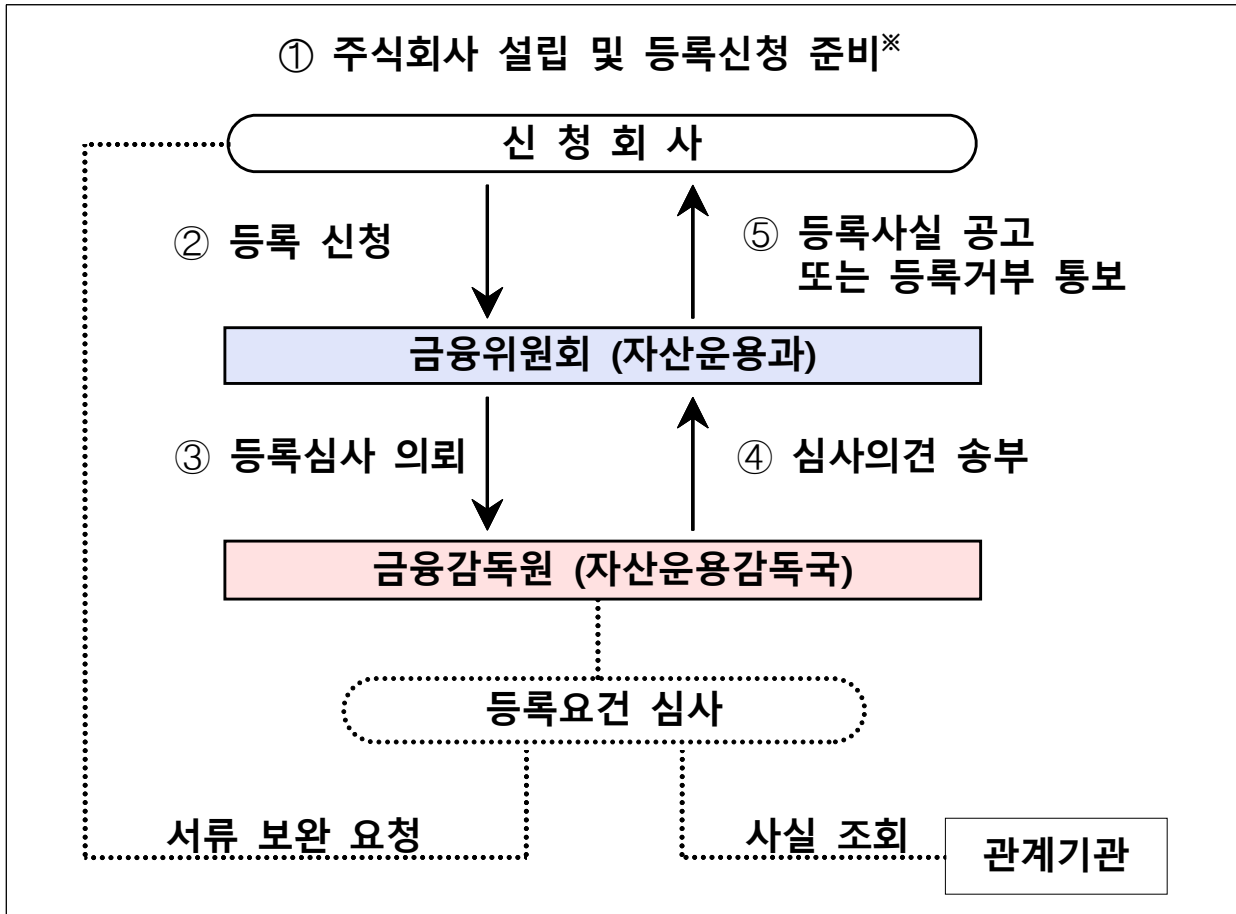
◆ **인허가 사례 (금융위 결정내용)**
3-(1) 부동산신탁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신청

신청회사	(가칭)OO자산신탁 등 12개사	신청일	-
처리부서	자산운용감독국 신탁감독팀	금융위 결정일	2019. 3. 3.
주요 골자	□ (가칭)OO자산신탁 등 12개사가 부동산신탁업을 영위하고자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신청함에 따라 이를 심사하여 3개사에 대해 예비인가를 결정하고 9개사에 대해 예비인가를 불허		
안건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가칭)OO자산신탁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p> <p>(가칭)OO자산신탁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다 음 -</p> <p>1. 상호 : (가칭)OO자산신탁 주식회사</p> <p>2. 인가업무 : 금융투자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인가 업무단위)</p> <p style="padding-left: 20px;">○ 4-121-1 신탁업 동산·부동산·부동산 관련 권리</p> <p>3. 부대조건</p> <p>가.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는 토지신탁업무는 본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후부터 영위할 것</p> <p>다만, 해당 업무가 제한되어 있는 2년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업무가 일정기간* 동안 추가 제한됨</p> <p style="padding-left: 20px;">① 기관경고 : 조치 후 6개월간, ② 일부영업정지 : 영업정지 해제일로부터 1년간, ③ 전부영업정지 : 영업정지 해제일로부터 2년간</p> <p>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5호, 동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임원을 선임하고 본인가를 신청할 것</p> <p>4. 예비인가일 : 2019.3.3.</p> <p style="padding-left: 20px;">※ 예비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인가의 내용*을 이행한 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를 신청하여야 함</p> <p style="padding-left: 20px;">* 인력, 물적 설비 및 이해상충방지체계 등은 본인가 신청시 실시점검을 통해 확인 예정</p> <p style="text-align: center;">(가칭)△△자산신탁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불허안</p> <p>금융위원회의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추진 방안」(18.10.24. 발표)에서 사전에 발표한 바에 따라,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 등을 감안하여 예비인가 대상 3개 회사에 포함되지 않은 (가칭)△△자산신탁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불허한다.</p>		

3. 금융투자

(2)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

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절차 흐름도



※ 금융투자업 등록 신청 준비시 금감원의 「인허가 사전 상담창구」 이용 가능

<인허가 사전 상담창구 운영 개요>

- (상담내용) 인허가 신청전 서류 준비단계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심사요건·절차, 인허가 매뉴얼 사항, 신청서 준비사항 등 객관적 사항 상담
- (상담방식) 유선, 대면 등 신청인이 희망하는 방식
- (신청전화) 02-3145-8007 (감독총괄국 감독총괄팀)

※ 사전상담은 필수 선행절차가 아니며, 신청인은 사전 상담없이 심사부서로 직접 연락가능

II. 세부 등록절차

① 등록신청 준비

- 신청회사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준비

②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 [신청회사 → 금융위]

- 등록요건을 갖추고 서류작업이 완료되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공문과 함께 접수하며,
- 원본 1부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에, 사본 1부는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자산운용인허가팀)에 제출

③ 금융감독원에 등록심사 의뢰 [금융위 → 금감원]

- 신청을 접수한 금융위원회는 신청회사의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과 관련한 요건충족 등에 대한 심사를 금융감독원에 의뢰

④ 등록심사 및 심사의견 송부 [금감원 → 금융위]

- 금융감독원은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필요시 신청회사에 등록신청 내용의 보완을 요청, 심사가 종결되면 심사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송부

⑤ 등록사실 공고 또는 등록거부 통보 [금융위 → 신청회사]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심사의견을 토대로 등록여부를 판단하며 등록 시 해당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
-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의 사유발생 시에는 등록거부를 신청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

Ⅲ.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요건(요약)

요건	개요	근거법규		
		법1)	시행령2)	규정3)
법인격 요건	-상법상 주식회사 등	§249의3② 1호	§271의2 ①, ②	
자기자본 요건	-최저 자기자본	§249의3② 2호	§271의2③ <별표3>	
인력 요건	-임원결격사유	§249의3② 4호		§7-41의2① <별표2> 1.
	-전문인력	§249의3② 3호	§271의2④ 1호	§7-41의2① <별표2> 1.
물적 요건	-전산설비·통신수단, 업무공간·사무장비, 보안설비·보완설비 등	§249의3② 3호	§271의2④ 2호	§7-41의2① <별표2>2.
대주주 요건	-대주주 적격성	§249의3② 5호	§271의2⑤ <별표2>	§7-41의2② <별표3>
건전경영 ·사회적 신용요건	-신청인의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249의3② 6호	§271의2 ⑦, ⑧	
이해상충 방지체계 요건	-내부통제기준 -정보교류차단장치 등	§249의3② 7호, §44, §45	§271의2⑨, §50, §51	§7-41의2① <별표2>4., §46, §47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 3)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

IV. 단계별 세부내역

1. 등록신청	○ 금융위,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신청서 접수	
↓		
2. 검토 의뢰	○ 금융위, 금감원에 심사 검토 의뢰	
↓		
3. 금감원 심사	심사요건	확인서류
법인격 요건	○ 상법상 주식회사 등	- 법인 등기부등본 등
자기자본 요건	○ 최저자기자본	- 법인 등기부등본, 재무제표, 주금납입증명서 등
인력 요건 (전문인력·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249조의3제2항제3호, 영 제271조의2 제4항제1호, 규정 <별표2>에서 정하는 인력요건에 해당할 것 ○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규정 <별표2>의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재직증명서, 자격증, 시험합격증, 교육수료증, 확인서 등 - 신원조회 관련부서(처) 사실조회 회보서 등 - (필요시)실지조사
물적 요건	○ 법 제249조의3제2항제3호, 영 제271조의2 제4항제2호, 규정 <별표2>에서 정하는 전산설비·통신수단, 업무공간·사무장비, 보안설비, 보완설비 등을 구비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계약서 및 증빙자료 등 - (필요시)실지조사
대주주 요건	○ 영 <별표2> 및 규정 <별표3>의 요건을 갖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원조회 및 관련부서(처) 사실조회 회보서 등 - 기타 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 등
건전경영 및 사회적 신용 요건	○ 신청인이 법 제249조의3제2항제6호, 영 제271조의2제7항, 제8항에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건전성 기준, 관련부서(처) 사실조회 회보서, 기타 사실확인서 등
이해상충 방지체계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249조의3제2항제7호, 영 제271조의2 제9항, 규정 <별표2>에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할 것 -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 적절한 정보교류차단장치를 갖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상 내부통제기준 등 - (필요시)실지조사
↓		
4 심사결과 통보	○ 금감원, 금융위에 심사·확인 결과 통보	
↓		
5 등록여부 결정	○ 금융위, 등록 여부 결정 및 통보	

V. 등록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구비요령

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신청서(금융투자업규정 <별지 제2의 2호>)

1. 상 호

상 호	
국문	영문
(가칭)	(가칭)

■ 첨부서류

- 1-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
- 1-2.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부
- 1-3.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등 설립 또는 인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

본점 소재지(전화 및 팩스번호 포함)

■ 첨부서류

- 2-1.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1부

3. 대표자 및 임원(준법감시인 포함)

임원수 : 명(상근: 명, 비상근: 명)

직위	성명	주민등록 번호	소유주식수 (비율)	주요 경력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전문인력 여부	임원자격 적합여부

성명	기 간	회사명	부서명	직위

기재상의 주의

1. 임원자격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

■ 첨부서류

- 3-1. 대표자 및 임원(준법감시인 포함)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각 1부
- 3-2. 임원자격에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4.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 첨부서류

4-1. 등록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영위방법을 기재한 서류 각 1부

5. 재무에 관한 사항

(단위 : 억원)

구분	FY201△	FY201×	FY201◇	구분	FY201△	FY201×	FY201◇
자산총계				영업수익			
부채총계				영업이익			
자본총계				당기순이익			

■ 첨부서류

5-1.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설립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5-1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기준일: 년 월 일 현재)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문자격내용	증빙서류명칭 (등록번호/발급기관)	주요 경력

- 전문인력의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요경력, 전문자격내용 등)
- 물적설비 현황(사무공간 배치현황, 전산설비 내역, 보안설비 및 보완설비 등)

■ 첨부서류

6-1.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상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및 자격확인서류 각 1부

6-2. 사무공간, 전산설비 등의 임차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7.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구분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비고

■ 첨부서류

7-1. 등록신청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 및 비율을 기재한 서류 1부

7-2.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249조의3제2항제5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8.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 첨부서류

- 8-1.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서류 1부
- 8-2. 이해상충행위가 발행하지 않도록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확인 서류 1부
- 8-3. 그 밖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서류

9. 그 밖의 기재사항

■ 첨부서류

- 9-1. 합작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외국인과의 합작을 통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사본 1부
- 9-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9-3.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2. 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1. 상호

상 호	
국문	영문
① △△△△△△(주)	①
② (가칭) OOOO자산운용(주)	② (가칭)

- ① 등록신청일 현재 신청회사의 국문 및 영문 상호를 기재
- ② 등록 후 변경예정인 국문 및 영문 상호를 기재

<첨부서류>

- ① 정관 : 회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증 받은 정관
- ② 법인등기부등본 : 말소사항을 포함한 법인등기부등본(원본)
- ③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이사회 의사록 등 : 설립 또는 등록 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공증받은 서류
- ④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불가)

※ 모든 첨부서류는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하여야 하며,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서류 및 기재내용이 누락되어서는 안됩니다.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

본점 소재지 (전화 및 팩스번호 포함)
①

- ① 예시) (0123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00 (여의도동, XX빌딩)
전화번호 : 02-111-1111 팩스번호 : 02-111-1112

<첨부서류>

- ①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3. 대표자 및 임원 (준법감시인 포함)

임원수 : 명 (상근: 명, 비상근: 명)

직위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소유주식수 (비율)	주요 경력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전문인력 여부	선임 일자	임원자격 적합여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									
⋮									

- ① 대표이사,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감사 등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직위를 기재하며 **등기임원에 대해서만 기재**(준법감시인 포함)
- ② 외국인의 경우 국적, 여권번호, 생년월일을 기재
- ③ 임원이면서 출자자인 경우 그 **소유주식수 및 출자비율**을 기재
- ④ 대표경력만을 간략히 기재하고, 자세한 내용은 예시의 양식을 참고하여 별도로 작성하되 신청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간의 경력을** 자세히 기재(경력단절기간도 기재)

(예시)

성명	기 간	회사명	부서명	직위
홍길동	2016.12.21. ~ 현재	AA주식회사	주식운용부	차장
	2015.11. 1. ~ 2016.12.20.	(경력단절기간)	(미취업 상태)	
	2009. 1. 1. ~ 2015.10.31.	BB주식회사	채권운용팀	과장
진달래	2011. 2. 1. ~ 현재	BB주식회사	임원실	부사장

- ⑤ 상근임원인 경우 “**상근**”, 비상근임원인 경우 “**비상근**”으로 기재
- ⑥ 임원이면서 전문인력에 해당되는 경우 “**Y**”, 전문인력이 아닌 경우 “**N**”으로 기재
- ⑦ 해당임원의 선임일자 기재
- ⑧ 지배구조법 제5조제1항각호의 임원자격에 적합한 경우 “**Y**”로 기재
- 단, 신청회사가 신청일 현재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투자자문·일임업자)이면서, 해당 임원이 '16.7.31 이전 선임됐을 경우, 자본시장법 제24조('16.7.31 삭제 이전 조문)의 임원자격 적용

<첨부서류>

- ① 이력서
: 인감도장(개인)으로 날인한 이력서
- ②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 신청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간 前직장의 경력증명서(원본) 및 現직장의 재직증명서(원본)
* 5년 기간내 경력단절기간(1개월 이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의 증명서(소속기관 확인서 포함) 미제출 사유(징계·처벌사실 등 포함)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확인한 서류 제출
** 준법감시인의 경우 지배구조법 제26조제1항각호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
- ③ 신원조회 의뢰서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본적지) 등을 기재한 신원조회 의뢰서 (붙임1 참조)
- ④ 소속기관 확인서
: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간 소속기관의 처벌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에 제재사실 등을 표기할 경우 제외)
- ⑤ 결격사유없음 확인서
: 임원 요건 확인서에 인감도장(개인)을 날인하여 제출하되, 회사 형태, 임원 선임일자에 따라 양식을 구분하여 제출 (단, 붙임 2-4 양식은 법인인감 날인)

구분	임원선임일자	제출양식	확인자	확인내용
신청일	'16.7.31 이전	붙임 2-1	임원 본인	자본시장법 제24조('16.7.31 이전 조문)
현재 금융회사	'16.8.1 이후	붙임 2-2	임원 본인	지배구조법 제5조제1항각호
		붙임 2-3	대표이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3호
신설법인	-	붙임 2-2	임원 본인	지배구조법 제5조제1항각호
		붙임 2-3	대표이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3호

* 준법감시인이 지배구조법에 따른 요건(지배구조법 제26조제1항제1호)을 충족함을 확인한 서류, 인감도장(개인)으로 날인(붙임 2-4 참조)

- ⑥ 신용정보조회서(원본)
: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발급(방문·우편)받은 '신용정보조회서' 제출(최근 5년간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변동분 조회내역 포함)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여권 사본 및 신용정보 열람(발급)신청서(본인 자필서명 필요)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신용정보조회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

- ⑦ 개인 인감증명서(원본)

4.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첨부서류>

- ① 등록업무단위의 종류와 업무영위방법을 기재한 서류 (붙임3 참조)

5. 재무에 관한 사항

(단위 : 억원)

구분	FY201X	FY201◇	FY201△	구분	FY201X	FY201◇	FY201△
자산총계				영업수익			
부채총계				영업이익			
자본총계				당기순이익			

<첨부서류>

- ①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감사보고서)
- ② 설립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의 경우,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감사보고서)

* 설립 후 사업연도가 지나지 않은 법인은 설립일부터 신청일까지의 재무제표로 같음

감사보고서가 아닌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 독립성을 갖춘 회계법인(ex.회사의 기장 대리 업체 등은 불가)에서 재무상태를 확인 받은 후 증빙서류(ex.재무제표확인원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신청시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중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에 첨부된 경우 포함)를 통해 이미 공시된 자료의 경우 동 시스템에 공시된 감사보고서 자료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설비에 관한 사항

6-1. 전문인력의 명단

(기준일: 년 월 일 현재)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문자격내용	증빙서류명칭 (등록번호/발급기관)	전문인력 관련 주요 경력
1			①		②
2					
⋮					

① 증권운용전문인력, 부동산운용전문인력,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 등을 기재하고, 괄호안에 구체적 적용법조를 기재

(예시) ■ 증권(별표2 1. 인력에 관한 요건, 마. 1. 가. 8))

■ 부동산(별표2 1. 인력에 관한 요건, 마. 2. 다. 2))

■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별표2 1. 인력에 관한 요건, 마. 2의2. 1.) / 1. 가, 1))

※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 1.인력에 관한 요건 중 “마” 및 별표13 참고

② 경력이 요구되는 전문자격의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는 주요
경력을 간략히 기재

<첨부서류>

① 전문인력의 자격확인서류

: 금융투자전문인력등록증(현재 등록되어 있는 경우) 또는 금융투자
전문인력 등록 확인서(과거 등록된 이력이 있는 경우), 시험합격증,
교육수료증 등 자격확인서(붙임 4 참조)

※ 등록증, 시험합격증이 없는 경우 협회 등록 시 필요한 운용경력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로 같음

②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 현직장에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전문
자격 인정을 위하여 운용경력 또는 재직경력이 필요한 전문
인력의 경우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전문인력 자격시험 합격 후 등록
교육을 면제받기 위하여 필요한 재직·경력을 증명하는 경우도 포함)

③ 상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의료보험증 사본 등
(기관장 직인이 표시되는 형태로 출력, 붙임 5 참조)

④ 그 밖의 운용전문인력에 해당함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6-2.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첨부서류>

- ① 사무공간 배치현황(부서명, 주출입문 등 표시, 붙임6 참조)
- ② 사무실 관련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 ③ 전산설비 내역, 보안설비 및 보완설비 등 현황(전산설비 흐름도 포함)
- ④ 전산설비, 보안설비·보완설비 등 구입 증빙
: 위탁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구매주문서, 세금계산서, 대금지급 증빙서류 등으로 설비 구비를 입증
- ⑤ 비상계획(BCP, Business Contingency Plan) 등

7. 대주주나 외국금융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구분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비고
1	홍길동	000,000	00.0	최대주주
2	(주)대한민국	00,000	00.0	주요주주
⋮				

- ① 등록신청일 현재 대주주 또는 외국금융투자업자의 성명(명칭), 소유주식수 및 비율을 기재

<첨부서류>

- ① 등록신청일 현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 및 비율을 기재한 서류 1부
- ② 결격사유 없음 확인서 : 대주주 결격요건을 나열하고 각 항목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을 본인 스스로 확인한 서류(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붙임7 참조)

③ 신용정보조회서(원본)

: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발급(방문 · 우편)받은 ‘신용정보조회서’ (최근 5년간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변동분 조회내역 포함). 법인인 경우 ‘기업신용정보조회서’ 제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여권 사본 및 신용정보 열람(발급)신청서(본인 자필서명 필요)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신용정보조회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

④ 그 밖의 대주주 요건(출자자금 소명 등)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법인이 최대주주인 경우 추가 제출>

- ① 최대주주인 법인의 주주명부 : 최대주주인 법인의 인감도장으로 날인한 주주명부(기준일 명시)
- 최대주주인 법인의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 ② 최대주주 개황자료 : 주소, 대표자, 연혁, 사업내용 등을 기재한 자료 등
- ③ 결격사유 없음 확인서 :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사실상 지배자가 스스로 확인한 서류 (붙임7 참조)

<대주주 범위>

구분	세부사항
최대주주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 ※주주 상호간 특수관계인에 해당 시 복수의 최대주주 사례 발생 가능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 (사실상 지배자 포함)
최대주주의 대표자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주주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참고
주요주주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 또는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임원 등

8.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첨부서류>

- ①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 통제장치에 관한 서류
- ② 이해상충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 이해상충 방지체계 내용 작성
- ③ 이해상충행위가 발행하지 않도록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 대표이사가 확인한 서류 (붙임8 참조)
- ④ 그 밖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서류

9. 그 밖의 기재사항

<첨부서류>

- ① 합작계약서 등 : 외국인과의 합작을 통한 신청시에 한함
- ② 위임장 등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 ③ 신청인이 자본시장법 제249조의3제2항제6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 1부 (신청인 본인의 확인서, 붙임9 참조)
- ④ 신용정보조회서(원본) :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발급(방문·우편) 받은 '기업신용정보조회서'(최근 3년간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변동분 조회내역 포함)
- ⑤ 그 밖의 타당성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 붙임1 > 신원조회 의뢰서 양식

신원조회 의뢰서

조회대상자

성명 (한자)	주민(법인) 등록번호 ¹	등록기준지 ²	조회기관 ³

[기재시 유의사항]

1.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등록번호 기재
2. 등록기준지(舊본적지)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현 등록기준지를 기재
3. 등록기준지 소재 조회기관 및 담당자의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기재

조회내용

- 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붙임2-1 > 임원 확인서 양식

임원 결격사유없음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해당사항없음 확인서명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금융관련법령*(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 포함)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면직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재임(재직) 중이었던라면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직)한 임(직)원으로서 그 통보된 날부터 5년(통보된 날부터 5년이 퇴임(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직)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해임요구, 직무정지 또는 문책경고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각각 5년, 4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면직, 정직 또는 감봉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각각 5년, 4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직무정지나 문책경고 조치를 받은 직원으로서 법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최근 5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이었거나 불건전한 금융거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의 대주주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실이 있는자	
최근 5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 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이 있는 자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 한국은행법, 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외국환거래법,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주택법, 예금자보호법,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담보부사채신탁법, 금융지주회사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전자금융거래법,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공사채등록법, 공인회계사법,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산업발전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에관한법률 제24조, 동법시행령 제27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2제1항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0. 00. 00.

성 명 : (인)

< 붙임2-2 > 임원 확인서 양식

임원 결격사유없음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해당사항없음 확인서명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지배구조법 또는 동법에 따른 금융 관련법령(이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 포함)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다만, 해당 조치의 원인에 대해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 한정)로서 해당 조치일로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그 소속기관 또는 그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는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 포함) 또는 그에 상응 하는 조치를 받은 자로서 다음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임원(업무집행책임자 제외) -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 포함), 직무정지(직무정지 요구 포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 문책경고일로부터 각각 5년, 4년, 3년 · 직원(업무집행책임자 포함) - 면직, 정직, 감봉 요구일로부터 각각 5년, 4년, 3년	
임원으로 재직할 금융투자업자와 여신거래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자	
최근 5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이었거나 불건전한 금융거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의 대주주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실이 있는 자	
최근 5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 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이 있는 자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

본인은 상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7-41조의2제1항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0. 00. 00.

성 명 : (인)

< 붙임2-3 > 임원요건 충족 확인서(대표이사 법인인감 확인)

임원요건 충족 확인서

당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 중 당사와 여신거래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과 특수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당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자는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이사 ○ ○ ○ (인)

< 붙임2-4 > 준법감시인 확인서

준법감시인 결격사유없음 확인서

본인은 최근 5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및 금융관계법령(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본인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 또는 금융관계법령에서 조치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준법감시인 ○ ○ ○ (인)

< 붙임3 > 업무영위방법 작성요령

1. 신청 개요

회사명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문 : ◆ 영문 : 		
소재지			
	인가(등록)업무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현재 영위중인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추가하고자 하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등록신청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자기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최근 사업년도말 기준 		
임원구성	직위	성명	주요이력
최대주주			
주주구성 ¹⁾	주주명	지분율	구분 ²⁾

주1) 대주주요건 심사대상 및 5% 이상은 별도 구분하여 표시하고 나머지는 통합하여 기타로 표시

2) '금융기관', '내국법인', '개인', '외국법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로 구분

3) 칸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 삽입 또는 삭제하여 적절하게 조정

2. 심사대상 대주주 현황

대주주현황	주주명	구분 ¹⁾	의결권 있는 주식수	비율(%)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최대주주와의 관계 예) 배우자, 자녀 등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사실상 지배자				
최대주주의 대표자				
주요주주				

주 1) '금융기관', '내국법인', '개인', '외국법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 등으로 구분

※ 외국금융투자업자의 지점인 경우 : 외국금융투자업자명칭 기재

※ 필요시 대주주 등 신청인의 지배관계를 나타내는 도표 첨부

3. 자기자본 현황

① 자기자본 (기준일 : 20 .00.00 현재) : _____ 억원

※ 최근 사업연도가 없거나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증자 등의 사유로 자기자본 변동이 있는 경우 신청일 현재 자기자본을 기재

② 최저자기자본 : (1) + (2) = _____ 억원

※ 최저자기자본은 신청인이 투자자문·일임업 등 자본시장법상 다른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만 작성

(1) 기존 인가·등록단위에 대한 유지 자기자본 : _____ 억원

(단위: 억원)

인가(등록)단위	금융투자업 종류	투자자 유형	최저 자기자본	유지 자기자본*
①	②	③		
합 계				

* 유지자기자본 : 인가(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70%

- ① 인가(등록) 단위 : 5-1-1 등 해당하는 업무단위를 기재
- ② 금융투자업의 종류 : 투자자문·일임업 등 해당사항 기재
- ③ 투자자의 유형 :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또는 전문투자자 등 기재

(2)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에 대한 최저자기자본 : 10억원

4. 물적 설비 현황

* 등록심사 요건 해당 내용을 표 안에 상세하게 기술 (필요시 테이블 등 작성가능)

** 전산설비 등을 위탁한 경우 이를 감안하여 평가

심사항목	관련 내용
(1) 전산설비 및 통신수단	
① 주전산기, DB서버, 저장장치, 단말기, 전용회선 등 업무관련 전산설비 구축의 적정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업무 영위에 적합한 전산시스템 보유 및 가용성·안정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전산기 - DB서버, 매매관련(주문관리, 결제관리, 원장관리 등) 서버, 통신서버, 웹서버, 보안서버 등 - 저장장치, 단말기 등 기타 주변장치 - 해당업무 영위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등 ■ 내부 네트워킹, 전용회선 구축 등 통신시스템 구성
② 침입탐지·침입방지시스템, 방화벽 등 보안체계 구축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성이 검증된 보안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이동식저장장치 통제 프로그램,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탐지 및 백신프로그램, 방화벽 등
③ 정보이용자 확인 및 전산실 출입 통제시스템 구축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이용자 확인 및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전산기 및 각종 서버에 대하여 비인가자의 접속 및 사용 통제방안 구비 - 주요 데이터에 대한 접속(log-in) 기록 유지 등 정보유출대책 마련 ■ 전산실 출입 통제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실 출입 통제(카드키, 비밀번호 이용 등) 및 미승인된 출입자의 방문일지 기록 - 전산실 출입자의 신원확인이 가능하도록 CCTV 배치
④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백업장치 구축 및 백업자료 별도 보관·관리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거래정보 등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백업장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업자료의 소산보관장소 마련 - 기간별 소산보관대책 마련 - 백업과 관련한 외부업체와의 계약 등

(2)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p>① 이해상충부서간 별도 업무공간 확보 등 정보차단벽(Chinese Wall) 설치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상충부서간 정보차단벽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상충부서간 별도층 배치 등 업무공간 구분 - 이해상충부서간 출입통제(카드키 등)
<p>② 충분한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 확보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사무공간(총 전용면적 및 1인당 전용면적 기재) 등 충분한 업무공간 및 부서별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기기 확보
<p>③ 내부기관 및 감독기관 등의 감독·검사 시 법적 장애가 없을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적 설비에 대한 소유권의 완전성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스, 임대, 위탁 등 제한적 확보 여부 점검

(3) 보안설비 및 보완설비

<p>①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의 확보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실 보안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PS, 항온항습기, 소화설비, 비상발전기 등 구비 - 전산실 내 CCTV 사각지대 제거 - 장애에 대비한 주요 전산장비 및 통신회선의 이중화 ■ 사무실 및 전산실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미인가자 접근 차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장소 CCTV 설치 및 녹화기록 유지
<p>② 파업 등 불시사태 대비 비상계획 마련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CP(Business Contingency Plan) 마련
<p>③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 확보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발생에 대비한 비상복구시스템 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usiness Contingency Plan 마련 - 재해복구(Disaster Recovery) 센터 마련 - 재해복구센터 내 단말기 등 백업체계 구축
<p>④ 비상사태 발생시 즉시 구현이 가능한 비상계획 마련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usiness Contingency Plan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CP를 포함한 재해복구 훈련 실시 - 재해복구 훈련시 복구테스트 결과

5. 이해상충 방지체계 현황

* 등록심사 요건 해당 내용을 적절히 요약하여 핵심적 내용을 표 안에 기술
(필요시 테이블 등 작성가능)

(1) 이해상충의 파악·평가·관리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관련 내용
① 내부통제기준에 반영된 이해상충의 파악·평가·관리 체계가 합리적이고 검증 가능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법감시인이 이해상충의 파악·평가·관리를 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
②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이 적정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상충 고지방법, 거래 제한 및 주의 목록 등 이해상충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방법 및 절차
③ 내부통제기준의 이해상충 관리체계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이 이루어 질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법감시인 등의 상시점검 및 정기점검 등 점검주기와 대상 및 필요한 시스템 구축여부
④ 그 밖에 인가신청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2) 정보교류차단	관련 내용
① 정보교류 차단 부서간 정보차단벽 (Chinese Wall)이 적정하게 설치 되어 있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교류차단 대상 영업 및 계열회사 등과 정보제공, 임직원의 겸직 또는 파견, 사무공간 또는 전산설비의 공동이용 금지 등의 정보차단장치와 관련한 차단대상과 허용사항 등
② 법령 등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정보차단벽간 정보제공(Wall Cross)이 이루어지는 경우 관련 기록이 유지·관리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통제기준에 명시된 정보차단벽 통과 절차 및 준수사항, 준법감시인 확인 사항 등
③ 그 밖에 인가신청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정보차단벽 간 정보교류를 합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6. 업무영위 방법

① 조직체계

- 일반사모집합투자업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체계의 직위·성명 등을 기재하며 담당업무를 간단하게 기재한 조직도를 첨부

② 업무영위 방법

- 회사개황, 등록신청 배경, 사업목표, 사업전략, 주된 타겟시장 등을 기재

< 붙임4 >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증 및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 확인서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증

이름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83****-1*****
자격구분	투자자산운용사	등록일자	2012/12/12
등록번호	211xxxx123	소속회사	홍길동 자산운용
업무범위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위 사람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금융투자전문인력임을 확인합니다

2015년 10월 20일

한국금융투자협회



우 150-9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3 / 전문인력관리부

금융투자전문인력/투자권유대행인 등록 확인서

본 확인서의 사람은 별첨과 같이 등록이력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별첨 : 금융투자전문인력 / 투자권유대행인 상세확인표

2017년 00월 00일

인 국 금 용 투 지 협 회



금융투자전문인력 /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사항

성명	주연등록번호	소속회사	등록번호	자격구분	업무영위	등록일	말소일
홍길동	000000-000000	00자산운용 주식회사	211200000	투자자신용용사	금융투자상품	20120001	20151130

< 붙임5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등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발급번호 : JJJ123456789011234

Page : 1/1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는 발급일 현재까지 가입 신고된 가입자 중 발급대상으로 요청한 가입자의 명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발급 관리되고 있습니다.

※ 본 「사업장 가입자명부」는 반드시 국민건강보험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사업장 가입자명부」는 개인정보이므로 외부로 유출되어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법적 책임은 공단에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장명	홍길동 자산운용 주식회사			사업장관리번호 - 단위사업장기호	
단위사업장명	NONE			12345678901 - 000	
일련 번호	가 입 자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증번호	주민번호	성명		
1	12345678900	83**** - 1*****	홍길동	2014-06-02	
2	12345678901	83**** - 2*****	김길동	2011-08-01	
3	12345678902	83**** - 1*****	박길동	2011-02-07	

발급일 기준 사업장 가입자(상실자) 발급건수 총 3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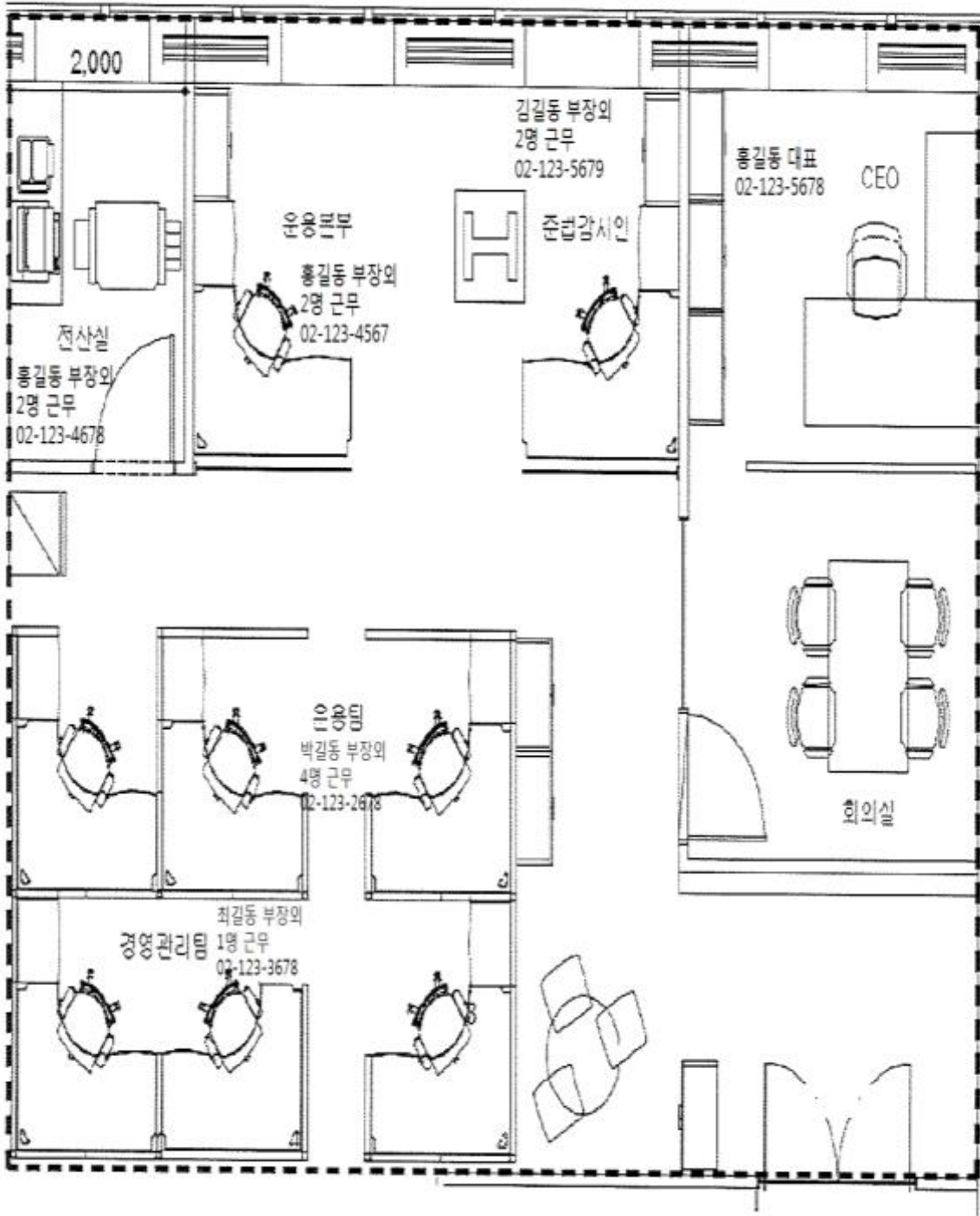
※ 주민등록번호중 일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특수문자로 대체하였습니다.

2015.1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붙임6 > 사무공간 배치현황



※ 전산실(설비) 및 CCTV 위치 표시

< 붙임7 > 대주주 확인서 양식

[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대주주 결격사유없음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확인서명
출자자금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조성한 자금으로서 그 합계액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차입에 따라 조성한 자금이 아닌 것으로 인정될 것 (1) 유상증자 (2) 1년내의 고정자산 매각 (3) 내부유보 (4)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3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신청한 금융투자업 등록업무 단위와 동일한 등록업무 단위의 직권 말소를 받은 자이거나, 그 자의 임원 또는 대주주였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지 않을 것	
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49조의3제2항제5호, 동법 시행령 제271조의2 제5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2제2항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0. 00. 00.

(회사명)

(인)

[대주주가 금융기관 이외의 내국법인인 경우]

대주주 결격사유없음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확인서명
출자자금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조성한 자금으로서 그 합계액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차입에 따라 조성한 자금이 아닌 것으로 인정될 것 (1) 유상증자 (2) 1년내의 고정자산 매각 (3) 내부유보 (4)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3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신청한 금융투자업 등록업무 단위와 동일한 등록업무 단위의 직권 말소를 받은 자이거나, 그 자의 임원 또는 대주주였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지 않을 것	
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49조의3제2항제5호, 동법시행령 제271조의2제5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2제2항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0. 00. 00.

(회사명) (인)

[대주주가 개인인 경우]

대주주 결격사유없음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확인서명
출자자금 중 객관적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에 따라 확인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마련된 자금일 것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적법한 납세절차를 취득한 상속재산 또는 수증재산 처분자금 (2)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3)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소득재원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3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신청한 금융투자업 등록업무 단위와 동일한 등록업무 단위의 직권 말소를 받은 자이거나, 그 자의 임원 또는 대주주였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직무정지를 받거나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지 않을 것	
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49조의3제2항제5호, 동법시행령 제271조의2제5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2제2항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0. 00. 00.

성 명 : (인)

< 붙임8 > 이해상충방지체계 관련 대표이사 확인서

이해상충방지체계 관련 대표이사 확인서

당사 _____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2항 제7호에 따른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년 월 일

(회사명) 대표이사 ○ ○ ○ (인)

< 붙임9 > 신청인(본인) 확인서 양식

신청인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확인
법 제31조에 따른 경영건전성기준(겸영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경영건전성기준을 말한다)을 충족	
최근 3년간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법 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이상의 조치(이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포함)를 받은 후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을 것 1) 업무의 전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3년 2) 업무의 일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2년 3)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49조의3제2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271조의2제7항 및 제8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0. 00. 00

(회사명)

(인)

<첨부>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VI. 물적설비 위탁 관련 안내사항

- (관련법규)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 및 정상적 업무 영위를 위해 충분한 전산설비 등을 구축할 필요 (법§249의3②)
 -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위하는 업무 중 일부는 제삼자에게 위탁이 가능 (법§42①)하므로, 물적설비와 관련한 외부 위탁을 폭넓게 인정
- (위탁가능범위) 전산설비·통신수단* 및 펀드회계시스템·펀드기준 가격산정시스템**은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것은 인정
 - * 단, 서비스의 안정성, 방화벽 등 보안정도에 대한 점검이 필요
 - **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할 경우,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적설비 및 전문인력 구비 필요
 - 또한, 위탁여부와 관계없이 전산 전담인력은 채용이 불필요하며 전산 유지보수와 관련해서도 외부 위탁 허용
 - 다만, 부서간 정보차단벽(녹취설비, 메신저기록설비 등)은 외부 위탁이 불가하므로 이를 직접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

<위탁 가능한 물적설비 세부 현황>

구분	세부 항목	위탁 여부
전산설비 및 통신수단	① 주전산기, DB서버, 저장장치, 단말기, 전용회선	가능
	② 침입탐지 및 침입방지 시스템, 방화벽 구축 여부	가능
	③ 전산실 출입 통제시스템 구축 여부	가능
	④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백업장치 구축 등	가능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	① 이해상충 부서간 정보차단벽 설치	불가
	② 충분한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 확보 여부	불가
	③ 감독기관 등의 감독·검사에 필요한 업무공간	불가
보안설비 및 보완설비	① 보안 설비의 확보 여부	가능
	② 파업 등 불시사태 대비 비상계획 마련 여부	불가
	③ 정전 등 재해발생에 대비한 비상복구시스템 구축	가능
	④ 비상사태 발생시 시현가능한 비상계획 마련 여부	불가

※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 2. 물적설비

Ⅶ.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후 주요 안내사항

※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이후 수행해야할 주요 사항을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외 자본시장법, 지배구조법 등 각종 법규상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에게 요구되는 사항을 숙지하시어 충실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1. EDES, Fines 및 CPC 가입

□ 금감원 담당자가 안내한 금융회사코드를 확인한 후 다음 2개의 홈페이지에 가입

※ 다음의 홈페이지에 기 가입한 회사(투자자문, 일임업자)는 해당사항 없음

① 전자문서교환시스템(edes.fss.or.kr) 가입

-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 간 문서를 전자로 송수신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 금융회사 보고·공시사항 제출 등 기존에 서면으로 처리하던 문서 작업을 모두 EDES상에서 처리함이 원칙
- 홈페이지 초기화면상 '신청서다운로드'를 클릭하여 EDES에 가입하고, '시스템이용절차'를 숙지하여 공문 송수신 작업 처리

② 금융정보교환망(fines.fss.or.kr) 가입 및 CPC지원 시스템에 대한 권한 신청

- 홈페이지 초기화면상 '사용자등록신청'을 클릭하여 FINES에 가입하고, '사용자매뉴얼'을 숙지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 및 CPC지원 시스템에 대한 권한 신청

2. 상호 및 결산일 변경

- ① 등록 직후 상호 변경을 진행한 후, 자본시장법 제418조에 따라 상호변경사항을 전자문서교환시스템을 통해 보고
 - 동 사항에 대한 보고는 자산운용총괄팀으로 지정
- ②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의 회계기간은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르며(자본시장법 시행규칙 §6①항),
 - 회계처리기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함

3. 감독당국 보고의무(요약)

※ 지배구조법 제정 이후 임원, 주요업무집행책임자,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 준법감시인, 대주주 변경 등의 보고 관련 근거 법규가 자본시장법에서 **지배구조법**으로 바뀌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배구조법 §7, §8, §19, §30, §31 등 참조)

① 금융투자업자의 주요 보고사항(법§ 418, 영§ 371, 규정§ 2-16)

- 작성양식은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책서식1 제13호의 붙임 참고
- 전자문서교환시스템으로 전 문서를 하나의 PDF 파일로 만든 후 전송 (공문에 반드시 '직인'이 있어야 원본으로 인정)

② 공시사항(법§ 33②③, 영§ 36②④⑤, 규정§ 3-70)

- 법 제33조 제2항 등에 따른 업무보고서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공시서류(영업보고서)를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해야 함
- 법 제33조 제3항 등에서 정하는 경영공시사항이 발생할 경우 금융위원회(감독원)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해야 함
- 공시의 세부적인 항목 및 공시방법 등은 협회가 정한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 등에 따름
- 공시사항 발생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할 내용을 EDES를 통해 금융감독원으로 보고

3 업무보고서(법§ 33①④⑤, 영§ 36①③⑦, 규정§ 3-66①③⑥)

○ 업무보고서 작성양식

-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책서식1 제17호
- 법제처(law.go.kr) 홈페이지에서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검색 후 '첨부파일' 메뉴에 '업무보고서.zip' 파일이 업로드 되어 있으며 이중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가 작성양식임

※ 실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는 금융정보교환망에 작성대상 업무보고서 양식이 시스템화되어 있으나 간혹 제·개정된 보고서 항목이 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의 시차가 있으므로 기한내 원활한 업무보고서 제출을 위해서는 업무보고서 제출 기일 이전에 법제처에서 제·개정 여부를 확인할 필요

○ 업무보고서 제출주기 및 작성방법

-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 파일 가장 처음 sheet '목록'에 업무 보고서 항목별 작성대상과 제출주기가 명시되어 있음
- 작성대상 중 '공통', '집합투자업자'로 표시되어 있는 업무보고서 항목에 대하여 금융정보교환망에서 직접 기입한 후 전송(반드시 '전송' 버튼을 눌러 제출이 완료되었는지 확인 필요)
- 제출주기는 '연', '반기', '분기', '월'로 나누어져 있으며 제출 주기가 '연', '반기', '분기'인 업무보고서 항목은 각 기준일(연말, 반기말, 분기말)로부터 45일 이내에, 제출주기가 '월'인 업무보고서 항목은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다만, 업무보고서 GA158 '감사인의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에 관한 사항' 중 반기별 감사 또는 검토의견에 관한 사항은 90일 이내에 제출

○ 업무보고서의 수정

- 외부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과정, 금융감독원의 검사과정 또는 자산운용사의 자체 인지 등을 통하여 기재출된 업무보고서의 수정사항이 발견된 경우 즉시 기재출된 업무보고서를 수정

※ Fines 금융정보교환망(fines.fss.or.kr) 접속 - [보고서 작성 및 전송] - [업무보고서 마감해지 요청]

4.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보고의무

① 설정·설립(변경) 및 해지·해산 보고(법§249조의6②④, §192①②, §202①)

- 설정·설립보고서 및 변경보고서 작성양식은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책서식1 제45의5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변경) 보고서[별첨1]를 참고

* 변경보고서 설정·설립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변경사유 및 내용과 변경대비표를 함께 제출

- 해지·해산보고서 작성양식은 투자신탁 해지 보고는 별도 양식이 없으며, 투자회사등의 해산 보고는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책서식1 제8호 투자회사등 해산 보고서를 참고

- 설정·설립(변경) 및 해지·해산 보고는 금융정보교환망(FINES) 통해 금융감독원 펀드심사팀으로 보고

② 특정사유 발생 보고(법§249조의7④)

- 작성양식은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책서식1 제45의7호 사모집합투자기구 특정사유 발생 보고서 [별첨3]를 참고

- 레버리지 비율 초과, 부실자산 발생 등 특정사유* 발생시 3영업일 이내 보고(영§271조의10⑭)

* ① 법 제249조의7제1항의 한도 초과, ② 부실자산 발생, ③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④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만기 변경이나 만기상환 거부 결정이 있는 경우

- 보고사유 발생시 금융정보교환망(FINES)을 통해 금융감독원 자산 운용검사국으로 보고

③ 정기보고서(법§249조의7③, 영§271조의10⑬, 규정§7-41조의7⑧)

- 작성양식은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책서식1 제45의6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정기보고서를 참고
- 금융정보교환망(FINES) “보고서 작성 및 전송” 메뉴의 “보고서 작성기”를 통해 제출
- 정기보고서 보고기준일 및 제출기한

① 보고기준일(법§249조의7③) : 매분기말

② 제출기한(영§271조의10⑬)

- 보고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별첨1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변경) 보고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지 1] 별책서식 1 <제45의5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변경) 보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6 제2항(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변경)내역을 보고합니다.

1.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명칭 :
2. 보고일[설정·설립(변경)일] :
3. 집합투자업자 명칭 :
4. 변경사유 :
5. 변경내용 :

붙 임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변경) 보고

○ ○ ○ 대표이사 (인)

작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작성방법

1. 변경보고의 경우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추가 기재하고 변경되는 사항에 대한 변경전·후 대비표를 함께 제출한다.

(붙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변경) 보고

1.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가.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기재상의 주의

1. 집합투자계약상의 정식 명칭을 기재하고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를 괄호 안에 기재한다.
2.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인 경우, 펀드코드를 클래스별로 구분하여 괄호 안에 기재한다.
3.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인 경우, 모자형집합투자기구 그룹 내의 모 또는 다른 자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를 기재한다.
4.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경우 그 사실을 기재한다.

나.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형태 및 구조

기재상의 주의

1. 형태별 종류, 특수형태 표시 등을 다음의 기준에 근거하여 나열하여 기재한다.
 - ① “형태별 종류”는 법 제9조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형태에 따라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여부를 기재한다.
 - ② “특수형태 표시”에는 법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형, 전환형, 모자형 여부를 기재한다.
2.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종류별 차이점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기재하고, 전환형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간략히 기재한다.
3.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인 경우, 모자형집합투자기구 그룹 내의 모 또는 다른 자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간략히 기재한다.
4. 종류형, 전환형,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나 집합투자기구의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도표 등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5.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영 제2조 제7호에 따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사항을 간략히 기재한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계약(존속)기간

기재상의 주의

1. 계약(존속)기간이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기간을 기재한다.
2. 조기상환(해산) 가능일자가 사전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모든 조기상환 가능일자를 명시하고, 조기상환(해산)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계약(존속)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을 명시한다.

2. 투자목적 · 투자방침 및 투자전략에 관한 사항

기재상의 주의

1.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등에 대하여 간략히 기재한다.
2. 시행령 제271조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 해당여부를 기재한다.
3. 법 제249조의7 제5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 그 사실을 기재하고 주된 투자전략이 “경영참여목적”임을 기재한다.

3. 투자위험요소에 관한 사항

기재상의 주의

1. 집합투자기구의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투자위험을 중심으로 기재한다.
2. 원본손실위험, 주요운용위험, 해지위험(임의해지 포함), 환위험 등을 기재하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특성에 따라 필수적인 위험을 추가하여 기재한다.
3.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또는 장외파생상품을 편입하는 구조화펀드의 경우 관련 위험(위험에 관한 지표, 중도 환매시 위험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다.
4.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위험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다.
5.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4. 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인 경우에는 발기인과 감독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감독이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및 주요 업무

기재상의 주의

1. 회사 개요에는 회사명, 주소·연락처·인터넷홈페이지 주소, 회사연혁, 주요업무를 간략히 기재한다.

나. 발기인 및 감독이사에 관한 사항 (투자회사인 경우에 한한다)

5.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기재상의 주의

1.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투자제한이 있는 경우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투자한도, 투자대상 조건 등을 기재한다.
2. 투자대상자산은 지분증권(비상장기업 발행분 별도), 채권, 어음 및 채무증서등, 자산유동화증권(ABS)·주택저당채권유동화증권(MBS)·후순위채권(CBO)등, 외화표시증권,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부동산, 기타자산과 기타 운용방법인 증권의 대여·증권의 차입·단기대출·금융기관 예치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3. 채권, 어음 및 채무증서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별로 투자 가능 신용등급 및 투자한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4.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장내외파생상품별 및 기초자산별(예: 증권, 금리, 통화, 상품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로 투자의 목적(예: 헤지 또는 투기)과 투자한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5.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비시장성자산에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자산의 비중(시장성·비시장성 구성 비중 등) 및 투자한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환매금지형(폐쇄형)펀드로만 설립·설정될 수 있음을 기재한다.
6.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레버리지) 한도와 관련된 사실을 기재하고, 투자목적회사를 활용하는 경우, 투자목적회사별 차입(레버리지) 한도를 기재한다.
7.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금전의 대여로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 총액 대비 금전 대여 비중 및 법 제249조의7 제2항 제4호에 따른 투자자 제한과 관련한 사항을 기재한다.

6. 신탁업자에 관한 사항

기재상의 주의

1. 회사개요에는 회사명, 주소·연락처·인터넷홈페이지 주소, 회사연혁, 주요 업무를 간략히 기재한다.

7.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전문투자형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전담중개업무를 제공받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기재상의 주의

1. 회사개요에는 회사명, 주소·연락처·인터넷홈페이지 주소, 회사연혁, 주요 업무를 간략히 기재한다.

8. 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는 사원 또는 주주에 관한 사항

(단위 : 억원, %)

투자목적 회사의 상호	사원 또는 주주에 관한 사항						사원 또는 주주가 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한 금액	비고
	상호	업종	업종 코드	대주주에 관한 사항				
				성명(상호)	업종	출자비율		

기재상의 주의

1. 영 제271조의19 제2항 제2호의 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 그 주주 또는 사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2. 업종에는 사업자등록증상 기재된 업태 또는 종목을 기준으로 '주된 업종'을 기재한다.
3. 업종코드에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코드를 주된 업종별로 기재한다.
4. 출자비율은 '의결권 있는 지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5. 동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보고한다. 다만, 출자비율이 변경된 경우 변경이 있었던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변경보고한다.

9. 동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출자 비율

(단위 : 억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명	출자가액	출자비율(%)	금융회사 여부

기재상의 주의

1. 경영참여목적의 사모집합투자기구이고, 영 제271조의9 제2항에 해당할 경우 작성한다.
2. 동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동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별로 그 출자가액 및 출자비율을 기재한다. 다만, 유한책임사원인 경우 상호(성명)등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3. 금융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4. 법 제249조의6 제2항 단서에 해당할 경우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정·설립된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고, 설정·설립 보고 이후 동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보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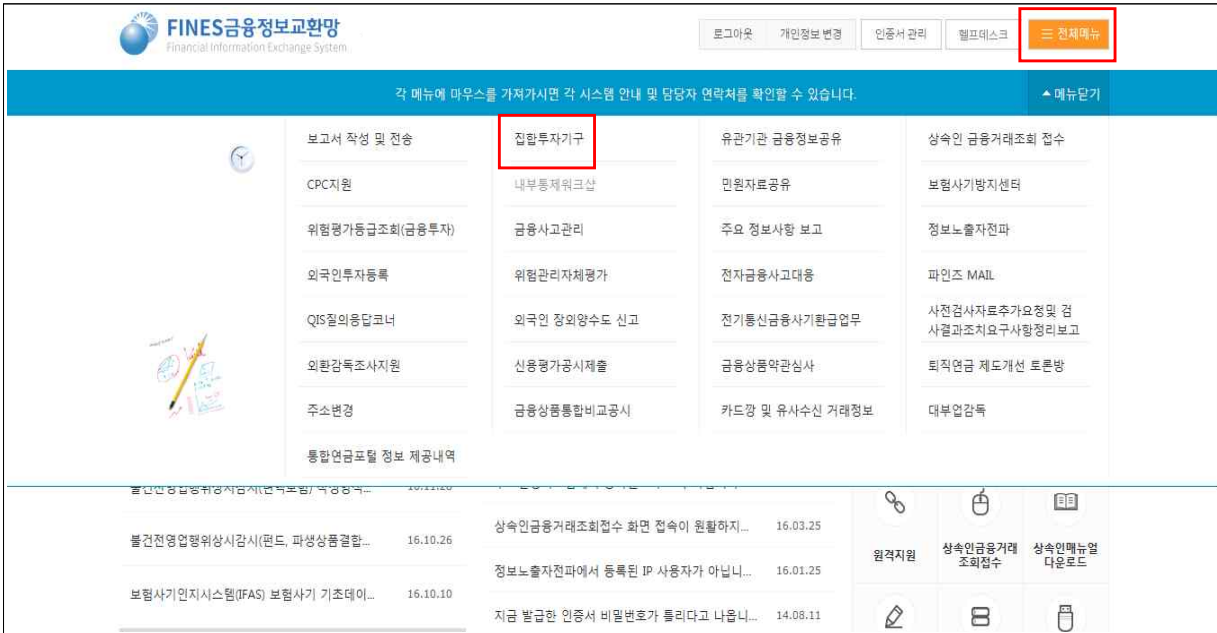
■ 첨부서류

1. 집합투자규약(부속서류를 포함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것으로서 법인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며,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부속서류를 포함한다)의 사본(집합투자기구 보고를 위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제출한 업무위탁계약서와 다른 경우만 제출한다)
 - 가.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 및 투자익명조합인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신탁업자
 - 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전문투자형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전담중개업무를 제공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투자회사로서 감독이사를 두는 경우 그 감독이사의 이력서 및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빙하는 서류
5. 출자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 변경 보고시에는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첨부

< 별첨1 > 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변경) 및 해지 보고 방법

1. 금융정보교환망(FINES) 접속(fines.fss.or.kr)하여 인증서로그인 후 '전체메뉴-집합투자기구' 클릭



2. 화면 좌측 메뉴 중 '해지펀드 보고' 클릭



3. 하위 메뉴 중 '설정(립)보고', '변경보고' 또는 '해지보고'를 선택 하여 해당 내용 입력 및 첨부서류 업로드 후 제출

- (1) 보고서 내용 등 작성방법은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책서식1에 따른 해당 보고서 서식상 '기재사항 주의' 등 참조
- (2) '설정(립)보고', '변경보고'의 경우 사전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해 보고서의 오류사항 등을 사전점검 후 제출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업무자료 > 공통 > 업무해설서 > [62] 사모펀드 설정·보고 관련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참조

The screenshot shows the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정·설정보고서' (Specialized Investment-type Private Equity Fund Setup/Setup Report) page on the FSS portal. The page includes a navigation menu on the left with '설정(립)보고' (Setup/Setup Report) selected. The main content area contains a form with the following fields and options: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명칭:** A text input field.
- 금융투자협회 부여코드:** A text input field.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일:** A date selection field.
- 전환보고 여부:** Radio buttons for '전환없음' (Selected) and '전환함'.
- 관련회사 명칭:** A text input field.

Additional text on the page includes:

- 수신: 금융감독원장
- 제 목: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정·설정보고서
- ※ 당초 등록일이 2010.12.31 이전인 경우 사모집합투자기구명을 수기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 제출 금융회사: 전체 / 대부금융 / 대부업체 / 금융감독원관리자

< 별첨3 > 사모집합투자기구 특정사유 발생 보고서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지 1] 별책서식1 <제45의7호>

사모집합투자기구 특정사유 발생 보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7 제4항 또는 제249조의12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특정사유 발생내역을 보고합니다.

1. 사모집합투자기구 명칭 :
2. 보고일(사유 발생일) :
3. 집합투자업자/업무집행사원 명칭 :

붙 임 : 사모집합투자기구 특정사유 발생 보고

○ ○ ○ 대표이사 (인)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붙임1)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특정사유 발생 보고

집합투자기구명칭	집합투자기구코드	재간접펀드 여부	TRS 거래 여부	설정일	만기일	보고항목	보고내용발생일	보고내용	환매연기 규모	보고사유 (원인)	처리방안	개방형 / 폐쇄형	추가형 / 단위형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전담중개업자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기재상의 주의

1. 집합투자기구코드에는 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한 표준코드를 기재한다.
2. 보고항목의 경우 영 제271조의10 제16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3. 보고내용의 경우 영 제271조의10 제16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등을 기재한다.
 - 제1호의 경우 : 한도를 초과한 비율
 - 제2호의 경우 : 부실이 발생한 투자자산, 보유수량, 평가금액(상각이전의 평가금액), 상각금액(해당 상각금액), 상각률(상각금액/평가금액 * 100), 부실사유(발행인의 부도, 화의신청,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파산절차진행), 부실단계(부실우려단계, 발생단계, 개선단계, 악화단계)
 - 제3호의 경우 :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내용(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포함)
4. 환매연기 규모에는 실제 환매연기된 부분의 설정원본 금액을 기재한다.
5. 보고사유(원인)의 경우 영 제271조의10 제16항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만 기재한다.
6. 처리방안의 경우 영 제271조의10 제16항 제1호의 경우에만 기재한다.

■ 첨부서류

특정사유 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붙임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특정사유 발생 보고

집합투자기구명칭	집합투자기구코드	재간접펀드 여부	TRS 거래 여부	설립일	보고항목	보고내용발생일	보고내용	환매연기 규모	보고사유 (원인)	처리방안	개방형 / 폐쇄형	추가형 / 단위형	업무집행사원	전담종개업자	기타업무수탁기관

기재상의 주의

1. 집합투자기구코드에는 금융감독원이 부여한 회사코드를 기재한다.
2. 보고항목의 경우 영 제271조의10제16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3. 보고내용의 경우 영 제271조의10제16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등을 기재한다.
 - 제1호의 경우 : 한도를 초과한 비율
 - 제2호의 경우 : 부실이 발생한 투자자산, 보유수량, 평가금액(상각이전의 평가금액), 상각금액(해당 상각금액), 상각률(상각금액/평가금액 * 100), 부실사유(발행인의 부도, 화의신청,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파산절차진행), 부실단계(부실우려단계, 발생단계, 개선단계, 악화단계)
 - 제3호의 경우 :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내용(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포함)
4. 환매연기 규모에는 실제 환매연기된 부분의 설정원본 금액을 기재한다.
5. 보고사유(원인)의 경우 영 제271조의10제16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만 기재한다.
6. 처리방안의 경우 영 제271조의10제16항제1호의 경우에만 기재한다.
7. 개방형/폐쇄형, 추가형/단위형의 경우 해당사항 있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만 기재한다.

■ 첨부서류

특정사유 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해외투자 및 외국환거래 관련 안내사항

1. 외국환취급기관 등록 제도

- 자산운용사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취급할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8)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외국환거래취급기관”으로 등록*이 필요 (외국환거래법§8, 영§13·14, 규정§2-14)

* '16.6월 국회에서 외국환취급기관 미등록 운용사의 외국환업무 취급에 대한 문제제기

- 외국환업무란 펀드의 운용 목적으로 역외펀드에 투자, 해외증권 및 해외부동산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수반되는 외환거래를 의미
- 자산운용사가 등록을 하기 위한 조건은 자기자본 10억원 초과, 2명 이상 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며,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13 및 금융투자업규정§2-11 참조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취급하였다면 형사벌칙*이 부과 될 수 있음

* 외국환거래법(§27):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2. 해외직접투자 등 신고제도

- 집합투자기구 운용을 위한 외화증권매매(해외송금) 등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 성격에 따라 금융위, 금감원 또는 한국은행에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함
(외국환거래법§18, 외국환거래법 시행령§8·9, 외국환거래규정§9-15조의2, 금융기관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3·4·7·8)
- 자산운용사가 직접 또는 펀드를 통하여 외국 법인에 지분증권을 10% 이상 취득 하는 등 해외직접투자에 해당되는 경우 금융위 또는 금감원에 신고하여야 함
 -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금융위에 신고
 - 금융·보험업 이외의 해외직접투자 또는 해외지사(지점/사무소) 설치 신고는 금감원 자산운용제도팀에 신고
 - *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에 관한 규정 §3, §4, §7, §8 참조
- 이외의 외국환업무는 한국은행에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함

6.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 관련 안내사항

1. 임직원의 자기매매 관련 규제체계

□ 자본시장법(§63)*은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금융투자 상품 매매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 구. 증권거래법은 월급여 50%이내의 증권저축 계좌만 허용

○ 다음의 의무 등을 부과

- 본인 명의 1개 계좌를 통한 매매

- 계좌개설 사실 신고- 분기(월)별 매매명세 통지

- 소속회사가 정한 내부통제기준 준수 등

□ 다만, 일부 임직원의 과도한 자기매매 또는 이와 연관된 불건전거래 행위로 고객과의 이해상충 및 금융사고를 유발될 가능성

○ 이에 금융투자업계와 T/F를 구성하여 자기매매 규제 관련 협의를 거쳐, 자율규제 강화를 추진

-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하고 이를 각 회사별 내부통제기준 및 전산시스템에 반영 ('15년 하반기~'16년 상반기)

주요 표준내부통제기준

-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위탁수수료 부과기준 마련시 고객과 임직원간 차별 금지(\$74②)
- 이해상충 발생 소지가 있는 업무를 영위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명의 계좌까지 신고범위 확대(\$75⑤)
- 상장지분증권 매매시 준법감시인 등 책임자의 사전승인 필요 (다만, 매매 필터링 시스템 구축시 사전승인 불요)(\$76조의2①②)
- 연간투자금액 및 누적투자금액을 각각 연봉 이내 및 5억원으로 제한(다만, 상속·증여 등의 경우 예외)(\$76조의2⑤)
- 장내파생상품 및 ELW 등 투기성 높은 상품 거래제한((\$76조의2⑦))

2. 자기매매 규제의 목표

□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계에 대한 불신요인의 하나로 작용했던 잘못된 자기매매 관행을 개선하여 국민신뢰 제고

□ 주식시장 활성화 기반 강화

- 과도한 자기매매관행 근절을 계기로 투자자 이익을 우선시하는 투자 문화 확립 및 주식시장 활성화

□ 금융사고 예방

- 자기매매과정에서 거액손실 발생시 고객 또는 회사자금을 횡령하는 등의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

□ 금융산업의 선진화 기여

- 후진적 자기매매 관행 대신 선진화된 금융산업의 확립 및 경쟁력 제고

7. 지배구조법 도입 관련 주요 안내사항

※ 금융회사의 건전 경영,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16.8.1.부터 시행

- 자산규모가 상대적으로 영세한 자산운용사도 지배구조법규에 따라 강화된 지배구조 관련 다양한 의무사항을 이행할 필요

1. 특수관계인의 범위 확대(지배구조법시행령§ 3)

- 자본시장법령에서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를 부계혈족은 6촌 이내, 모계혈족은 3촌 이내로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규정
 - 지배구조법령에서는 양성평등 원칙에 따라 혈족을 6촌 이내로 모두 동일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음
 - * (예시) 할아버지 형제의 자녀(종백부, 5촌)는 과거 부계인 경우만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되었으나, 향후 모계인 경우에도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됨
 - 자본시장법상 대주주와의 거래제한(§34),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35), 금융투자업자의 보고사항(§418) 등과 관련하여 범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필요

2. 주요업무집행책임자(지배구조법§ 8)

- 자산운용사가 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 등 주요업무를 집행하는 주요업무집행책임자를 두고자 할 경우,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면하여야 함
 -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기는 법상 3년을 초과하지 못하나, 연임이 가능하고, 정관에서 달리 정할 경우 임기의 단축·연장이 가능

3. 내부통제기준(지배구조법§ 24)

- 자산운용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및 절차인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 내부통제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지배구조법시행령(§19) 및 지배구조감독규정(§11)에서 규정
- ※ 금융투자협회는 지배구조법규에 따라 구체화된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제정 (내부고발제도 운영, 명령휴가 제도 등)

4. 위험관리기준(지배구조법§ 27)

- 자산운용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인식·평가·감시·통제하기 위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함
 - 위험관리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지배구조법시행령(§22) 및 지배구조감독규정(§13)에서 규정

5. 위험관리책임자(지배구조법§ 28, § 30)

- 자산운용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1인 이상 선임해야 함(선임의무는 자산운용사 등록 즉시 발생)
 - 임면, 임기 등 관련 사항은 준법감시인 규정(지배구조법§25②~⑥)을 준용하고 있고, 자격요건은 지배구조법(§28③)에서 규정

- 자산운용사가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할 경우 그 사실을 금융위에 지체 없이(7영업일 이내) 보고하여야 함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간 겸직은 금지되어 있으나, 자산 총액 5조원 미만이고 수탁고 20조원 미만일 경우, 준법감시인이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임 가능

6. 준법감시인에 대한 별도의 보수지급 마련 (지배구조법§ 25)

- 준법감시인에 대해 회사의 재무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 마련 의무화

8. 기타 안내사항

1. 투자광고

- 일반사모펀드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가 해당 펀드의 투자광고를 할 경우 전문투자자 또는 일정 요건*의 일반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할 것

* 시행령 제271조의6 각호 참조

- 이 경우,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알려야 함

2. 운용방법

- 일반사모펀드에 대해 순자산의 400%* 이내에서 증권·파생상품·부동산 투자 및 채무보증 등을 허용

* 집합투자기구 규약상 3억원 미만을 투자하는 적격투자자(전문투자자는 제외)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200%로 제한

- 일반 사모펀드를 국내부동산에 대하여 운용시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서는 아니됨

Ⅷ. 법규오해 사례 및 질의응답 사례

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요건 관련 관계법규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49조의3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등록의 요건 등) 및 [별표2](대주주의 요건)
 - 「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2(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심사기준), [별표 2](인력·물적설비·사업계획·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요건), [별표 3](대주주의 요건) 등
- 한편, 임원·준법감시인 및 대주주 등과 관련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을 참조

※ 정확한 관계법규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참조

- 한편,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계법규상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자본시장법 §249의3),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됨 (자본시장법 §249)

- **집합투자업의 하나로 공모집합투자업과는 구별되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별도 조문으로 신설하여 정의하고, 인가제가 아닌 등록제의 별도의 조문체제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도입**
 - 따라서, 집합투자업(공모집합투자업) 인가와 관련된 법령상 규정 (법§12~§16 등)이 아닌 별도 규정(법§249의3 등)이 적용됨에 유의

2.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전 “자산운용”이라는 표현을 상호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집합투자”, “투자신탁”, 또는 “자산운용”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자본시장법 §38)

* asset management, collective investment, pooled investment, investment trust, unit trust 등이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 포함)

- 일반사모집합투자업 영위를 위해 회사를 신설하는 등 기존 금융 회사가 아닌 자가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 이 경우 회사 상호를 사용함에 있어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전에는 “자산운용”이라는 표현을 상호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유의

3.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신청이 가능한 주체는?

-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등(자본시장법 §249의3②1.)

- 일반사모집합투자업 영위를 위해 회사를 신설하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 법인격요건상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닌 형태의 회사 등의 경우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음에 유의

4.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위한 요건의 주요 내용은?

-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계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등록을 하여야 함(자본시장법 §249의3②)
 - 자기자본(10억원), 인력(투자운용 전문인력 등)과 물적설비(사무공간 및 전산설비 등), 임원, 대주주,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이해상충 방지체계(내부통제기준 및 정보교류차단장치 등) 등에 관한 요건

□ 집합투자업(공모) 인가시의 요건과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시의 요건은 차이가 있음에 유의(등록시 완화된 요건이 적용)

- 특히 집합투자업(공모) 인가시 요건인 사업계획은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요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5.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위한 심사기한은?

- 금융위원회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그 등록 여부를 결정하며,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을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자본시장법 §249의3④)
 - 다만, 검토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함
 -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데 걸리는 기간
 - 등록신청인 또는 그 대주주 등을 상대로 등록검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 관계법령상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시 심사기한은 2개월로
집합투자업(공모) 인가시 심사기한 3개월보다 단축되어 있음
- 다만, 인가시와 동일하게 심사·검토기한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사실조회 또는 자료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질 경우 등록절차가 지체될 수도 있으며,
 - 이러한 사유에 따라, 자료보완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단순히 2개월 이내에 등록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음에 유의

6. 투자자문(일임)업자가 일반사모집합투자업 경영 등록시 필 요한 최소 자기자본은 얼마인지?

- 기존 영위 중인 투자자문·일임업 업무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70%
(유지자기자본) + 10억원의 자기자본이 필요
- * (예시) 기존에 투자자문업(5-1-1) 및 투자일임업(6-1-1)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문사의
경우 업무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은 17.5억원(= 2.5억원 + 15억원)이므로, 일반사모
집합투자업 경영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22.25억원(= 17.5억원 × 70% + 10억원)의
자기자본이 필요

- 투자자문사가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신규로 등록신청하는 경우,
신규로 추가하고자 하는 등록업무단위에 대한 최저자기자본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 기존에 영위하던 투자자문·일임업 등록업무단위 관련 최저자기자본에
대한 유지요건(70%)도 함께 포함(가산)하여 충족해야 함에 유의

7.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는 준법감시인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지?

-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함(지배구조법 §25①)
 - 또한,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함
 -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함

- 자산규모가 상대적으로 영세하다고 할지라도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로서 지배구조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준법감시인을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 자격요건 및 선임방법 등 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해야 함에 유의

8.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은?

- 준법감시인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지배구조법 §26)
 - (징계) 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령 등을 위반하여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경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등을 갖춘 자

-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 및 이에 상응하는 외국금융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 금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감사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 관련 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자

□ 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의 요건을 두고 있으므로, 준법감시인 선임시 동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적격한 준법감시인을 뒤야 함에 유의

9.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시 심사대상 임원 등의 범위는?

-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된 이사(대표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 비상무이사) 및 감사, 그리고 이사회에서 선임된 준법감시인

□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는 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을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 준법감시인에 대해서는 비록 등기된 이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준법감시인으로서의 지배구조법상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심사가 이뤄짐에 유의

10. 임원은 몇 명을 두어야 하는지?

-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법인은 3인 이상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두어야 함(상법 §383 및 §409)
 - 한편,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사외이사 2/3 이상)된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음(상법 §415의2)

- 이사회 구성 및 이사회내 위원회에 대해서는 지배구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이고 운용자산 20조원 미만의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예외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 자산규모가 상대적으로 영세한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의 경우 동 예외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에 유의

11. 상근감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금융회사는 상근감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함(지배구조법 §19⑧ 및 동법 시행령 §16③)

- 자산규모가 상대적으로 영세한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상근감사를 필수적으로 두지 않을 수도 있음

12.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최소 몇 명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지?

- 기본적으로 상근 임·직원인 투자운용인력을 3명 이상 갖추야 함 (자본시장법 §249의3②3. 및 동법 시행령 §271의2④1., 금융투자업 규정 §7-41의2 및 [별표 2])
 - 한편,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 마.에 따른 3명 이상의 '증권운용 전문인력' 또는 '부동산운용전문인력'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을 갖추야 하는데,
 - 이 중 1인 이상은 '증권운용전문인력' 또는 '부동산운용전문인력' 이어야 함

-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요건상 3인 이상의 투자운용전문인력을 갖추야 하는데, 이 중 최소 1인 이상은 '증권운용전문인력' 또는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이어야 하므로
 - 3인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만을 갖췄을 경우에는 등록요건을 미충족할 수 있음에 유의

13. 사무공간을 마련할 때 특별히 고려할 사항이 있는지?

- 이해상충부서(고유재산 운용부서 및 집합투자재산 운용부서 등) 간 별도 업무공간을 갖추는 등 정보차단벽(Chinese Wall)이 설치되어야 함
 - 또한, 내부기관 및 감독기관 등이 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 장애가 없어야 함(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 2.)

-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요건 중 물적설비에 대해서는 인원 대비 충분한 업무공간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 이해상충부서간 별도 업무공간 등 정보차단벽을 갖추고 내부기관 또는 감독기관 등이 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애가 없어야 함에 유의

14. 물적설비에 대한 위탁(아웃소싱)이 가능한지?

- 전산설비·통신수단 및 펀드회계시스템·펀드기준가가격산정시스템*은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것은 인정
 - *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할 경우,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적설비 및 전문인력 구비 필요
 - 또한, 위탁여부와 관계없이 전산 전담인력은 채용이 불필요하며 전산 유지보수와 관련해서도 외부 위탁 허용
 - 다만, 부서간 정보차단벽(녹취설비, 메신저기록 설비 등)은 외부 위탁이 불가하므로 이를 직접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

<위탁 가능한 물적설비 세부 현황>

구분	세부 항목	위탁 여부
전산설비 및 통신수단	① 주전산기, DB서버, 저장장치, 단말기, 전용회선	가능
	② 침입탐지 및 침입방지 시스템, 방화벽 구축 여부	가능
	③ 전산실 출입 통제시스템 구축 여부	가능
	④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백업장치 구축 등	가능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	① 이해상충 부서간 정보차단벽 설치	불가
	② 충분한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 확보 여부	불가
	③ 감독기관 등의 감독·검사에 필요한 업무공간	불가
보안설비 및 보완설비	① 보안 설비의 확보 여부	가능
	② 파업 등 불시사태 대비 비상계획 마련 여부	불가
	③ 정전 등 재해발생에 대비한 비상복구시스템 구축	가능
	④ 비상사태 발생시 시현가능한 비상계획 마련 여부	불가

※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 2. 물적설비

15.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위한 심사대상 대주주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 관련 심사대상 대주주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자본시장법 §12⑥, §249의3⑤, 및 동법 시행령 §16⑦, 지배구조법 §2 및 동법 시행령 §3, §4 등)

○ 최대주주등

- 최대주주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 주주 상호간 특수관계인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복수의 최대주주(공동 최대주주) 사례 발생 가능

(예시) 형이 50%, 동생이 10% 보유 → 형과 동생 모두 최대주주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지배구조법 시행령 §3)인 주주

-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동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사실상 지배자 포함) 및 대표자

○ 주요주주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

※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포함

- 임원(상법 §401의2 업무집행지시자 등 포함)인 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을 소유한 자

□ 등록시 심사대상 대주주의 범위는 관계법령 정의(지배구조법 §2)상 대주주(최대주주, 주요주주)보다 확대된다는 점에 유의

○ 아울러 최대주주는 본인 뿐만 아니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하여 판단하며, 복수의 최대주주(공동 최대주주)가 있을 수도 있음에 유의

16.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위한 대주주의 주요 요건은?

-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어야 함 (자본시장법 §249의3②5.)
 - 구체적으로는 대주주 유형*별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별표 2] 및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3]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만 함
 - * 금융기관, 내국법인, 내국인(개인), 외국법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

- **심사대상 대주주의 유형 등에 따라 적용되는 심사요건이 관계 법규에 차별화되어 이미 정해져있고 동 법규상 요건에 대한 충족 여부를 심사하게 되는 것이므로, 신청 준비단계에서 사전에 면밀히 점검해보는 것이 바람직**
 - 한편,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시 심사대상 대주주의 요건은 집합투자업(공모) 인가시 대주주의 요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음

17. 외국인(개인)이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에 출자하여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가 될 수 있는지?

- 자본시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금융회사, 내국법인, 내국인(개인), 외국법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만을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음

-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외국인(개인)의 경우 제약이 있음에 유의**

18. 대주주가 차입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활용하여 일반사모 집합투자업자인 금융회사를 설립해도 되는지?

-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의 출자금은 차입하여 조성된 자금이 아니어야 하며, 등록신청 시 등록신청인 및 심사대상 대주주가 자금출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자본시장법 §249의3②5., 동법 시행령 §271의2⑤?[별표 2], 금투업규정 §7-41의2②?[별표 3])
 - **대주주가 개인인 경우** : 출자자금 중 객관적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에 따라 확인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마련된 자금이어야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적법한 납세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상속재산 또는 수증재산 처분자금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득재원
 -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조성한 자금으로서 그 합계액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차입에 따라 조성한 자금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어야 함
 - 유상증자
 - 1년내의 고정자산 매각
 - 내부유보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 신청인이 객관적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출자자금의 출처(차입에 따라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가 인정될 수 있는 수준으로 충분히 소명되어야 함에 유의

19.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 통제장치에 관한 서류 등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와 투자자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추고 있어야 함
-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등을 참고
 -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 (자산운용)」 등을 참조하는 것도 권장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관련 자료를 참조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음

20. 일반사모모집합투자업자로 등록된 경우 사모펀드에 고유 재산을 투자하거나 펀드매니저의 투자가 가능한지?

- 자기운용펀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폐지('14.12월)됨에 따라 제한 없이 가능

종전의 가이드라인이 폐지되어 현재 아무런 제한이 없음

IX. 유권해석

1. 최대주주 개념 명확화

-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합하여 가장 많은 경우 본인이 최대주주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본인과 복수의 특수관계인들 중 최다보유자 1인만을 최대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수를 합산한 결과 총 주식수가 동일한 자가 여럿인 경우 모두 최대주주에 해당함

- 관계법령상 최대주주를 본인 및 그와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수를 합산한 결과 총 주식수가 동일한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모두 최대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2. 최대주주의 판단 관련

- 최대주주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상호주 규정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도 포함하여 산정하는지 여부

- '최대주주'란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을 의미하며,
 - 최대주주 판단시 그 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상법 제369조제3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의 수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짐

3. 일반법인의 사모펀드 결성 가능 여부 등 관련

- 자산운용사가 아닌 일반법인도 사모펀드를 결성하여 자금 모집이 가능한지 여부
 - 불가능 하다면, 한국법인이 미국법인의 기 결선된 사모펀드를 한국에서 판매(자금모집 영업)할 수 있는지 여부
 - 미국 자산운용사의 사모펀드를 국내 자산운용사에 위탁 계약하여 간접 판매를 할 수 있는지

- 펀드를 설정하여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에 해당(자본시장법 제6조제4항)되며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함(자본시장법 제12조)
 - 외국 집합투자업자는 외국 펀드를 국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며 (자본시장법 제280조제1항)
 - 이 경우, 해당 외국 펀드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등록 요건(외국 집합투자업자 적격요건, 외국 집합투자 증권 판매적격 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함

4. 일반사모집합 투자업 본부의 투자일임·자문업 수행 가능여부

- 회사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수행할 독립 본부를 만들면서, 해당 본부(부서)에서 투자자들의 운용선호도가 높은 투자일임·자문업도 함께 수행할 예정
 - 현재 회사의 투자일임업 수행은 랩운용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랩운용부서는 신탁업 수행부서와 같은 본부(고객자산운용본부)에 소속되어 있음
 - 이처럼 현재 타 본부에서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이와 별도로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수행하는 부서가 속한 본부에서도 투자일임·자문업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수행하는 본부에서 투자자문·일임업을 수행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영위하는 금융투자업 간에 갖추어야 할 정보교류차단장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자본시장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 이에 따르면 질의한 집합투자업/투자자문·일임업 사이 및 신탁업/집합투자업 사이에는 정보교류차단장치 설치의무가 배제되어 있음

5.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 해당 여부 관련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협동조합에서 불특정조합원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그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조합원들에게 배분하는 것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유사수신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협동조합이 전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자본시장법 제6조제5항의 집합투자 개념에 부합하는 협동조합의 경우에만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임

- 다만, 동법시행령 제6조제4항에서 집합투자업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으므로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함

□ 영위하려는 업무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함

6. 외국펀드 운용 관련 자본시장법상 인가대상 여부

□ 역외펀드 운용관련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가 필요 여부

□ 내국인이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서 설정, 설립된 외국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12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의 인가가 요구되지 않음

7. 정보교류차단 관련

- 당사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로서 부동산투자신탁(이하 '펀드')을 설정하여, 펀드재산으로 부동산투자목적회사(이하 '피투자SPC') 발행지분 100%에 투자하고, 피투자SPC의 관리를 위해 피투자SPC에 당사 임·직원의 대표이사 겸직을 고려 중임
- 투자구조가 자본시장법 제45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한 겸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동산투자신탁을 부동산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의 임직원이 피투자 부동산투자목적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규제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

◆ 등록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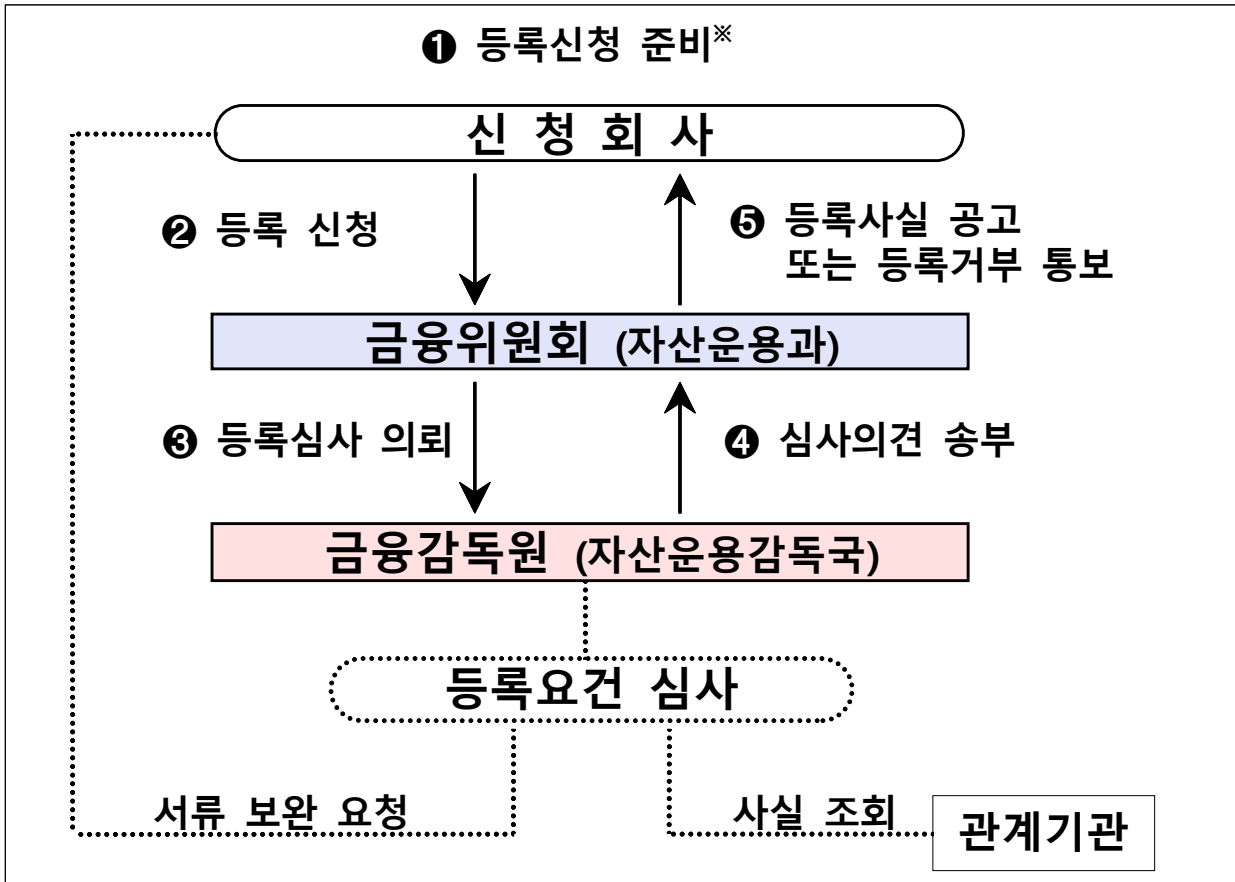
3-(2)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신 청 회 사	0000	신 청 일	20◇◇. 9. △△.
처 리 부 서	자산운용감독국 자산운용인하기팀	완 료 일	20◇◇. 10. ▽▽.
신 청 내 용	<input type="checkbox"/>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49조의3에 따라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회사는 ‘◇◇.7월 설립된 신설법인(자본금 31억원)으로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에 따른 적격투자자를 대상으로 동법 제229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신청 		
심 사 내 용	<input type="checkbox"/> 신청회사가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사 및 외부기관 사실조회 등을 통해 자본시장법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등의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형태)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인지 여부를 확인 ○ (자기자본) 재무제표 등을 통해 신청인의 자기자본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별표 3의 최저자기자본(신청회사의 경우 10억원)을 충족하는지 심사 ○ (전문인력)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 확인서 및 전문인력 자격시험 합격증 등을 통해 등록신청 업무 영위에 필요한 전문인력 상근여부 심사(신청인의 경우 투자운용인력 3인 이상의 전문인력 상근 필요) ○ (임원·준법감시인)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 또는 제재 사실 등을 확인해 지배구조법 제5조에서 정하는 임원 결격사유가 있는지 심사하고, 준법감시인에 대한 제재 사실 등을 확인해 지배구조법 제26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심사 ○ (물적설비) 업무관련 전산설비, 충분한 업무공간·사무장비, 물적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보안설비, 정전·화재 등 사고시 업무연속성 유지를 위한 보완설비 마련 여부 등을 심사 ○ (대주주) 심사대상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객관적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통해 출자금 내역 확인),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형사처벌 및 부실금융기관 대주주 여부 등을 확인)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 ○ (건전성·사회적신용) 신청회사가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췄는지와 금융관련법령 위반사실이 없는 등 건전한 사회적 신용을 갖췄는지 심사 ○ (이해상충방지체계)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파악·평가하여 이해상충 발생을 방지하기에 적절한 내부통제기준 및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적절한 체계를 갖추었는지 확인 		

3. 금융투자

(3) 증권사의 일반사모집합투자업 겸업 등록

1. 증권사의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절차 흐름도



※ 금융투자업 등록 신청 준비시 금감원의 「인허가 사전 상담창구」 이용 가능

<인허가 사전 상담창구 운영 개요>

- (상담내용) 인허가 신청전 서류 준비단계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심사요건·절차, 인허가 매뉴얼 사항, 신청서 준비사항 등 객관적 사항 상담
- (상담방식) 유선, 대면 등 신청인이 희망하는 방식
- (신청전화) 02-3145-8007 (감독총괄국 감독총괄팀)

※ 사전상담은 필수 선행절차가 아니며, 신청인은 사전 상담없이 심사부서로 직접 연락가능

II. 세부 등록절차

① 등록신청 준비

- 신청회사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준비

②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 [신청회사 → 금융위]

- 등록요건을 갖추고 서류작업이 완료되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공문과 함께 접수하며,
- 원본 1부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에, 사본 1부는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자산운용인허가팀)에 제출

③ 금융감독원에 등록심사 의뢰 [금융위 → 금감원]

- 신청을 접수한 금융위원회는 신청회사의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과 관련한 요건충족 등에 대한 심사를 금융감독원에 의뢰

④ 등록심사 및 심사의견 송부 [금감원 → 금융위]

- 금융감독원은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필요시 신청회사에 등록신청 내용의 보완을 요청, 심사가 종결되면 심사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송부

⑤ 등록사실 공고 또는 등록거부 통보 [금융위 → 신청회사]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심사의견을 토대로 등록여부를 판단하며 등록 시 해당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
-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의 사유발생 시에는 등록거부를 신청회사에 서면으로 통보

Ⅲ. 증권사의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요건(요약)

요건	개요	근거법규		
		법1)	시행령2)	규정3)
법인격 요건	-상법상 주식회사 등	§249의3② 1호	§271의2 ①, ②	
자기자본 요건	-최저 자기자본	§249의3② 2호	§271의2③ <별표3>	
인력 요건	-임원결격사유	§249의3② 4호		§7-41의2① <별표2> 1.
	-전문인력	§249의3② 3호	§271의2④ 1호	§7-41의2① <별표2> 1.
물적 요건	-전산설비·통신수단, 업무공간·사무장비, 보안설비·보완설비 등	§249의3② 3호	§271의2④ 2호	§7-41의2① <별표2>2.
대주주 요건	-대주주 적격성	§249의3② 5호	§271의2⑤ <별표2>	§7-41의2② <별표3>
건전경영 ·사회적 신용요건	-신청인의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249의3② 6호	§271의2 ⑦, ⑧	
이해상충 방지체계 요건	-내부통제기준 -정보교류차단장치 등	§249의3② 7호, §44, §45	§271의2⑨, §50, §51	§7-41의2① <별표2>4., §46, §47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 3)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

IV. 단계별 세부내역

1. 등록신청	○ 금융위,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신청서 접수	
↓		
2. 검토 의뢰	○ 금융위, 금감원에 심사 검토 의뢰	
↓		
3. 금감원 심사	심사요건	확인서류
법인격 요건	○ 상법상 주식회사 등	- 법인 등기부등본 등
자기자본 요건	○ 최저자기자본	- 법인 등기부등본, 재무제표, 주금납입증명서 등
인력 요건 (전문인력·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249조의3제2항제3호, 영 제271조의2 제4항제1호, 규정 <별표2>에서 정하는 인력요건에 해당할 것 ○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규정 <별표2>의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재직증명서, 자격증, 시험합격증, 교육수료증, 확인서 등 - 신원조회 관련부서(처) 사실조회 회보서 등 - (필요시)실지조사
물적 요건	○ 법 제249조의3제2항제3호, 영 제271조의2 제4항제2호, 규정 <별표2>에서 정하는 전산설비·통신수단, 업무공간·사무장비, 보안설비, 보완설비 등을 구비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계약서 및 증빙자료 등 - (필요시)실지조사
대주주 요건	○ 영 <별표2> 및 규정 <별표3>의 요건을 갖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원조회 및 관련부서(처) 사실조회 회보서 등 - 기타 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 등
건전경영 및 사회적 신용 요건	○ 신청인이 법 제249조의3제2항제6호, 영 제271조의2제7항, 제8항에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건전성 기준, 관련부서(처) 사실조회 회보서, 기타 사실확인서 등
이해상충 방지체계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249조의3제2항제7호, 영 제271조의2 제9항, 규정 <별표2>에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할 것 -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 적절한 정보교류차단장치를 갖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상 내부통제기준 등 - (필요시)실지조사
↓		
4 심사결과 통보	○ 금감원, 금융위에 심사·확인 결과 통보	
↓		
5 등록여부 결정	○ 금융위, 등록 여부 결정 및 통보	

V. 등록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구비요령

1. 상호

상 호	
국문	영문
① △△△△△△(주)	①

- ① 등록신청일 현재 신청회사의 국문 및 영문 상호를 기재

첨부서류

- ① 정관 : 회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증 받은 정관
- ② 법인등기부등본 : 말소사항을 포함한 법인등기부등본(원본)
- ③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이사회 의사록 등 : 설립 또는 등록 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공증받은 서류
- ④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불가)

※ 모든 첨부서류는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하여야 하며,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서류 및 기재내용이 누락되어서는 안됩니다.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

본점 소재지 (전화 및 팩스번호 포함)
①

- ① 예시) (0123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00 (여의도동, XX빌딩)
전화번호 : 02-111-1111 팩스번호 : 02-111-1112

첨부서류

- ①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3. 대표자 및 임원 (준법감시인 포함)

임원수 : 명 (상근: 명, 비상근: 명)

직위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소유주식수 (비율)	주요 경력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전문인력 여부	선임 일자	임원자격 적합여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									
⋮									

- ① 대표이사,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감사 등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직위를 기재하며 **등기임원에 대해서만 기재**(준법감시인 포함)
- ② 외국인의 경우 국적, 여권번호, 생년월일을 기재
- ③ 임원이면서 출자자인 경우 그 **소유주식수 및 출자비율**을 기재
- ④ 대표경력만을 간략히 기재하고, 자세한 내용은 예시의 양식을 참고하여 별도로 작성하되 신청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간의 경력을** 자세히 기재(경력단절기간도 기재)

(예시)

성명	기 간	회사명	부서명	직위
홍길동	2016.12.21. ~ 현재	AA주식회사	주식운용부	차장
	2015.11. 1. ~ 2016.12.20.	(경력단절기간)	(미취업 상태)	
	2009. 1. 1. ~ 2015.10.31.	BB주식회사	채권운용팀	과장
진달래	2011. 2. 1. ~ 현재	BB주식회사	임원실	부사장

- ⑤ 상근임원인 경우 “상근”, 비상근임원인 경우 “비상근”으로 기재
- ⑥ 임원이면서 전문인력에 해당되는 경우 “Y”, 전문인력이 아닌 경우 “N”으로 기재
- ⑦ 해당임원의 선임일자 기재
- ⑧ 지배구조법 제5조제1항각호의 임원자격에 적합한 경우 “Y”로 기재
- 단, 신청회사가 신청일 현재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자(투자자문·일임업자)이면서, 해당 임원이 '16.7.31 이전 선임됐을 경우, 자본시장법 제24조('16.7.31 삭제 이전 조문)의 임원자격 적용

첨부서류

- ① 이력서
: 인감도장(개인)으로 날인한 이력서
- ②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 신청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간 前직장의 경력증명서(원본) 및 現직장의 재직증명서(원본)
* 5년 기간내 경력단절기간(1개월 이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의 증명서(소속기관 확인서 포함) 미제출 사유(징계·처벌사실 등 포함)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확인한 서류 제출
** 준법감시인의 경우 지배구조법 제26조제1항각호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
- ③ 신원조회 의뢰서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본적지) 등을 기재한 신원조회 의뢰서 (붙임1 참조)
- ④ 소속기관 확인서
: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간 소속기관의 처벌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에 제재사실 등을 표기할 경우 제외)
- ⑤ 결격사유없음 확인서
: 임원 요건 확인서에 인감도장(개인)을 날인하여 제출하되, 회사 형태, 임원 선임일자에 따라 양식을 구분하여 제출 (단, 붙임 2-4 양식은 법인인감 날인)

구분	임원선임일자	제출양식	확인자	확인내용
신청일 현재 금융회사	'16.7.31 이전	붙임 2-1	임원 본인	자본시장법 제24조('16.7.31 이전 조문)
	'16.8.1 이후	붙임 2-2	임원 본인	지배구조법 제5조제1항각호
		붙임 2-3	대표이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3호
신설법인	-	붙임 2-2	임원 본인	지배구조법 제5조제1항각호
		붙임 2-3	대표이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3호

* 준법감시인이 지배구조법에 따른 요건(지배구조법 제26조제1항제1호)을 충족함을 확인한 서류, 인감도장(개인)으로 날인(붙임 2-4 참조)

- ⑥ 신용정보조회서(원본)
: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발급(방문·우편)받은 '신용정보조회서' 제출(최근 5년간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변동분 조회내역 포함)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여권 사본 및 신용정보 열람(발급)신청서(본인 자필서명 필요)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신용정보조회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

- ⑦ 개인 인감증명서(원본)
- ⑧ 집합투자재산 평가 및 운용 담당임원 현황 및 겸직금지 관련 확인서 (붙임 3-5 및 3-6 참조)
- ⑨ 집합투자재산 평가 및 운용 담당임원의 수행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금감원 보고자료, 인사발령 또는 직무분장 관련 문서 등)

4.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첨부서류

- ① 등록업무단위의 종류와 업무영위방법을 기재한 서류 (붙임4 참조)

5. 재무에 관한 사항

(단위 : 억원)

구분	FY201X	FY201◇	FY201△	구분	FY201X	FY201◇	FY201△
자산총계				영업수익			
부채총계				영업이익			
자본총계				당기순이익			

첨부서류

- ①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감사보고서)
- ② 설립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의 경우,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감사보고서)
- ③ 설립 후 사업연도가 지나지 않은 법인은 설립일부터 신청일까지의 재무제표로 같음

※ 감사보고서가 아닌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 독립성을 갖춘 회계법인(ex.회사의 기장 대리 업체 등은 불가)에서 재무상태를 확인 받은 후 증빙서류(ex.재무제표확인원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신청시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중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에 첨부된 경우 포함)를 통해 이미 공시된 자료의 경우 동 시스템에 공시된 감사보고서 자료로 제출을 같음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설비에 관한 사항

6-1. 전문인력의 명단

(기준일: 년 월 일 현재)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문자격내용	증빙서류명칭 (등록번호/발급기관)	전문인력 관련 주요 경력
1			①		②
2					
⋮					

① 증권운용전문인력, 부동산운용전문인력,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 등을 기재하고, 괄호안에 구체적 적용법조를 기재

- 예) ■ 증권(별표2 1. 인력에 관한 요건, 마. 1. 가. 8))
 ■ 부동산(별표2 1. 인력에 관한 요건, 마. 2. 다. 2))
 ■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별표2 1. 인력에 관한 요건, 마. 2의2. 1.) / 1. 가, 1))

※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 1.인력에 관한 요건 중 “마” 및 별표13 참고

② 경력이 요구되는 전문자격의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는 주요 경력을 간략히 기재

첨부서류

① 전문인력의 자격확인서류

: 금융투자전문인력등록증(현재 등록되어 있는 경우) 또는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 확인서(과거 등록된 이력이 있는 경우), 시험합격증, 교육수료증 등 자격확인서(붙임 5 참조)

※ 등록증, 시험합격증이 없는 경우 협회 등록 시 필요한 운용경력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로 같음

②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 현직장에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전문자격 인정을 위하여 운용경력 또는 재직경력이 필요한 전문인력의 경우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전문인력 자격시험 합격 후 등록교육을 면제받기 위하여 필요한 재직·경력을 증명하는 경우도 포함)

③ 상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의료보험증 사본 등
(기관장 직인이 표시되는 형태로 출력, 붙임 6 참조)

④ 그 밖의 운용전문인력에 해당함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⑤ 운용전문인력의 향후 3년간 운용계획서

- 신탁업과 집합투자업 부서간은 별도의 조직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전문인력 중복도 불인정
- 한편, 집합투자업 관련 운용전문인력에 대한 유지·충원 계획 및 이해상충 발생가능 부서간 전문인력 교류방지를 위한 대책 (ex. 일정기간, 직전·후 전환배치 제한 등)에 대한 확인(대표이사 날인) 내용 포함

6-2.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첨부서류

① 사무공간 배치현황(부서명, 주출입문 등 표시, 붙임7 참조)

② 사무실 관련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③ 전산설비 내역, 보안설비 및 보완설비 등 현황(전산설비 흐름도 포함)

④ 전산설비, 보안설비·보완설비 등 구입 증빙

- 전산설비 흐름도 포함
- 운용부서 전화녹취 현황
- 문서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현황
- 임직원 매매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현황
- 이해상충방지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현황
(선행매매, 쌍방대리, 고유재산거래, 과당매매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전산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관련)

⑤ 비상계획(BCP, Business Contingency Plan) 등

⑥ 일반사무관리회사 계약서

7. 대주주나 외국금융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구분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비고
1	홍길동	000,000	00.0	최대주주
2	(주)대한민국	00,000	00.0	주요주주
⋮				

- ① 등록신청일 현재 대주주 또는 외국금융투자업자의 성명(명칭), 소유주식수 및 비율을 기재

첨부서류

- ① 등록신청일 현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 및 비율을 기재한 서류 1부
- ② 결격사유 없음 확인서 : 대주주 결격요건을 나열하고 각 항목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을 본인 스스로 확인한 서류(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붙임8 참조**)
- ③ 신용정보조회서(원본)
: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발급(방문 · 우편)받은 ‘신용정보조회서’ (최근 5년간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변동분 조회내역 포함). 법인인 경우 ‘기업신용정보조회서’ 제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여권 사본 및 신용정보 열람(발급)신청서(본인 자필서명 필요)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신용정보조회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
- ④ 그 밖의 대주주 요건(출자자금 소명 등)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법인이 최대주주인 경우 추가제출

- ① 최대주주인 법인의 주주명부 : 최대주주인 법인의 인감도장으로 날인한 주주명부(기준일 명시)
- 최대주주인 법인의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 ② 최대주주 개황자료 : 주소, 대표자, 연혁, 사업내용 등을 기재한 자료 등
- ③ 결격사유 없음 확인서 :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사실상 지배자가 스스로 확인한 서류 (붙임8 참조)

<대주주 범위>

구분	세부사항
최대주주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 ※주주 상호간 특수관계인에 해당 시 복수의 최대주주 사례 발생 가능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 (사실상 지배자 포함)
최대주주의 대표자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주주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참고
주요주주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 또는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임원 등

8.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첨부서류

- ①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 통제장치에 관한 서류 (집합투자업 겸업 관련 내용 포함)
- ② 이해상충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 이해상충 방지체계 내용 작성
- ③ 이해상충행위가 발행하지 않도록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 대표이사가 확인한 서류 (붙임9 참조)
- ④ 집합투자업 관련 별도의 준법감시부서(인력) 구축 사항 (조직관련 내부규정, 조직도, 좌석배치도, 인력구성 내역 등)

※ 전담 준법감시인력을 구축한 경우 전담인력에 관한 사항 제출
(이력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향후 3년간 인력 운용계획 등)

⑤ 프라임브로커 계약서 사본(계약을 한 경우에만 제출)

⑥ 그 밖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서류

9. 그 밖의 기재사항

첨부서류

- ① 합작계약서 등 : 외국인과의 합작을 통한 신청시에 한함
- ② 위임장 등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 ③ 신청인이 자본시장법 제249조의3제2항제6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 1부 (신청인 본인의 확인서, 붙임10 참조)
- ④ 신청일 현재 최근 사업년도말(또는 최근 분기말) 기준 **영업용 순자본 비율 현황**(회계법인 확인)
- ⑤ (가칭)운용성과보고서 샘플
- ⑥ 신용정보조회서(원본) :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발급(방문·우편) 받은 '기업신용정보조회서'(최근 3년간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변동분 조회내역 포함)
- ⑦ 그 밖의 타당성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 붙임1 > 등록신청서 양식

일반사모 집합투자업 등록신청서(금융투자업규정 <별지 제2의2호>)

1. 상 호

상 호	
국문	영문
(가칭)	(가칭)

■ 첨부서류

- 1-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
- 1-2.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부
- 1-3.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등 설립 또는 인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

본점 소재지(전화 및 팩스번호 포함)

■ 첨부서류

- 2-1.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1부

3. 대표자 및 임원(준법감시인 포함)

임원수 : 명(상근: 명, 비상근: 명)

직위	성명	주민등록 번호	소유주식수 (비율)	주요 경력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전문인력 여부	임원자격 적합여부

성명	기 간	회사명	부서명	직위

기재상의 주의

1. 임원자격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

■ 첨부서류

- 3-1. 대표자 및 임원(준법감시인 포함)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각 1부
- 3-2. 임원자격에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4.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 첨부서류

4-1. 등록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영위방법을 기재한 서류 각 1부

5. 재무에 관한 사항

(단위 : 억원)

구분	FY201△	FY201×	FY201◇	구분	FY201△	FY201×	FY201◇
자산총계				영업수익			
부채총계				영업이익			
자본총계				당기순이익			

■ 첨부서류

5-1.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설립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5-1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기준일: 년 월 일 현재)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문자격내용	증빙서류명칭 (등록번호/발급기관)	주요 경력

- 전문인력의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요경력, 전문자격내용 등)
- 물적설비 현황(사무공간 배치현황, 전산설비 내역, 보안설비 및 보완설비 등)

■ 첨부서류

6-1.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상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및 자격확인서류 각 1부

6-2. 사무공간, 전산설비 등의 임차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7.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구분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비고

■ 첨부서류

7-1. 등록신청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 및 비율을 기재한 서류 1부

7-2.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249조의3제2항제5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8.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 첨부서류

- 8-1.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서류 1부
- 8-2. 이해상충행위가 발행하지 않도록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확인 서류 1부
- 8-3. 그 밖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서류

9. 그 밖의 기재사항

■ 첨부서류

- 9-1. 합작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외국인과의 합작을 통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사본 1부
- 9-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9-3.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붙임2 > 신원조회 의뢰서 양식

신원조회 의뢰서

조회대상자

성명 (한자)	주민(법인) 등록번호 ¹	등록기준지 ²	조회기관 ³

[기재시 유의사항]

1.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등록번호 기재
2. 등록기준지(舊본적지)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현 등록기준지를 기재
3. 등록기준지 소재 조회기관 및 담당자의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기재

조회내용

- 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붙임3-1 > 임원 확인서 양식

임원 결격사유없음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해당사항없음 확인서명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금융관련법령*(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 포함)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면직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재임(재직) 중이었더라면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직)한 임(직)원으로서 그 통보된 날부터 5년(통보된 날부터 5년이 퇴임(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직)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해임요구, 직무정지 또는 문책경고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각각 5년, 4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면직, 정직 또는 감봉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각각 5년, 4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직무정지나 문책경고 조치를 받은 직원으로서 법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최근 5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이었거나 불건전한 금융거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의 대주주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실이 있는자	
최근 5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 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이 있는 자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 한국은행법, 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외국환거래법,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주택법, 예금자보호법,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담보부사채신탁법, 금융지주회사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전자금융거래법,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공사채등록법, 공인회계사법,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산업발전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에관한법률 제24조, 동법시행령 제27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2제1항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0. 00. 00.

성 명 : (인)

< 붙임3-2 > 임원 확인서 양식

임원 결격사유없음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해당사항없음 확인서명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지배구조법 또는 동법에 따른 금융 관련법령(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 포함)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다만, 해당 조치의 원인에 대해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 한정)로서 해당 조치일로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그 소속기관 또는 그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는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 포함) 또는 그에 상응 하는 조치를 받은 자로서 다음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임원(업무집행책임자 제외) -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 포함), 직무정지(직무정지 요구 포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 문책경고일로부터 각각 5년, 4년, 3년 · 직원(업무집행책임자 포함) - 면직, 정직, 감봉 요구일로부터 각각 5년, 4년, 3년	
임원으로 재직할 금융투자업자와 여신거래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자	
최근 5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이었거나 불건전한 금융거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의 대주주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실이 있는 자	
최근 5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 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이 있는 자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

본인은 상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7-41조의2제1항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0. 00. 00.

성 명 : (인)

< 붙임3-3 > 임원요건 충족 확인서(대표이사 법인인감 확인)

임원요건 충족 확인서

당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 중 당사와 여신거래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과 특수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당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자는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이사 ○ ○ ○ (인)

< 붙임3-4 > 준법감시인 확인서

준법감시인 결격사유없음 확인서

본인은 최근 5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및 금융관계법령(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본인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 또는 금융관계법령에서 조치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준법감시인 ○ ○ ○ (인)

< 붙임3-5 > 평가담당 임원 겸직 금지 확인서

겸직 금지 확인서

아래 ◇◇◇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0조 내지 제51조에서 정하는 고유재산운용업무,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일임업, 기업금융등의 정보교류 차단 대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의 ◇◇로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집합투자재산 평가 담당임원의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7XXXXXX-XXXXXXX

직 위: XXX(집합투자재산 평가 담당임원)

상 근 여 부: 상근

선 임 일: 202X.X.X.

202X.X.X.

X X X 증권(주)

X X 이사 ◇ ◇ ◇

X X X 증권(주)

대표이사 ◇ ◇ ◇

< 붙임3-6 > 운용담당 임원 겸직 금지 확인서

겸직 금지 확인서

아래 ◇◇◇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0조 내지 제 51조에서 정하는 고유재산운용업무,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일임업, 기업금융등의 정보교류 차단 대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의 ◇◇◇로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집합투자재산 운용 담당임원의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7XXXXXX-XXXXXXX

직 위: XXX(집합투자재산 운용 담당임원)

상 근 여 부: 상근

선 임 일: 202X.X.X.

202X.X.X.

XXX증권(주)

XXX이사 ◇◇◇

XXX증권(주)

대표이사 ◇◇◇

< 붙임4 > 업무영위방법 작성요령

1. 신청 개요

회사명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문 : ◆ 영문 : 		
소재지			
	인가(등록)업무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현재 영위중인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추가하고자 하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등록신청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자기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최근 사업년도말 기준		
임원구성	직위	성명	주요이력
최대주주			
주주구성 ¹⁾	주주명	지분율	구분 ²⁾

- 주1) 대주주요건 심사대상 및 5% 이상은 별도 구분하여 표시하고 나머지는 통합하여 기타로 표시
 2) '금융기관', '내국법인', '개인', '외국법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로 구분
 3) 칸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 삽입 또는 삭제하여 적절하게 조정

2. 심사대상 대주주 현황

대주주현황	주주명	구분 ¹⁾	의결권 있는 주식수	비율(%)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최대주주와의 관계 예) 배우자, 자녀 등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사실상 지배자				
최대주주의 대표자				
주요주주				

주 1) '금융기관', '내국법인', '개인', '외국법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 등으로 구분

※ 외국금융투자업자의 지점인 경우 : 외국금융투자업자명칭 기재

※ 필요시 대주주 등 신청인의 지배관계를 나타내는 도표 첨부

3. 자기자본 현황

① 자기자본 (기준일 : 20 .00.00 현재) : _____ 억원

※ 최근 사업연도가 없거나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증자 등의 사유로 자기자본 변동이 있는 경우 신청일 현재 자기자본을 기재

② 최저자기자본 : ① + ② = _____ 억원

※ 최저자기자본은 신청인이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신탁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 자본시장법령 등에서 다른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만 작성

① 기존 인가·등록단위에 대한 유지 자기자본 : _____ 억원

(단위: 억원)

인가(등록)단위	금융투자업 종류	투자자 유형	최저 자기자본	유지 자기자본*
①	②	③		
합 계				

* 유지자기자본 : 인가(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70%

- ① 인가(등록) 단위 : 5-1-1 등 해당하는 업무단위를 기재
- ② 금융투자업의 종류 : 투자자문·일임업 등 해당사항 기재
- ③ 투자자의 유형 :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또는 전문투자자 등 기재

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에 대한 최저자기자본 : 10억원

<자기자본 현황 작성 예시>

① 자기자본(기준일 : 20XX년 X월 XX일 현재) : 1조 5,000억원

※ 최근 사업연도가 없거나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증자 등의 사유로 자기자본 변동이 있는 경우 신청일 현재 자기자본을 기재

② 최저자기자본 : (1) + (2) = 1,352.25억원

※ 최저자기자본은 신청인이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신탁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 자본시장법령 등에서 다른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만 작성

(1) 기존 인가·등록단위에 대한 유지 자기자본 : 1,342.25억원

(단위: 억원)

인가(등록)단위	금융투자업 종류	투자자 유형	최저 자기자본	유지 자기자본*
1-1-1	투자매매업 (증권)	일반, 전문	500	350
1-2-1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	일반, 전문	100	70
1-3-1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	일반, 전문	900	630
2-1-1	투자중개업 (증권)	일반, 전문	30	21
2-2-1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일반, 전문	20	14
2-3-1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	일반, 전문	100	70
4-1-1	신탁업	일반, 전문	250	175
5-1-1	투자자문업	일반, 전문	2.5	1.75
6-1-1	투자일임업	일반, 전문	15	10.5
합 계			1,917.5	1,342.25

(2) 일반사모집합투자업(3-14-1) 등록에 대한 최저자기자본 : 10억원

4. 물적 설비 현황

* 등록심사 요건 해당 내용을 표 안에 상세하게 기술 (필요시 테이블 등 작성가능)

** 전산설비 등을 위탁한 경우 이를 감안하여 평가

심사항목	관련 내용
(1) 전산설비 및 통신수단	
① 주전산기, DB서버, 저장장치, 단말기, 전용회선 등 업무관련 전산설비 구축의 적정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업무 영위에 적합한 전산시스템 보유 및 가용성·안정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전산기 - DB서버, 매매관련(주문관리, 결제관리, 원장관리 등) 서버, 통신서버, 웹서버, 보안서버 등 - 저장장치, 단말기 등 기타 주변장치 - 해당업무 영위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등 ■ 내부 네트워크, 전용회선 구축 등 통신시스템 구성
② 침입탐지·침입방지시스템, 방화벽 등 보안체계 구축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성이 검증된 보안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화벽,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이동식 저장장치 통제 프로그램,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탐지 및 백신프로그램 등 ■ 운용부서 전화 녹취 시스템 구축 ■ 자료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LP(Data Loss Protection) 등
③ 정보이용자 확인 및 전산실 출입 통제시스템 구축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이용자 확인 및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전산기 및 각종 서버에 대하여 비인가자의 접속 및 사용 통제방안 구비 - 주요 데이터에 대한 접속(log-in) 기록 유지 등 정보유출대책 마련 ■ 전산실 출입 통제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실 출입 통제(카드키, 비밀번호 이용 등) 및 미승인된 출입자의 방문일지 기록 - 전산실 출입자의 신원확인이 가능하도록 CCTV 배치
④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백업장치 구축 및 백업자료 별도 보관·관리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거래정보 등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백업장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업자료의 소산보관장소 마련 - 기간별 소산보관대책 마련 - 백업과 관련한 외부업체와의 계약 등

(2)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 | | |
|--|--|
| ① 이해상충부서간 별도 업무공간 확보 등 정보차단벽(Chinese Wall) 설치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상충부서간 정보차단벽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상충부서간 별도층, 별도건물 배치 등 업무공간 구분 내역 - 이해상충부서간 출입통제(카드키 등) |
| ② 충분한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 확보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사무공간(총 전용면적 및 1인당 전용면적 기재) 등 충분한 업무공간 및 부서별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기기 확보 |
| ③ 내부기관 및 감독기관 등의 감독·검사 시 법적 장애가 없을 것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적 설비에 대한 소유권의 완전성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스, 임대, 위탁 등 제한적 확보 여부 점검 |

(3) 보안설비 및 보완설비

- | | |
|--|---|
| ①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의 확보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실 보안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PS, 항온항습기, 소화설비, 비상발전기 등 구비 - 전산실 내 CCTV 사각지대 제거 - 장애에 대비한 주요 전산장비 및 통신회선의 이중화 ■ 사무실 및 전산실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미인가자 접근 차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장소 CCTV 설치 및 녹화기록 유지 |
| ② 파업 등 불시사태 대비 비상계획 마련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CP(Business Contingency Plan) 마련 |
| ③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 확보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발생에 대비한 비상복구시스템 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usiness Contingency Plan 마련 - 재해복구(Disaster Recovery) 센터 마련 - 재해복구센터 내 단말기 등 백업체계 구축 |
| ④ 비상사태 발생시 즉시 구현이 가능한 비상계획 마련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usiness Contingency Plan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CP를 포함한 재해복구 훈련 실시 - 재해복구 훈련시 복구테스트 결과 |

5. 이해상충 방지체계 현황

* 등록심사 요건 해당 내용을 적절히 요약하여 핵심적 내용을 표 안에 기술
(필요시 테이블 등 작성가능)

(1) 이해상충의 파악·평가·관리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관련 내용
① 내부통제기준에 반영된 이해상충의 파악·평가·관리 체계가 합리적이고 검증 가능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법감시인이 이해상충의 파악·평가·관리를 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
②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이 적정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상충 고지방법, 거래 제한 및 주의 목록 등 이해상충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방법 및 절차
③ 내부통제기준의 이해상충 관리체계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이 이루어 질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법감시인 등의 상시점검 및 정기점검 등 점검주기와 대상 및 필요한 시스템 구축여부
④ 그 밖에 인가신청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내부통제기준에 반영된 증권사 집합투자업 겸업에 따른 선행매매, 과당매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 상충방지 내용
(2) 정보교류차단	관련 내용
① 정보교류 차단 부서간 정보차단벽 (Chinese Wall)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교류차단 대상 영업 및 계열회사 등과 정보제공, 임직원의 겸직 또는 파견, 사무공간 또는 전산설비의 공동이용 금지 등의 정보차단장치와 관련한 차단대상과 허용사항 등
② 법령 등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정보차단벽간 정보제공(Wall Cross)이 이루어지는 경우 관련 기록이 유지·관리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통제기준에 명시된 정보차단벽 통과 절차 및 준수사항, 준법감시인 확인 사항 등
③ 그 밖에 인가신청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정보차단벽 간 정보교류를 합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업 부서의 전화녹취 장치 구비 현황 및 자료 반출기록 관리 현황 ■ 선행매매, 과당매매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전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현황 등

6. 업무영위 방법

① 조직체계

- 일반사모집합투자업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체계의 직위·성명 등을 기재하며 담당업무를 간단하게 기재한 조직도를 첨부

② 업무영위 방법

- 회사개황, 등록신청 배경, 사업목표, 사업전략, 주된 타겟시장 등을 기재

< 붙임5 >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증 및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 확인서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증

이름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83* * * * * - 1* * * * * *
자격구분	투자자산운용사	등록일자	2012/12/12
등록번호	211xxxx123	소속회사	홍길동 자산운용
업무범위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위 사람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금융투자전문인력임을 확인합니다

2015 년 10 월 20 일

한국금융투자협회



우 150-9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3 / 전문인력관리부

금융투자전문인력/투자권유대행인 등록 확인서

본 확인서의 사람은 별첨과 같이 등록이력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별첨 : 금융투자전문인력 / 투자권유대행인 상세확인표

2017년 00월 00일



인 국 금 용 투 지 협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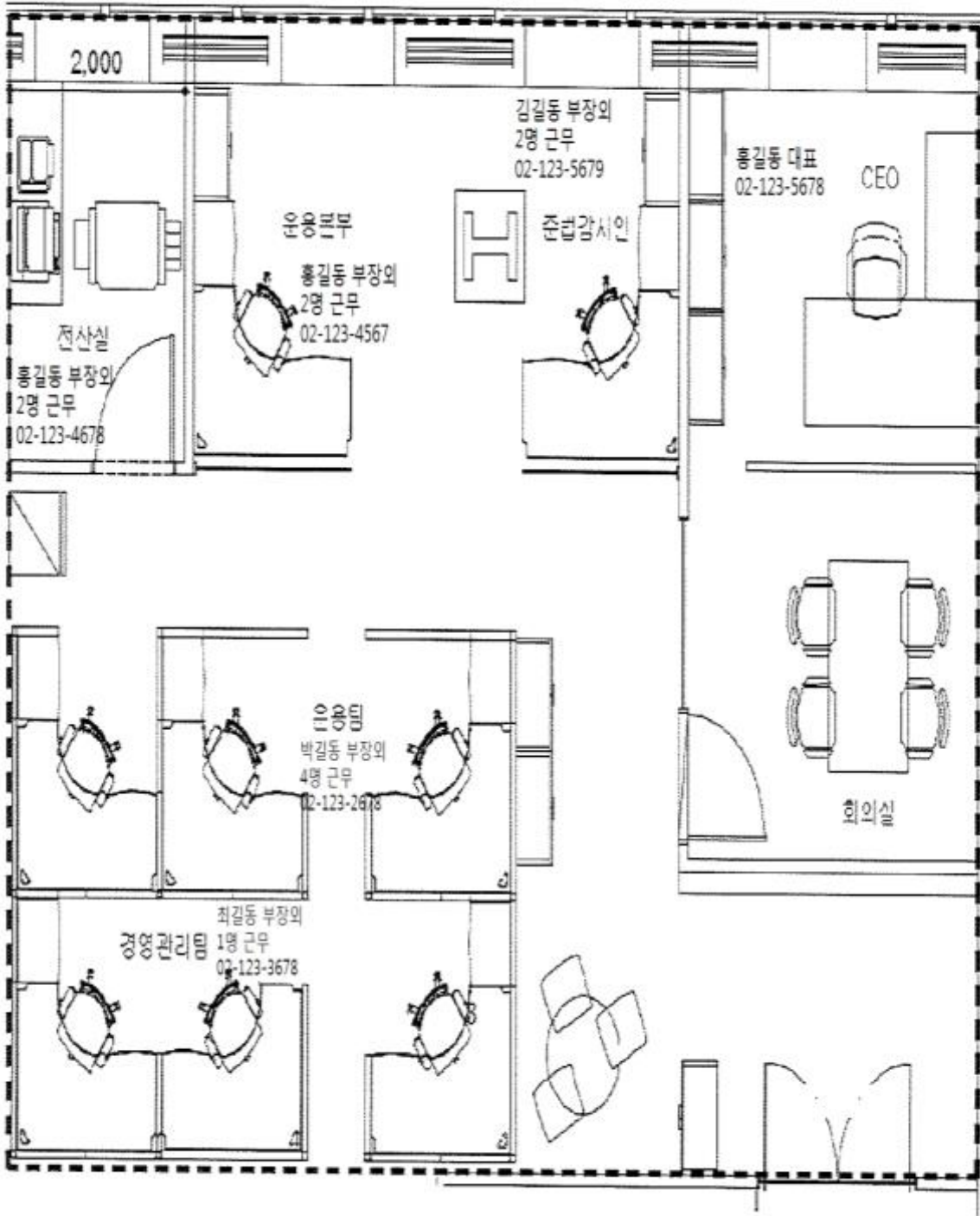
금융투자전문인력 /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사항

성명	주연등록번호	소속회사	등록번호	자격구분	업무영위	등록일	말소일
홍길동	000000-000000	00자산운용 주식회사	211200000	투자자신용용사	금융투자상품	20120001	20151130

< 붙임6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등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발급번호 : JJJ123456789011234			Page : 1/1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는 발급일 현재까지 가입 신고된 가입자 중 발급대상으로 요청한 가입자의 명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발급 관리되고 있습니다. ※ 본 「사업장 가입자명부」는 반드시 국민건강보험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사업장 가입자명부」는 개인정보이므로 외부로 유출되어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법적인 책임은 공단에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장명		홍길동 자산운용 주식회사		사업장관리번호 - 단위사업장기호	
단위사업장명		NONE		12345678901 - 000	
일련 번호	가 입 자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증번호	주민번호	성명		
1	12345678900	83**** - 1*****	홍길동	2014-06-02	
2	12345678901	83**** - 2*****	김길동	2011-08-01	
3	12345678902	83**** - 1*****	박길동	2011-02-07	
발급일 기준 사업장 가입자(상실자) 발급건수 총 3 명					
※ 주민등록번호중 일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특수문자로 대체하였습니다.					
2015.1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붙임7 > 사무공간 배치현황



※ 전산실(설비) 및 CCTV 위치 표시

< 붙임8 > 대주주 확인서 양식

[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대주주 결격사유없음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확인서명
출자자금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조성한 자금으로서 그 합계액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차입에 따라 조성한 자금이 아닌 것으로 인정될 것 (1) 유상증자 (2) 1년내의 고정자산 매각 (3) 내부유보 (4)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3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신청한 금융투자업 등록업무 단위와 동일한 등록업무 단위의 직권 말소를 받은 자이거나, 그 자의 임원 또는 대주주였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지 않을 것	
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49조의3제2항제5호, 동법 시행령 제271조의2 제5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2제2항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0. 00. 00.

(회사명)

(인)

[대주주가 금융기관 이외의 내국법인인 경우]

대주주 결격사유없음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확인서명
출자자금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조성한 자금으로서 그 합계액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차입에 따라 조성한 자금이 아닌 것으로 인정될 것 (1) 유상증자 (2) 1년내의 고정자산 매각 (3) 내부유보 (4)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3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신청한 금융투자업 등록업무 단위와 동일한 등록업무 단위의 직권말소를 받은 자이거나, 그 자의 임원 또는 대주주였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지 않을 것	
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49조의3제2항제5호, 동법시행령 제271조의2제5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2제2항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0. 00. 00.

(회사명) (인)

[대주주가 개인인 경우]

대주주 결격사유없음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확인서명
출자자금 중 객관적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에 따라 확인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마련된 자금일 것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적법한 납세절차를 취득한 상속재산 또는 수증재산 처분자금 (2)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3)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소득재원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3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신청한 금융투자업 등록업무 단위와 동일한 등록업무 단위의 직권 말소를 받은 자이거나, 그 자의 임원 또는 대주주였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직무정지를 받거나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지 않을 것	
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49조의3제2항제5호, 동법시행령 제271조의2제5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2제2항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0. 00. 00.

< 붙임9 > 이해상충방지체계 관련 대표이사 확인서

이해상충방지체계 관련 대표이사 확인서

당사 _____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2항 제7호에 따른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년 월 일

(회사명) 대표이사 ○ ○ ○ (인)

< 붙임10 > 신청인(본인) 확인서 양식

신청인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확인
법 제31조에 따른 경영건전성기준(경영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경영건전성기준을 말한다)을 충족	
최근 3년간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법 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이상의 조치(이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포함)를 받은 후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을 것 1) 업무의 전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3년 2) 업무의 일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2년 3)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49조의3제2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271조의2제7항 및 제8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0. 00. 00

(회사명)

(인)

<첨부>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 등록 사례

3-(3) 증권사의 일반사모집합투자업 겸업 등록

신청회사	OOOO	신청일	20◇◇. 4. △△.
처리부서	자산운용감독국 자산운용인허가팀	완료일	20◇◇. 5. ▽▽.
신청내용	<input type="checkbox"/>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49조의3에 따라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회사는 'XX년 설립된 증권회사(자본금 4천억원)로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에 따른 적격투자자를 대상으로 동법 제229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신청 		
심사내용	<input type="checkbox"/> 신청회사가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사 및 외부기관 사실조회 등을 통해 자본시장법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등의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형태)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인지 여부를 확인 ○ (자기자본) 공시된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신청인의 자기자본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별표 3의 최저자기자본(신청회사의 경우 약 X,XXX억원)을 충족하는지 심사 ○ (전문인력)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 확인서 및 전문인력 자격시험 합격증 등을 통해 등록신청 업무 영위에 필요한 전문인력 상근여부 심사(신청인의 경우 투자운용인력 3인 이상의 전문인력 상근 필요) ○ (임원·준법감시인)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 또는 제재 사실 등을 확인해 지배구조법 제5조에서 정하는 임원 결격사유가 있는지 심사하고, 준법감시인에 대한 제재 사실 등을 확인해 지배구조법 제26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심사 ○ (물적설비) 업무관련 전산설비, 충분한 업무공간·사무장비, 물적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보안설비, 정전·화재 등 사고시 업무연속성 유지를 위한 보완설비 마련 여부 등을 심사 ○ (대주주) 심사대상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 ○ (건전성·사회적신용) 신청회사가 경영건전성 등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췄는지와 금융관련법령 위반 또는 제재 사실이 없는 등 건전한 사회적 신용을 갖췄는지 심사 ○ (이해상충방지체계)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파악·평가하여 이해상충 발생을 방지하기에 적절한 내부통제기준 및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적절한 체계를 갖추었는지 다음의 사항들을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매매, 쌍방대리, 수수료지급, 과당매매 등의 겸업에 따라 발생가능한 이해상충 문제를 사전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체계 구축 여부 심사 - 집합투자재산 평가 및 운용 담당 임원 별도 임명 여부, 전문인력이 이해상충 대상 부서간 겸직 않고 있음 등을 확인 - 투자매매업 등 이해상충 부서와 사무실·사무장비의 물리적 분리 여부 등 확인 - 기존 자산운용사 준법감시 경력이 충분히 있는 전담준법감시인력 배치 등을 확인 		

3. 금융투자

(4) 투자자문업 · 투자일임업 등록

1. 투자자문 · 투자일임업 정의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6조 제6항 및 제7항

1. 투자자문업

-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대상자산(이하 “금융투자상품등”이라 한다)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 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2. 투자일임업

-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참고> 유사투자자문업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전자우편 또는 방송 등을 통해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영위하는 투자조언업(일대일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업 영위 불가)

II.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 및 제5조
시행령 제3조~제5조 및 제6조의 2

1.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함

2. 금융투자상품의 종류(예시)

① 증 권

-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이 가능함

구 분	예 시
① 채 무 증 권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 기업어음증권 등
② 지 분 증 권	주권, 신주인수권, 그 밖에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
③ 수 익 증 권	신탁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등이 발행한 수익증권
④ 투 자 계 약 증 권	투자한 사업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권리가 표시된 것
⑤ 파 생 결 합 증 권	DLS, ELS 등
⑥ 증 권 예 탁 증 권	ADR, EDR 등

② 장내 · 외 파생상품

□ 파생상품이란 금융투자상품·통화·일반상품·신용위험 등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하는 거래를 대상으로 한 상품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함

구 분	예 시
①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선도 (Forward) 선물 (Futures)
②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해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옵션 (Option)
③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스왑 (Sw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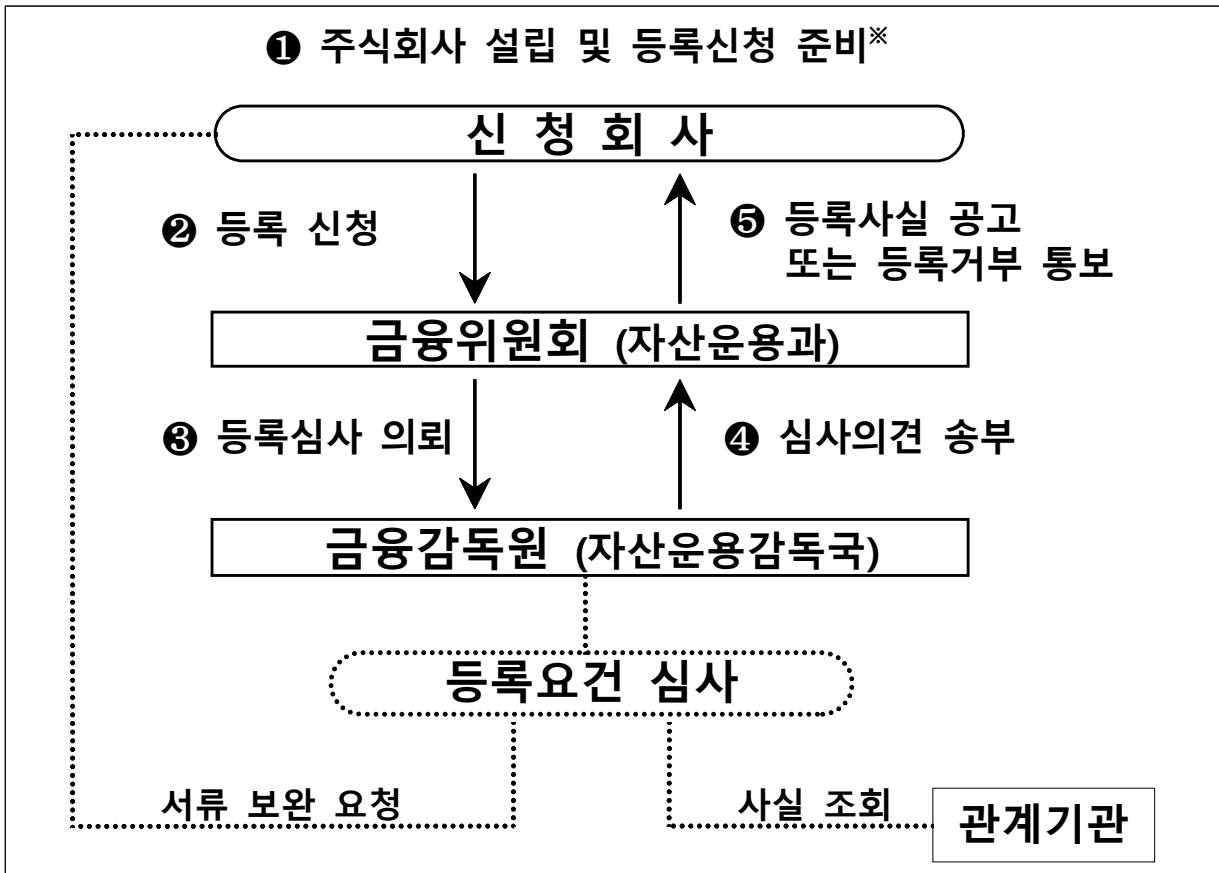
※ 금융투자상품 제외대상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CD),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처분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신탁의 수익권 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서 제외

Ⅲ. 등록절차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8조 및 제19조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 금융투자업규정 제2-9조

1. 등록절차 흐름도



※ 금융투자업 등록 신청 준비시 금감원의 「인허가 사전 상담창구」 이용 가능

<인허가 사전 상담창구 운영 개요>

- (상담내용) 인허가 신청전 서류 준비단계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심사요건 절차, 인허가 매뉴얼 사항, 신청서 준비사항 등 객관적 사항 상담
- (상담방식) 유선, 대면 등 신청인이 희망하는 방식
- (신청전화) 02-3145-8007 (감독총괄국 감독총괄팀)

※ 사전상담은 필수 선행절차가 아니며, 신청인은 사전 상담없이 심사부서로 직접 연락가능

2. 세부 등록절차 (신설법인 기준)

① 주식회사 설립 및 등록신청 준비

-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회사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준비 (상호에 “투자자문”·“투자일임” 사용 금지, 법 제38조 참고)

구 분	등 록 요 건
회사형태	○ 상법상 주식회사 등
자기자본	○ 법정 최소 자기자본을 충족할 것 - 투자자문업 : 1억원(5-21-1), 2.5억원(5-1-1) - 투자일임업 : 5억원(6-1-2), 15억원(6-1-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3 참고)
대주주	○ 법 제18조에서 정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할 것
임 원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각호에서 정한 임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할 것
전문인력	○ 투자자문업 : 상근 임직원인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이상 ○ 투자일임업 : 상근 임직원인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 ○ 투자자문업 · 투자일임업 : 위의 인력을 모두(3인) 갖추어 것
이해상충 방지체계	○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의 체계를 갖추어 것 - 이해상충관리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 정보교류의 차단을 위한 적절한 체계

※ 전문인력 해당여부 확인

전문인력의 자격 및 요건에 관한 사항은 「금융투자전문인력과자격시험에관한규정」을 참고하시어 금융투자협회의 사전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②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 [신청회사 → 금융위]

- 등록요건을 갖추고 서류작업이 완료되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공문과 함께 접수하며, 원본 1부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에, 사본 1부는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에 제출

③ 금융감독원에 등록심사 의뢰 [금융위 → 금감원]

- 신청을 접수한 금융위원회는 신청회사의 투자자문·일임업 등록과 관련한 요건충족 등에 대한 심사를 금감원에 의뢰

④ 등록심사 및 심사의견 송부 [금감원 → 금융위]

-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문·일임업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제출서류 및 관계기관 사실조회 등을 통해 확인하게 되며 필요시 신청회사에 등록신청 내용의 보완을 요청, 심사가 종결되면 심사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송부

⑤ 등록사실 공고 또는 등록거부 통보 [금융위 → 신청회사]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심사의견을 토대로 등록여부를 판단 하며 등록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의 사유발생 시에는 등록 거부를 신청회사에 서면으로 통보

Ⅳ. 등록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구비요령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련법률시행령 제22조
금융투자업규정 별지 제3호

1. 상호 및 본점의 명칭소재지

상 호		소재지
국문	영문	
①	①	②

① 신청회사의 국문 및 영문 상호를 기재하며 상호에는 “투자자문”. “투자일임” 등의 글자가 포함되어서는 안 됨

② 예시) (153-74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
전화번호 : 02-111-1111 팩스번호 : 02-111-1112

첨부서류

- ① 정관 : 회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증받은 정관
- ② 법인등기부등본 : 말소사항을 포함한 법인등기부등본
- ③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이사회 의사록 등 : 설립 또는 등록 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공증받은 서류
- ④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불가)

※ 모든 첨부서류는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하여야 하며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서류 및 기재내용이 누락되어서는 안 됩니다.

2. 대표자 및 임원

임원수 : 명(상근: 명, 비상근: 명)

직위	성명	주민등록 번호	소유주식수 (비율)	주요경력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전문인력 여부	결격사유 해당여부
①			②	③	④		⑤	⑥

- ① 대표이사, 전무, 이사 등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직위를 기재하며 등기된 임원에 대해서만 기재
- ② 임원이면서 출자자인 경우 그 소유주식수 및 출자비율을 기재
- ③ 대표경력만을 간략히 기재하고, 자세한 내용은 예시의 양식을 참고하여 별도로 작성하되 신청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간의 경력을 자세히 기재

(예시)

성명	기 간	회사명	부서명	직위
홍길동	2007.3 ~ 현재	00주식회사	주식운용부	차장
	2004.3 ~ 2007.2	AA주식회사	채권운용팀	과장
진달래	2002.4 ~ 현재	BB주식회사	임원실	부사장

- ④ 상근임원인 경우 “상근”, 비상근임원인 경우 “비상근”으로 기재
- ⑤ 임원이면서 전문인력에 해당되는 경우 “Y”, 전문인력이 아닌 경우 “N”으로 기재
- ⑥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호의 임원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표시하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N”으로 기재

첨부서류

- ① 이력서 : 인감도장으로 날인한 이력서
- ② 경력증명서 :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간의 경력증명서*
 - * 5년 기간내 경력단절기간(1개월 이상)이 있는 경우 (1) 해당 기간의 증명서 미제출 사유에 대하여 신청인이 확인(법인인감 날인)한 서류 및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제출
- ③ 신원조회의회서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舊 본적지) 등을 기재한 신원조회의회서 (붙임2 참조)*
 - * 동 신원조회의회서를 신청인이 직접 등록기준지 조회기관에 의뢰한 후 회신받은 결격사유조회 회보서를 함께 제출
- ④ 소속기관 확인서 :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간의 소속기관 으로부터의 처벌사실 여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경력증명서에 표기할 경우 제외)
- ⑤ 결격사유없음 확인서
 - 대표이사 및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결격사유가 없음을 본인 스스로 확인한 서류, 인감도장(개인)으로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붙임3-1 참조)
 - 대표이사가 당사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8호, 동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3호,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한 서류, 인감도장 (법인)으로 날인(붙임3-2 참조)

3.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등록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투자자의 유형
①	②	③

① 등록업무 단위 : 5-1-1, 5-21-1, 6-1-1, 6-1-2 중 해당하는 업무 단위를 기재

② 금융투자업의 종류 :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 중 해당사항 기재

③ 투자자의 유형 :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또는 전문투자자 중 해당사항 기재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3

등록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최저 자기자본
5-1-1	투자자문업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및 시행령 제6조의2 각 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5억원
5-21-1	투자자문업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환매조건부 매매, 제6조의 2 제3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 파생결합증권과 유사한 증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무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억원
6-1-1	투자일임업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및 시행령 제6조의2 각 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5억원
6-1-2	투자일임업	상동	전문투자자	5억원

첨부서류

① 업무영위방법을 기재한 서류 : 조직체계, 투자자문(일임)업무 운영에 관한 내부지침(절차, 수수료 산정기준 등), 향후 2개년 간 사업계획 등을 기재한 서류 (붙임4 참조)

② 계약권유문서 : 법 제97조, 영 제98조 및 규정 제4-73조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권유문서 표준서식 (붙임5 참조)

- ③ 투자자문계약서, 투자일임계약서 : 자문·일임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계약서류로 법 제97조, 영 제98조 및 규정 제4-73조의 의무사항이 포함된 계약서 서식 (붙임6 참조)

※ 계약권유문서, 투자자문계약서 및 투자일임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 포함 필요

- ① 임원, 대주주에 관한 사항
- ② 투자자문·일임업을 실제 수행하는 임직원 성명 및 주요경력
- ③ 임원 및 투자권유자문인력·투자운용인력이 과거에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 거래 행위 등 위법사항으로 형사제재를 받았거나 금융위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사항(조치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없음을 기재)
- ④ 수수료 산정 기준

- ④ 투자일임보고서 : 일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법 제99조, 영 제100조 및 규정 제4-78조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 (붙임7 참조)

4. 재무에 관한 사항

첨부서류

- ①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또는 감사보고서)
- ② 설립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의 경우,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 ③ 설립 후 사업연도가 지나지 않은 법인은 설립일부터 신청일까지의 재무제표로 같음

※ 감사보고서가 아닌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 회계법인에서 작성한 재무제표확인원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회계법인명 기재필요), 재무제표확인원 작성법인은 기장대리 법인과 상이하야 합니다.

⇒ 등록 신청시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중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에 첨부된 경우 포함)를 통해 이미 공시된 자료의 경우 동 시스템에 공시된 감사보고서 자료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요경력(전문자격내용)	전문인력 해당사항
		①	②

① 주요경력 및 전문자격내용 등을 기재

② 투자권유자문인력과 투자운용인력 중 해당사항 기재

첨부서류

① 경력증명서 :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간의 경력증명서

② 전문인력의 자격확인서류 : 시험 합격증 등 자격 확인서*

* (1) 합격증 및 교육내역 또는 (2)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증을 제출

③ 상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 <업무단위 5-21-1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요건(금융투자업 관련업무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의 투자권유업무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의 투자운용업무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함)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6. 대주주에 관한 사항

- ① 등록신청일 현재 대주주의 성명(명칭), 소유주식수 및 비율을 기재

첨부서류

- ① 주주명부 : 신청회사의 인감도장이 찍힌 주주명부(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이 최대주주인 경우 최대주주인 법인의 주주명부도 함께 제출해야 함(지분율 및 특수관계인 여부 등도 함께 기재)
- ② 결격사유없음 확인서 : 규정 제2-9조제1항의 결격요건을 나열하고 각 항목에 대해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한 서류 (인감도장 날인·인감증명서 첨부) (붙임8 참조)

신청인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만 추가 제출

- ① 최대주주인 법인의 주주명부 : 최대주주인 법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주주명부(주민등록번호 기재)
- ② 회사 개황자료 및 납세증명서 : 주소, 대표자, 연혁, 사업내용 등을 기재한 자료 및 납세증명서
- ③ 결격사유없음 확인서 :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의 확인서

※ 대주주의 범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참고)

-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최대주주)
-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주요주주)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및 대표자

7.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 ①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 통제장치에 관한 서류(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등)

※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law.kofia.or.kr) - 모범규준 -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금융소비자보호기준에는 다음의 사항 포함 필요(금소법 32조 등)

-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안내방법
- 민원·분쟁 발생시 업무처리 절차 및 관련 전산처리시스템 구축
-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
-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평가·제도개선
- 민원·분쟁 대응관련 교육·훈련(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요구 대응, 일반금융소비자 청약철회 대응, 계약해지요구 대응)
-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정·변경 절차

- ②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 이해상충방지체계 내용 작성

- ③ 내부통제기준 및 이해상충방지체계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한

8. 그 밖의 기재사항

첨부서류

- ① 합작계약서 등 : 외국인과의 합작을 통한 신청 시에 한함
- ② 위임장 등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 ③ 물적설비 구비 확인
 - 사무실 관련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 전산설비 및 비품 구입증빙 : 구매주문서, 세금계산서, 대금 지급 증빙서류 등으로 설비 구비를 입증
 - 전산설비 및 사무실 구성도 : 동 서류를 통해 물적시설을 구축하였으며, 실제로 사업을 영위할 준비가 되었음을 입증 (사무실 구성도에 성함, 직함, 업무를 표기하여 제출)
- ④ 그 밖의 타당성 심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신용정보 조회서 등)
 -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발급(방문·우편)받은 '신용정보조회서' 제출(최근 5년간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변동분 조회내역 포함)
 -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여권 사본 및 신용정보 열람(발급)신청서(본인 자필서명 필요)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신용정보조회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

V. 주요 질의응답

1. 현재 전문투자자 대상 투자일임업(6-1-2)을 영위 중인데, 일반투자자 대상 투자일임업(6-1-1)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추가 등록절차가 필요한지?

자본시장법상 일반·전문투자자 대상 투자일임업 (6-1-1) 및 전문투자자 대상 투자일임업 (6-1-2)은 별도의 등록단위로 구분

⇒ 6-1-2 일임업자가 6-1-1 일임업을 추가하는 것은 업무단위 추가에 해당하므로 추가적인 등록 (변경등록) 절차가 요구됨

2.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일임업 변경등록* 신청시, 투자자문업 등록신청도 동시 진행이 가능한지?

* 예: 6-1-2 → 6-1-1

서류를 완비하였다면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함

3. 투자자문업 및 일임업 등록시, 신청인의 전문인력이 2명이나, 이 중 1명이 투자권유자문인력 및 투자운용인력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지?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 시, 2인 이상의 투자운용인력, 1인 이상의 투자권유자문인력을 각각 갖추어야 함

○ 따라서, 2인 (1인: 투자권유자문인력 + 투자운용인력, 1인: 투자운용인력)으로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음

4. 투자자문업 등록시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이상을 갖추어야 하는데, 투자권유자문인력의 구체적 요건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 투자자문업 등록시, 전문인력 요건으로 1인 이상의 투자권유자문인력을 갖추어야 함 (법§18② iii.)
 - 이는 자본시장법 (§286① iii.)에 따라 금융투자협회 (이하 '협회')에서 등록·관리하는 바, 세부 요건은 협회 규정*에 명시
 -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10조 (세부사항 별첨 참고)
 - 한편, 투자일임업 등록시 요구되는 투자운용인력의 요건도 위에서 언급한 협회 규정에 명시
 - ※ 협회 규정은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https://law.kofia.or.kr>)에서 확인 가능

5. 투자권유자문인력의 구체적 요건은?

- 자문업 등록 단위에 따라 구분되며, 세부적인 사항은 금투협회 규정*(「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2-10)에서 명시
- ① (5-1-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펀드·증권·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요건*을 모두 갖춘 자**
 - * 협회 전문인력 규정 제2-2조, 제2-3조 및 제2-4조에서 규정
 - ** 다만,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권리에 대한 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금투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이 정하는 부동산투자자문교육을 추가로 이수한 자
 - ② 투자자산운용사 중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에 대한 등록요건*을 갖춘 자**
 - * 협회 전문인력 규정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
 - ** 다만, 부동산등에 대한 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 투자운용업무에 대한 등록요건을 추가로 갖춘 자

② (5-21-1) ① 요건 및 다음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추가로 갖춘 자

① 국내외 금투업자 임직원으로서 금투업 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 금융투자상품등의 투자권유·투자자문·개발·투자전략·조사분석·위험관리·평가·운용 등

② 투자권유대행인으로서 투자권유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③ 금융투자상품등 투자운용업무* 1년 이상 종사자

* 협회 전문인력 규정 제2-6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운용업무

6.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투자권유자문 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 금융투자협회 규정*상 투자자산운용사 중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 업무에 대한 등록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협회규정 §2-10①2.나.),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의 등록요건은 협회규정 제2-6조에 명시

※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 등록 요건 (협회규정 제2-6조제1항제1호)

□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의 제1호 마목 비고 제1호의 증권운용전문인력(이하 “증권운용전문인력”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합격하고, 제5-1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운용업무에 대한 등록교육(이하 “투자자산운용사 등록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자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에서 집합투자재산(법에 따른 신탁재산을 포함한다), 투자일임재산,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고유재산(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금융기관 및 이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외국금융기관의 고유재산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운용인력별 운용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고유재산에 한한다)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1)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금융기관(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보험회사, 겸영금융투자회사를 제외한 금융투자회사)
- 2)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협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증권금융회사, 신용평가회사,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단기금융회사, 명의개서대행회사, 법 제370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투자 관계 단체)
- 3)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 4)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5)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 6) 「국가재정법」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가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산

운용을 전담하는 부서 또는 같은 법 별표 2에 따른 기금설치 근거 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자

- 7)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국제금융기구
- 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 9) 1)부터 6)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외국의 기관 또는 회사

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투자자산운용사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

7. 자문업 또는 일임업 등록시 준법감시인을 선임해야 하는지?

- 금융투자업 중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만 영위하면서 일임재산 합계액이 5천억원 미만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인 경우,
 - 지배구조법에 따른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 미적용

※ 관련 법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① 금융회사(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제외한다)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 외의 다른 금융투자업을 겸영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의 합계액이 5천억원 미만인 자를 말한다. (이하 생략)

8. 투자자문사의 일반직원이 투자자문 업무를 할 경우에도 해당 직원이 전문인력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가 투자자문업을 수행하는 것은 투자자문업자에게 금지된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 (법 §98① iii.)

⇒ 투자자문업은 투자권유자문인력만이 수행 가능

9. 투자자문사의 사무공간으로 공유오피스나 오피스텔을 사용해도 되는지?

- 공유오피스나 오피스텔 사용에 특별히 제한을 두진 않음
(단, 주거용 오피스텔은 불가)
- 공유오피스의 경우, 투자자문사만의 지정된 사무공간, 독립된 출력기기, 회의공간 구비 등이 필요

VI. 참고사항

-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1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금융투자업규정 제2-9조

1. 외국투자자문 · 일임업자

- 대주주요건 대신 신청회사에 대한 요건을 확인하며, 역외 투자자문·일임업자의 경우에는 임원 자격요건도 심사대상에서 제외

2. 업무 추가 및 변경등록

- 투자자문회사가 등록업무를 추가/변경하는 경우 대주주 및 외국 투자자문·일임업자에 대한 요건을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완화된 요건으로 적용

3. 겸영금융투자업자

- 다른 금융투자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대주주등에 대한 요건을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완화된 요건으로 적용하고, 시행령 제16조 제8항에 따라 신청회사에 대한 요건을 추가 심사

※ 업무를 추가/변경하는 투자자문회사, 외국투자자문일임업자, 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 관련규정을 확인하고 (붙임8)대주주확인서 양식을 변경하여 확인서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Ⅶ. IFA 확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60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12조의 2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8-1조 제53호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책서식1 제53호>

독립성 요건 충족 확인신청서

문서번호 :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 독립성 요건 충족 확인신청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3항 제4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12조의2 제2항에 따라 독립성 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신청합니다.

붙 임 : 독립성 요건 자체 심사표

○○○ 대표이사 (인)

작성자 : (직위)

전화번호 :

<붙임>

독립성 요건 자체 심사표

항목	주요 판단근거	충족여부
1. 투자일임업 외의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지 아니할 것		
2. 다른 금융투자업 또는 그 밖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의 계열 회사가 아닐 것		
3. 임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다른 금융기관등의 임직원 직위를 겸직하는 자 나. 다른 금융기관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자		
4.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투자자문과 관련하여 다른 금융회사등(임직원을 포함한다)으로부터 투자자의 매매 거래 규모 또는 금융회사등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되는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 및 재산상 이익을 받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금융회사등에게 투자자문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나. 금융회사등이 투자자문수수료 등 투자자문의 대가를 투자자로부터 수취하여 전달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경미한 사항으로서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5.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특정 금융회사등이 운용·판매하는 금융투자상품에 한정하여 투자자문을 하지 않을 것. 다만, 특정 금융회사등이 운용·판매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수수료, 보수 등이 투자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첨부서류>

-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등)
- 주주명부 등 계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주주명부[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최대주주인 법인에 대한 주요주주 내역 포함, 자회사 출자내역 등])
- 임직원 겸직·파견 등을 규정한 내부 인사규정 등 임직원이 다른 금융기관과의 겸직·파견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자문업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 등 금융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이익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자문업무 영위방법을 규정한 서류 1부
- 내부통제기준
- 향후에도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겠다는 대표이사 및 이사 전원의 연명 협약서 1부

(붙임1) 등록신청서 서식

<별지 제3호>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

1. 상호 및 본점의 명칭·소재지

■ 첨부서류

- 1-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
- 1-2.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부
- 1-3.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등 설립 또는 등록신청의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표자 및 임원

임원수 : 명(상근: 명, 비상근: 명)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유주식수 (비율)	주요 경력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전문인력 여부	결격사유 해당여부

기재상의 주의

- 1. 결격사유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 첨부서류

- 2-1.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각 1부
- 2-2.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3.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 첨부서류

- 3-1. 등록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영위방법을 기재한 서류 각 1부(법 제21조에 따른 변경등록의 경우, 종전에 영위하던 등록업무 단위와 추가하는 등록업무를 구별하여 각각 기재한다.)
- 3-2. 법 제21조에 따른 변경등록의 경우, 종전 등록업무에 관한 등록확인서 1부
- 3-3. 투자자문·일임계약 권유문서, 투자자문·일임계약서, 투자일임보고서 양식 각 1부

4. 재무에 관한 사항

■ 첨부서류

- 4-1.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설립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4-1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 등 전문인력의 명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요경력, 전문자격내용 등)

■ 첨부서류

5-1.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상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및 자격확인서류 각 1부

6. 대주주나 외국 투자자문업자 또는 외국 투자일임업자에 관한 사항

■ 첨부서류

- 6-1. 등록신청일(등록업무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등록신청이나 경영금융투자업자의 등록신청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대주주의 성명이나 명칭과 그 소유 주식수 및 비율을 기재한 서류 1부
- 6-2. 대주주나 외국 투자자문업자 또는 외국 투자일임업자가 법 제18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6-3. 외국인투자인가서(해당되는 외국인의 경우) 사본 1부

7.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 첨부서류

- 7-1.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서류 1부
- 7-2. 이해상충행위가 발행하지 않도록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확인 서류 1부
- 7-3. 그 밖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서류

8. 그 밖의 기재사항

■ 첨부서류

- 8-1. 합작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외국인과의 합작을 통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사본 1부
- 8-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8-3.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의2>

역외투자자문업 · 투자일임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

1.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 명칭 등

- 상호, 설립일, 자기자본 · 운용자산규모, 본점의 위치 및 명칭, 그룹 조직도 등 개황

■ 첨부서류

- 1-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
- 1-2. 법인등기부등본에 준하는 해당국가에서의 설립증빙서류 1부
- 1-3. 설립 또는 등록 신청인에 대한 출자구조를 설명한 그룹 조직도 1부

2. 임직원에 관한 사항

직원수 : 명 임원수 : 명(상근: 명, 비상근: 명)

임원 현황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 첨부서류

- 2-1.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 2-2. 법 제100조제4항에 따른 임직원직무수행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서류 각 1부

3.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 첨부서류

- 3-1. 등록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영위방법을 기재한 서류 각 1부(법 제21조에 따른 변경등록의 경우, 종전에 영위하던 등록업무 단위와 추가하는 등록업무를 구별하여 각각 기재한다.)
- 3-2. 법 제21조에 따른 변경등록의 경우, 종전 등록업무에 관한 등록확인서 1부
- 3-3. (일반투자자)투자자문계약 권유문서, 투자자문 · 일임계약서, 투자일임보고서 양식 각 1부

4. 재무에 관한 사항

■ 첨부서류

- 4-1.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1부

※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4-1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 등에 관한 사항

-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 등 전문인력의 명단 (성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전문자격내용 등)

■ 첨부서류

- 5-1. 해당 국가에서 인정되는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에 준하는 자격요건 및 관련증빙서류 각 1부

6. 외국 투자자문업자 또는 외국 투자일임업자에 관한 사항

■ 첨부서류

- 6-1. 등록신청일 현재 대주주의 성명이나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1부
- 6-2. 외국 투자자문업자 또는 외국 투자일임업자가 법 제18조제2항제5호나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7. 연락책임자에 관한 사항 등

- 상호,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영위업무, 해당 신청업무의 담당자 및 연락처

■ 첨부서류

- 7-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7-2.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2) 신원조회의뢰서 양식

신원조회 의뢰서

조회대상자

성명 (한자)	주민(법인) 등록번호 ¹	등록기준지 ²	조회기관 ³

[기재시 유의사항]

1.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등록번호 기재
2. 등록기준지(舊 본적지)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현 등록기준지를 기재
3. 등록기준지 소재 조회기관 및 담당자의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기재

조회내용

- 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붙임3-2) 임원요건 충족 확인서(대표이사 확인)

임원요건 충족 확인서

당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 중 당사와 여신거래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과 특수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당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자는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이사 확인) (인)

(붙임4) 업무영위방법 작성요령(예시)

1. 투자자문계약 및 투자일임계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체계

- 자문·일임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전체 조직체계를 직위·성명 등을 기재하여 담당업무를 자세히 표현한 조직도를 첨부

2.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업무 운영에 관한 내부지침(절차)

3. 사업계획

1) 개요

- 회사개황, 설립배경, 사업목표 및 전략, 주된 타겟시장, 업계 현황 등

2) 향후 2개년 사업계획

① 투자자문 및 일임업 수행 전략

- 투자원칙, 주된 운용방법(주식, 파생 등), 기타 전략 등 기술

② 마케팅 전략 : 주된 대상고객 및 마케팅 전략 등을 기재

(붙임5) 계약권유문서 필수 기재사항(법 제97조)

1.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 가. 투자조언의 범위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나. 투자자문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주식, 채권, 유가증권지수, 유가증권옵션 등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다. 투자조언의 방법을 구술, 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조언방법 및 시기를 기재하여야 한다.
- 라. 당해 투자자문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 및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마. 고객의 투자자문 요구 방법이나 시기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2. 투자일임의 범위 및 제공방법

- 가. 일임받는 투자판단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나. 투자일임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주식, 채권, 유가증권지수, 유가증권옵션 등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다. 당해 투자자문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 및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라. 주로 거래하는 증권회사가 있는 경우 그 명칭 및 당해 투자자문회사와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3. 투자자문업무 또는 투자일임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절차 또는 지침

가. 업무절차 또는 지침은 고객의 학력, 경력, 유가증권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당해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간명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4. 투자자문업무 또는 투자일임업무를 실제로 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

가. 당해 임직원이 과거에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임의매매 등 증권거래법상의 위법행위로 형사제재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의 요구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나. 당해 임직원이 과거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 대상 재산의 투자실적을 경력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주요경력에는 전·현직장의 근무부서 및 기간, 재직시 담당업무, 주요 자격증 취득현황 및 업무관련 주요학위 취득현황 중 주요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5. 고객과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두고 있는 절차

가. 고객과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기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회사가 두고 있는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6.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고객이 부담할 책임의 내용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 동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투자자문회사의 금지행위를 간략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나. 포괄적 면책조항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7. 수수료 산정에 관한 사항

- 가. 당해 회사의 일반적인 수수료 체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 나. 당해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에 적용되는 수수료 산정방법, 수수료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다. 계약의 중도해지 시 해지수수료 산출방식 및 환급절차를 기재하여야 한다.

8.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한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의 고객에의 통보 방법

- 가. 투자실적을 평가하는 지표(투자수익률 등)의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나. 투자결과의 고객통보방법은 통보시기, 통보수단, 통보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8. 기타 : 시행령 제98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4-73조 각 호의 사항 (관련법규를 참고)

9. 금소법 관련 사항

- 가. (금소법 17조 등) 일반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취득/처분 목적, 재산상황, 취득/처분 경험의 확인
- 나. (금소법 19조 등)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할 투자성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자문일임사가 정하는 위험등급, 수수료, 계약 해지/해제 관련, 계약기간, 예상손실,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 다. (금소법 27조 등) 자문업무에 따른 보수 및 그 결정기준, 보수 외에 추가로 금전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취득/처분에 따른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실(자문업 영위시에만 해당)

(붙임6) 투자자문계약서, 투자일임계약서 작성요령*

* 관련법규에 의한 계약서 의무 포함사항

1.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2. 투자자문업무 또는 투자일임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3.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
4.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 및 절차
5.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고객이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6. 수수료에 관한 사항
7.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
8.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9.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 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10. 당해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할 때 적용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11.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대상 기간
12. 투자자는 투자일임자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을 두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사항

13. 투자자에 대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변경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한다는 사항

14.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는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회사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임직원은 그 상담요구에 응한다는 사항

15. 회사와 주로 거래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있는 경우 그 명칭 및 이해관계의 내용에 관한 사항

16. 당해 임직원에 과거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 위법행위로 형사제재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주의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사항

17. 법 제98조 및 영 제99조에서 정하고 있는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18.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19.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20.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21. 투자일임재산이 예탁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명

22. 금소법 관련 사항(계약권유문서와 동일)

(붙임7)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방법*

*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책서식1 제 22호에 의한 투자일임보고서 작성 방법

<제22호>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방법

1. 투자일임계약의 개요

(단위 : 원, %)

계약상대방		계약기간	'00.00.00 ~ '00.00.00
계약금액		평가금액	
누적수익률 (기간 : '00.00.00 ~ '00.00.00)		해당기간 수익률 (기간 : '00.00.00 ~ '00.00.00)	

- 1) “계약기간”은 최초 계약일과 계약 만료예정일을 기재한다.
- 2) “평가금액”은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기간 말일의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증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투자일임계좌 잔액을 기재한다.
- 3) “누적수익률”은 계약일로부터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기간까지의 수익률을 기재하되, 투자일임수수료 등 제반비용 차감후의 수익률을 기재한다.
- 4) “해당기간수익률”은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기간 중 수익률을 기재한다.
- 5) 구체적인 수익률 산정기준 및 계약금액 산정기준은 표 하단에 별도로 기재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준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2. 투자자의 투자성향

- 가. 투자자의 연령, 재무상태, 금융자산비중, 투자위험 감수능력 및 투자경험 등을 토대로 투자일임업자가 파악한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서술식으로 상세히 기재한다.
- 나. 투자자가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수·매도 및 편입제한 등 투자일임재산 운용에 대하여 부여한 각종 제한사항을 기재한다. 제한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실이 없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3. 투자일임재산의 운용현황

- 가.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기간 중 시장상황 및 투자일임재산 운용에 적용된 투자전략을 서술식으로 기재한다.

나. 투자일임재산의 매매종목, 매매가격, 수수료 및 각종 세금 등 운용현황을 일자별로 기재한다.

(단위 : 원, 주, 좌)

구분	종목명	매매일자	수량	매매단가	매매금액	위탁매매수수료	각종세금

- 1)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기간 중 발생한 금융투자상품의 매수와 매도내역을 기재한다. 투자일임재산 중 일부를 콜론 등으로 운용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표 하단에 별도 기재한다. 매수와 매도내역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한국거래소 등을 통한 매매가 아닌 사유(예: 공모주 청약, 유상증자, 감자 등)로 인해 발생한 거래도 원칙적으로 기재하고, 다만 동 거래내역을 다른 방식으로 투자자에게 고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표 하단에 기재하고 이의 기재는 생략할 수 있다.
- 2) “구분”은 매수와 매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3) 동일일자에 동일종목 매수가 여러 번 발생하거나 동일종목 매도가 여러 번 발생한 경우에는 평균매매가격 등을 적용하여 단일의 매수 또는 매도로 기재할 수 있다.
- 4) “매매금액”은 수량과 매매단가를 곱한 금액을 기재한다.

다.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기간 및 총 계약기간 동안 투자일임계좌에서 발생한 주식의 매매회전율을 기재한다.

(단위 : 원, %)

구분	매수금액	매도금액	매매회전율	
			해당기간 (‘00.00.00 ~ ‘00.00.00)	기간누적 (‘00.00.00 ~ ‘00.00.00)

- 1) “매매회전율”은 대상기간 중 산정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매수금액과 매도금액을 평균한 가액을 대상기간 중 투자일임계약의 전체 일평균평가금액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예시 : [(매수금액 + 매도금액) ÷ 2 / (투자일임계약의 전체 일평균평가금액)] × 100]
- 2) “해당기간”은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기간 동안의 매매회전율을 기재한다.
- 3) “기간누적”은 당해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부터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기간까지의 매매회전율을 기재한다. 다만, 동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최근 1년간의 매매회전율을 기재한다.

라.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과정에서 일정규모 이상으로 투자위험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소, 투자전략, 시장상황분석 등을 서술식으로 기재한다.

예시] 투자일임재산이 특정주식에 일정규모(예: 투자일임재산 총액의 10%이상) 이상으로 투자되는 경우의 그 주식 또는 평가액 기준으로 투자대상범위 상위 3개 종목의 주식에 대한 일반적인 투자위험(원금손실가능여부, 과거 주가추이 및 관련 산업동향 등), 조사분석자료 등 객관적인 근거에 기인한 동 주식 발행회사의 실적 및 향후 주가전망, 동 주식에 대한 투자를 선택한 이유 및 보유기간 등에 대한 전략 등을 기재한다.

마. 투자일임재산 중 특정 자산을 그 투자일임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한 실적이 있는 경우 그 거래시기·거래실적 및 잔액을 기재한다.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바. 투자자문회사로부터 포트폴리오, 추천종목, 매매시기, 매매가격 등에 관하여 투자자문을 받아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문회사에 대한 사항(예: 회사명, 회사개요, 전문인력현황 등)을 기재한다.

4. 투자일임재산 운용실적 및 자산구성현황

가. 투자일임재산 운용실적은 최근 3, 6, 9, 12개월간 수익률 및 누적수익률을 기재하되, 투자일임수수료 등 제반비용 차감후의 수익률을 기재한다.

(단위 : %)

구 분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2개월
투자일임 계약 수익률				
비교지수 수익률				

- 1) “비교지수 수익률”은 투자일임계약서, 투자권유문서 등에서 특정 비교지수를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지수의 수익률을 기재한다. 비교지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로서 투자일임재산의 일부를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코스피 수익률을 기재하고 주식투자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비교지수 수익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2) “최근 3, 6, 9, 12개월”은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기간 말일을 기준으로 과거 3, 6, 9, 12개월을 의미한다.

나. 투자일임계좌에서의 자산 종류별(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등) 보유현황 및 비중을 표 또는 그래프를 이용하여 기재한다.

다. 투자일임계좌에서의 종목별 보유현황, 취득가액, 시가 및 보유비중 등을 기재한다.

(단위 : 원, 주, 좌)

종목명	보유 수량	취득 단가	시가	보유 잔액	보유 비중

- 1) “취득단가”는 평균취득가액을 기재한다.
- 2) “보유잔액”은 보유수량 × 시가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 3) 보유비중은 각 종목별 보유잔액이 전체 투자일임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재한다.
- 4) 현금 등과 같이 보유수량, 취득단가 등을 기재하기 부적절한 경우에는 보유잔액 및 보유비중만 기재할 수 있다

5. 투자일임수수료 등 비용발생내역

가.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기간 및 계약기간 중 발생한 투자일임수수료, 위탁매매 수수료, 증권거래세, 기타 제세금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

(단위 : 원)

구 분	투자일임 수수료	성과 보수	위탁매매 수수료	각종 세금	기타 비용	총비용
해당기간 (‘00.00.00 ~ ‘00.00.00)						
기간누적 (‘00.00.00 ~ ‘00.00.00)						

- 1) “해당기간”은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기간 중 발생한 비용을 기재한다.
- 2) “기간누적”은 당해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부터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기간까지 발생한 비용을 기재한다. 다만, 동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간 발생한 비용을 기재한다.
- 3) 규정에 따라 위탁매매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탁매매수수료”란은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투자일임수수료 부과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기재한다.

다. 성과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성과보수 부과기준 및 방법, 성과보수를 부과한 경우 부과기준 충족여부 및 부과금액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

6.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직위	성명	운용 개시일	운용중인 다른 투자일임계약 현황		주요 경력	연락처
			투자일임 계약(건)	운용규모 (백만원)		

- 1)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 운용을 실제로 담당한 투자운용전문인력을 기재한다.
- 2) “주요 경력”에는 최근 5년간 전·현 직장의 근무부서 및 기간, 재직시 담당업무, 운용관련 자격증 취득현황 등을 기재한다.

7. 그 밖의 작성방법

- 가. 투자일임재산 운용과정에서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발생여지가 있는 거래가 있는 경우 세부내역을 기재하고 구체적인 조치사항에 대해 기재하여야 한다.
- 나. 투자결과보고서의 기재사항은 당해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간명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다.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범위 내에서 표 등을 일부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고, 다만 그 변경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라.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사항 등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다.

(붙임8) 대주주 확인서 양식

[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대주주 결격사유없음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확인 서명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이 없을 것	
신청한 금융투자업 등록업무 단위와 동일한 등록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등록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3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이 없을 것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법 제20조의2에 따른 투자자문업(투자자문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투자일임업(투자일임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등록이 직권말소된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법 제20조의2에 따른 투자자문업(투자자문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투자일임업(투자일임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등록이 직권말소된 자의 대주주가 아닐 것	
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제5호, 동법시행령 제21조제5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2-9조제1항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 ○. ○○

성 명 : (인)

[대주주가 내국법인인 경우]

대주주 결격사유없음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확인 서명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이 없을 것	
신청한 금융투자업 등록업무 단위와 동일한 등록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등록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3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법 제20조의2에 따른 투자자문업(투자자문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투자일임업(투자일임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등록이 직권말소된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법 제20조의2에 따른 투자자문업(투자자문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투자일임업(투자일임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등록이 직권말소된 자의 대주주가 아닐 것	
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 동법시행령 제21조제5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2-9조제1항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00. 0. 00

성 명 : (인)

[대주주가 개인인 경우]

대주주 결격사유없음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확인 서명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이 없을 것	
신청한 금융투자업 등록업무 단위와 동일한 등록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등록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3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직무정지를 받거나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법 제20조의2에 따른 투자자문업(투자자문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투자일임업(투자일임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등록이 직권말소된 자의 임원 또는 대주주가 아닐 것	
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 동법시행령 제21조제5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2-9조제1항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00. 0. 00

성 명 : (인)

[대주주가 외국법인인 경우]

대주주 결격사유없음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확인 서명
등록신청일 현재 외국에서 등록 받으려는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을 것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과 관련하여 본국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이 없을 것	
신청한 금융투자업 등록업무 단위와 동일한 등록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등록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3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이 없을 것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법 제20조의2에 따른 투자자문업(투자자문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투자일임업(투자일임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등록이 직권말소된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법 제20조의2에 따른 투자자문업(투자자문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투자일임업(투자일임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등록이 직권말소된 자의 대주주가 아닐 것	
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 동법시행령 제21조제5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2-9조제1항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 ○. ○○

성 명 : (인)

Ⅷ. 유권해석

1. 투자매매(중개)업을 겸영하는 투자일임(자문)업자가 투자자에 대한 대출업무 등을 영위할 수 있는지

- 투자매매(중개)업을 겸영하는 투자일임(자문)업자가 법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전·증권, 재산의 대여 등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투자일임(자문)업자가 투자자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증권, 재산의 대여를 중개하는 행위가 금지됨
 - 그러나 동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제1호는 투자일임(자문)업자가 다른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겸영관련 법령에서 법 제98조제1항제2호의 행위를 허용하는 경우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투자일임업자가 다른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해당 겸영 관련 법령에서 법 제9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금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행위를 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투자매매·중개업을 겸영하는 투자일임업자는 동법 시행령 제72조에서 한정한 신용공여의 범위 내에서 제98조제1항제2호의 행위 중 금전 및 증권의 대여가 가능함

2. 스마트리밸런싱 주문예약 서비스가 투자일임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스마트리밸런싱 서비스는 고객이 직접 매매종목, 수량, 가격 및 시기와 관련된 조건을 지정하고, 증권사는 고객이 지정한 조건에 도달할 경우 시스템을 통해 주문 실행을 대행하는 시스템트레이딩 서비스로서, 고객에게 거래수수료만을 징구할 뿐 여타 수수료는 제공받지 않음
- 동 서비스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 또는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객이 직접 매매종목, 수량, 가격 및 시기를 지정하고 그 지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으로 주문만 실행해 주는 주문시스템 제공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6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 제기한 방식으로만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다른 영업 행위가 부수되지 않는다면, 동 서비스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 및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하기 어려움
- 다만, 동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 또는 일임행위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적시한 사항 외에도 시스템의 운용방식 및 약관 등 구체적인 운영방법을 점검·확인할 필요가 있음

3. 부동산 투자일임업의 범위 관련

- 부동산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등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일임업의 업무 범위에 부동산의 취득, 처분 이외에 '부동산의 개발, 관리, 개보수, 임대 업무 등'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영위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

□ **질의한 업무가 자본시장법 제229조와 동법 시행령 제240조 등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업무 범위(부동산의 개발, 관리, 개량 및 임대 등)와 동일한 성격이라면 자본시장법상 부동산 투자일임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이란 법 제6조에 따라 금융투자상품등(동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 포함)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

◆ 등록 사례

3-(4) 투자자문업 · 투자일임업 등록

신 청 회 사	OOOO	신 청 일	201◇. 1. 16.
처 리 부 서	자산운용감독국 자산운용인허가팀	완 료 일	201◇. 3. 15.
신 청 내 용	<input type="checkbox"/>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8조에 따라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록을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회사는 '1◇.11월 설립된 신설법인(자본금 30억원)으로 일반 및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문·일임업 등록을 신청 		
심 사 내 용	<input type="checkbox"/> 신청회사가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사 및 외부기관 사실조회 등을 통해 자본시장법령의 등록요건 충족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형태)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주식회사 여부를 심사 ○ (자기자본) 재무제표 등을 통해 회사 자기자본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별표 3의 최저자기자본(신청회사의 경우 17.5억원)을 충족하는지 심사 ○ (임원)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 또는 제재 사실 등을 확인하여 지배구조법 제5조에서 정하는 임결격사유가 있는지 심사 ○ (대주주) 대주주가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있거나, 부실관련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별표 2 등의 요건 충족여부 심사 ○ (신청회사) 신청회사가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 ○ (전문인력) 전문인력 자격시험 합격증 등을 확인하여 등록신청 업무 영위에 필요한 전문인력 상근여부 심사(신청회사의 경우 투자권유 자문인력 1인, 투자운용인력 2인 등 총 3인 이상의 전문인력 상근 필요) ○ (이해상충방지체계)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파악·평가하여 이해상충 발생을 방지하기에 적절한 내부통제기준 및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적절한 체계를 갖추었는지 확인 		

3. 금융투자

(5) 금융투자업자 대주주 변경 승인

1. 대주주 변경 승인의 개요

1. 대주주변경 승인제도의 개념

- 금융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양수(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을 지배하는 것을 말함)하여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아래의 경우 일정 기간 이내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함
 - 기존주주의 사망에 따른 상속·유증·사인증여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양수하여 대주주가 되는 경우 : 기존 주주가 사망한 날부터 3개월
 -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증권의 인수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주식의 취득등을 하여 대주주가 되는 경우 : 주식 취득등을 한 날부터 1개월
 - 다른 주주의 감자 또는 주식처분 등의 원인에 의하여 대주주가 되는 경우 : 대주주가 된 날부터 1개월
- 금융위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위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동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음

2. 대주주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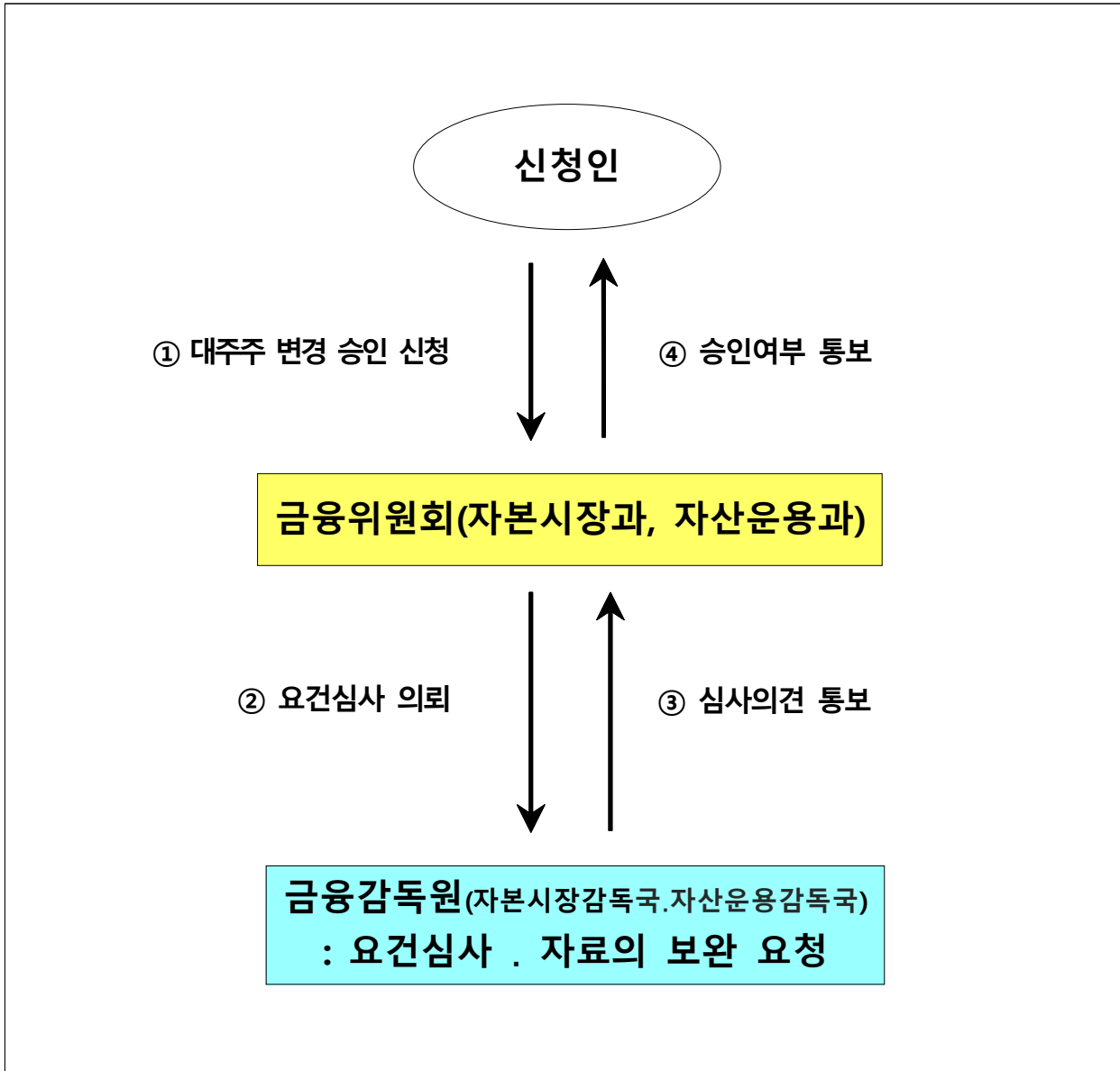
- 최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
 -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가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 주요주주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10% 이상 소유한 자
 -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법인의 중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 임원인 주주로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사람

*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집합투자업, 집합투자증권에 한정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외의 다른 금융투자업을 겸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5%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 포함)
 -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II. 대주주변경 승인 절차



※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주식을 취득·양수하여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배구조법」상 대주주 변경 승인 외에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출자승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유의

Ⅲ.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요건

대주주 변경승인 세부 요건(지배구조 감독규정 별표4)

① 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영 별표 1 제1호 관련)

가.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다음 기준을 충족할 것

- (1)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동 기준을 상회할 것
- (2)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그 금융기관과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 다만, 그 금융기관에 대하여 유사업종의 적기시정조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에는 제3호가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나. 해당 금융기관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 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 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다. 대주주가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 (1)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계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된 금융회사를 제외한다)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3) 다음과 같이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거나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 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기관경고를 받은 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전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나) 최근 5년간 파산절차·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 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4)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5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

(5)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것

② 대주주가 기금인 경우(영 별표1 제2호 관련)

가.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③ 대주주가 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사모투자전문회사와 투자 목적회사를 제외한다)인 경우(영 별표1 제3호 관련)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나. 해당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다.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외의 방법에 따라 조성한 자금으로서 그 합계액이 출자금(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승인신청한 주식의 취득액)의 3분의 2 이하일 것

- (1) 유상증자
- (2) 1년내의 고정자산 매각
- (3) 내부유보
-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라. 제1호다목(1), (2), (4)의 요건을 충족할 것

마.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 (1)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 (2) 제1호다목(3)(나)에서 정하는 사실

④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영 별표1 제4호 관련)

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나. 출자자금 중 객관적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에 따라 확인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외의 재원으로 마련된 자금이 3분의 2 이하일 것

-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한 상속재산 또는 수증재산 처분자금
- (2) 이자,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 (3) 그 밖에 (1) 및 (2)에 준하는 소득재원

다. 제1호다목(1), (2) 및 (4)의 요건을 충족할 것

라.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최근 5년간 부도발생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2)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

(3)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 최근 5년 이내에 금융회사 임원으로서 직무정지를 받거나 금융회사 직원으로서 정직요구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4) 제1호다목(3)(나)에서 정하는 사실

㉔ 대주주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인 경우. 다만, 그 외국법인이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인가신청시에 지정하는 회사*

* 그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영 별표1 제5호 관련))

가. 승인신청일 현재 외국에서 주식취득대상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다.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와 관련하여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감독기관이 제재방법으로 행하는 활동·기능·영업에 대한 제한명령, 등록의

취소나 정지등이 포함되며 행정처분에 따라 민사제재금 등을 징구 받은 경우에는 해당국 감독기관의 전체적인 제재수준 및 위법행위의 내용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라.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⑥ 대주주가 외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만 해당한다)(영 별표1 제6호 관련)

가. 승인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외국금융회사의 상근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나. 제5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해당 외국인이 본국의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확인이 있을 것

라. 제4호 나목, 다목, 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⑦ 대주주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협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 또는 해당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영 별표1 제7호 관련)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제2호의 기금인 경우 :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제3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 제3호 가목, 나목, 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라. 제4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 제4호가목, 다목 및 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마. 제5호의 외국법인인 경우 : 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바. 제6호의 외국인인 경우 : 제6호나목, 라목의 요건(단, 제4호나목은 제외한다)을 충족할 것

8 특례

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불구하고 영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주주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최대주주인 법인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거나 투자전문회사인 경우에는 제7호의 요건을 적용한다.

- (1) 해당인이 금융기관인 경우 : 제1호다목의 요건
- (2) 해당인이 기금인 경우 : 제2호의 요건
- (3) 해당인이 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인 경우 : 제3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
- (4) 해당인이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 제4호다목 및 라목의 요건
- (5) 해당인이 외국인인 경우 : 제5호다목 및 라목의 요건

나. 제1호다목 및 제3호마목에 불구하고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제1호다목 및 제3호마목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1) 대주주가 합병회사로서 합병전 피합병회사의 사유로 인하여 제1호다목 및 제3호마목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피합병회사의 임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합병회사의 경영권에 관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 (2) 대주주가 경영권이 변경된 회사로서 경영권변경 전의 사유로 인하여 제1호다목 및 제3호마목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할 경우(그 사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경영권변경 전의 임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 (3) 그 밖에 (1) 및 (2)와 유사한 경우로서 지분변동 등으로 실질적으로 대주주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배주주가 지분변동 등의 전의 사유로 인하여 제1호다목 및 제3호마목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다. 금융투자업자 또는 그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다른 금융투자업자의 주식을 취득하여 1년(대주주 변경승인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이내에 당해 금융투자업자간의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나목 또는 제2호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100분의 200”을 “100분의 300”으로 한다.

라. 대주주가 정부,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국민연금공단인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75호까지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IV.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 작성 요령

1.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식 및 첨부서류

<시행세칙 별지 제8호>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

문서번호 20 . . .

수 신 금융위원회

참 조

사본수신 금융감독원장

제 목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고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5조제1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붙 임 :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내용 1부. 끝.

신청인 (인)

주 소

연락처

대리인 (인)

작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붙임)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내용

1. 신청인 현황

상 호		대표이사	
업 종		설립연월일	
본점소재지			
최대주주명 (지분율)			
주요주주명 (지분율)			
자 본 금 (백만원)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내국인인 개인의 경우>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직 업		생년월일	
주 소			

2.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본인 및 그 특수관계인 현황

구 분	법인명 (성 명 ²⁾)	관 계 ³⁾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업 종 ⁴⁾ (직 업)	비 고
본 인					
특수관계인 ¹⁾					

주 1) 해당 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기재

2) 자연인인 경우 한자명 또는 영문명을 부기

3) 특수관계인별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영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해당되는 목을 표시

4) 「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기재

3.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 중 회사인 자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업 종 ¹⁾	금융기관 ²⁾ 해당여부	자산 ³⁾	부채 ³⁾	자본 ³⁾	당기순이익 ³⁾
○○○						
△△△						
×××						
⋮						
계						

- 주 1) 「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기재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
 3) 신청일 이전 최근 대차대조표(분기별 임시결산시의 대차대조표 포함) 기준

4. 주식취득예정 금융회사 주식발행 현황

금융회사명		대표이사	
본점소재지			
자 본 금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5. 주식보유현황 및 취득계획

구 분	법인명 (성명)	관계 ¹⁾	승인신청일 현재 소유주식 현황(A)			추가로 취득 하고자 하는 주 식 수(B)	추가취득후 소유주식수 (C=A+B)	추가취득 예정시기	추가취득 방 법 ²⁾
			주식수	지분율	취득원가 (백만원)				
본 인						() ³⁾	() ³⁾		
특수관계인	:					()	()		
	소계					()	()		
계						()	()		

- 주 1) 특수관계인별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영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해당되는
 목을 표시
 2) 장내거래, 장외거래 등으로 구분기재
 3) ()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소유지분율(%)을 소수점 두자리까지 기재

6. 주식 추가취득에 따른 소요액

구 분	추가 취득 예정주식수	예상소요액(백만원)		기 타
		최근 1개월 평균주가기준 () ¹⁾	신청일 현재 주가기준 () ¹⁾	
본 인				
특수관계인 · ·				
계				

주 1) ()에는 주당가격 기재(단위 : 원)

【첨부서류】 최근 1개월 평균주가 산출근거자료

7. 소요자금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현금 및 예금	유가증권	부 동 산	기 타	계
본 인					
특수관계인 · ·					
계					

8. 주식취득 목적 및 경영참여 여부

9. 향후 소유계획 및 추가 취득계획

10. 대주주 변경승인 요건 점검표

① 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영 별표1 제1호 관련)

항 목	내 용
가.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¹⁾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 (100분의 200 이하) ²⁾	(부채/자기자본) %
다. 대주주가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	
(1)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계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된 금융회사를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 제외 ³⁾	
(3) 다음과 같이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거나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	
(가)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기관 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기관경고를 받은 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전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	
(나) 최근 5년간 파산절차·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⁴⁾	
(4)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5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	

- 주 1) ①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
 (가)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동 기준을 상회할 것
 (나)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그 금융기관과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 다만, 그 금융기관에 대하여 유사업종의 적기시정조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에는 규정 별표4 제3호가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 ②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 또는 보험회사인 경우
 (가) 대주주가 은행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10,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7.5 및 보통주 자본비율이 100분의 7 이상일 것
 (나) 대주주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순자본비율이 150% 이상 일 것
 (다) 대주주가 보험회사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일 것
 (라) 대주주가 (가) 내지 (다)이외의 금융기관인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기준을 충족할 것
- 2) 해당 금융기관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승인신청일까지 유상증자에 따라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자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 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 3)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 또는 면제받은 경우 그 내용을 별도 기재
-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거래처로 등록된 내용을 기재

② 대주주가 기금등인 경우(영 별표1 제2호 관련)

항 목	내 용
<p>대주주가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p>	
<p>(1)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계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p>	
<p>(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된 금융회사를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 제외¹⁾</p>	
<p>(3) 다음과 같이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거나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p> <p>(가)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기관 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기관경고를 받은 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전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p> <p>(나) 최근 5년간 파산절차·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²⁾</p>	
<p>4)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5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p>	

주 1)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 또는 면제받은 경우 그 내용을 별도 기재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거래처로 등록된 내용을 기재

③ 대주주가 금융기관 및 기금등 외의 내국법인¹⁾인 경우(영 별표1 제3호 관련)

항 목	내 용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
나. 해당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부채/자기자본) %
다.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외의 방법에 따라 조성한 자금으로서 그 합계액이 출자금(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승인신청한 주식의 취득액)의 3분의 2 이하일 것 (1) 유상증자 (2) 1년내의 고정자산 매각 (3) 내부유보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라. 대주주가 다음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외	
(1)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된 금융회사를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 제외 ²⁾	
(3)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5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	
마.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	
(1)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2) 최근 5년간 파산절차·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³⁾	

주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투자목적회사를 제외

2)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 또는 면제받은 경우 그 내용을 별도 기재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거래처로 등록된 내용

④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영 별표1 제4호 관련)

항 목	내 용
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별지 제1호서식 붙임2 참조)	
나. 출자자금 중 객관적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소 명자료에 따라 확인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 원외의 재원으로 마련된 자금이 3분의 2 이하일 것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한 상속재 산 또는 수증재산 처분자금 (2) 이자,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 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3) 그 밖에 (1) 및 (2)에 준하는 소득재원	
다. 대주주가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	
(1)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다 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 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 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회 사로 지정된 금융회사를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 관계인인 사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 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 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 제외 ¹⁾	
(3)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신청 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 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 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5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 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	
라.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 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	
(1)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 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2)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료 등록된 사실	
(3) 최대주주가 되고자하는 경우에 최근 5년 이내에 금융 회사 임원으로서 직무정지를 받거나 금융회사 직원으 로서 정직요구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다만, 주식취 득대상 금융회사가 보험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에는 최근 4년간 금융위로부터 직무정지 또는 정 직요구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로 함	
(4) 최근 5년간 파산절차·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²⁾	

주 1)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 또는 면제받은 경우 그 내용을 별도 기재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거래처로 등록된 내용을 기재

⑤ 대주주가 외국법인인 경우¹⁾(영 별표1 제5호 관련)

항 목	내 용
가. 승인신청일 현재 외국에서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²⁾	
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다.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감독기관이 제재방법으로 행하는 활동·기능·영업에 대한 제한명령, 등록의 취소나 정지등이 포함되며 행정처분에 따라 민사제재금 등을 징구 받은 경우에는 해당국 감독기관의 전체적인 제재수준 및 위법행위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라. 대주주가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	
1)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된 금융회사를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 제외 ³⁾	
3) 다음과 같이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거나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 (가)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기관경고를 받은 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전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 (나) 최근 5년간 파산절차·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⁴⁾	
4)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가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가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5년 이내에 가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가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	

주 1) 대주주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인 경우. 다만, 그 외국법인이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인가신청시에 지정하는 회사(그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가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2) ①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 은행, 금융투자업, 보험 및 이에 준하는 금융업으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무를 영위

②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

③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보험회사인 경우: 보험업(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종목과 동일한 보험종목을 말한다)을 적법하게 영위

3)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 또는 면제받은 경우 그 내용을 별도 기재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거래처로 등록된 내용을 기재

⑥ 대주주가 외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¹⁾(영 별표1 제6호 관련)

항 목	내 용
가. 승인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외국금융회사의 상근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나.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별지 제1호서식 붙임2 참조)	
다.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해당 외국인이 본국의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확인이 있을 것	
라. 출자자금 중 객관적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에 따라 확인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의외 재원으로 마련된 자금이 3분의 2 이하일 것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한 상속재산 또는 수증재산 처분자금 (2) 이자,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3) 그 밖에 (1) 및 (2)에 준하는 소득재원	
마. 대주주가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	
1)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된 금융회사를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 ²⁾	
3)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가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가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5년 이내에 가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가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	
바.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	
1)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2)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	
3)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 최근 5년 이내에 금융회사 임원으로서 직무정지를 받거나 금융회사 직원으로서 정직요구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다만,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보험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에는 최근 4년간 금융위로부터 직무정지 또는 정직요구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로 함	
4) 최근 5년간 파산절차·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³⁾	

주 1)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만 해당
 2)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 또는 면제받은 경우 그 내용을 별도 기재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거래처로 등록된 내용을 기재

⑦ 대주주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영 별표1 제7호 관련)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협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 또는 해당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나. 제2호의 기금등인 경우 :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다. 제3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 제3호가목, 나목, 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라. 제4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 제4호가목, 다목 및 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마. 제5호의 외국인인 경우 : 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바. 제6호의 외국인인 경우 : 제6호나목, 라목의 요건(단, 제4호나목은 제외한다)을 충족할 것

【첨부서류】

1.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다음 가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가. 정관
 - 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무제표(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반기재무제표)
 - 다. 위 나목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2.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다음 각 목의 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서류
 - 가. 외국 기업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서류
 - 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 및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또는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을 제외하며, 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재무상태와 이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검토보고서
 -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주채무계열(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에 속하는 경우: 부채비율 산출명세서 및 회계법인의 확인서
3.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법인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국적, 회사형태 및 설립근거, 설립일, 대표자, 경영진 구성, 임직원수, 자산규모, 자본금, 주주구성, 계열사 현황, 국내투자현황 등)을 기재한 서류 및 신청인의 국적증명서류와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기타 대주주 요건 확인서류(확인서 및 입증서류등)

V. 관련 법규

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 §3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26, 별표1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15~ §16, 별표4

※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